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3 가을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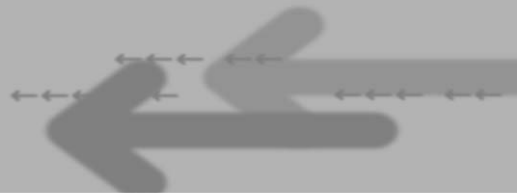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장 양 gracezy88@gmail.com

송효원 xiaoyuan85@krei.re.kr

Tel. 02-3299-4139



중국농업동향

2013·가을(제6권 제3호)

Contents

농업정책 브리핑

2013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중국 새 정부의 농업정책 / 27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41

가격 동향 / 52

무역 동향 / 90

식량 수급 동향 / 127

양념채소시장 동향 / 136

정책자료

식품안전법(수정 초안) / 147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177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187



농업정책 브리핑

2013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 새 정부의 농업정책

2013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농업방송통신학교를 기반으로 신형 직업농민 교육 시스템 구축 강화

- 농업부는 2013년 7월 12일 《농업방송통신학교 건설 강화 및 신형 직업농민 교육시스템 축에 대한 의견 (關於農業廣播電視學校建設加快構建新型職業農民教育培訓体系的意見)》을 발표하였음.
 - － 2012년 중앙 1호 문건은 신형 직업 농민 교육에 힘쓰자는 것을 제의했고, 2013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강화와 농민 교육, 특히 신형 직업농민과 농촌 실용 인재 양성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했음.
 - － 농업방송통신학교는 공익성을 띤 농민 교육 훈련 전문 기구로 30여 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기본적으로 중앙, 성, 시, 현 4급의 농업방송통신학교와 향촌 교육지점 등 5급의 학교 체계를 갖추고 있음. 농업방송통신학교는 중국 농민 교육 훈련과 농촌 실용인재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새로운 단계에 전면적으로 농민 교육 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농업방송통신학교를 기반으로 신형 직업농민 교육 훈련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앙 문건인 《의견》을 발표하였음.
- 신형 직업농민 창출은 국가의 장기적, 근본적, 기초적 및 전략적 프로젝트.
 - － 신형 직업교육의 의의는 매우 큼.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일정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신형 직업농민을 교육하는 것은 현대 농업생산 경영자 대오를 건설하고 안정화하는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

- 직업농민의 양성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막대한 임무임.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신형 직업농민이 필요함. 이러한 직업농민은 농업의 생산 전, 생산과정, 생산 후에 필요하며 생산 경영형, 전문 기능형, 사회 서비스형 등이 포함됨.
- 체계구축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함. 규모가 방대하고 수준이 높은 신형 직업농민 및 농촌실용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에 대비하는 중국의 농민을 위한 교육자원은 매우 부족함.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체계가 완전하지 못하고 교육주체가 약하며 사회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농민교육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체계를 건설함은 매우 절박한 요구임.

○ 농업방송통신학교를 기반으로 한 신형 교육체계 구축 가속화

- 교육의 주체건설을 강화해야 함. 각급의 농업부문은 농업방송통신학교의 건설을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농업방송통신학교의 주체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함.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특색을 유지해야 함. 각 관련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방송통신학교의 공익성특색을 강화해야 함. 농업부문에서 농업방송통신학교를 주관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특징을 변화시키지 않음.
- “하나를 중심으로 한 다원화”체계를 건설해야 함. 농업방송통신학교, 농업과학기술교육훈련중심 등 농민교육전문 기구를 주체로 하고 농업과학연구소, 농업학교, 농업기술보급서비스기구 및 기타사회기구를 보충으로 하며 농업구역, 농업기업, 농민전문합작사를 기지로 삼는 신형의 직업농민 양성 시스템을 형성해야 함.
- 다원적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각종 농민교육기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각 관련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여 대연합, 대협력, 대교육, 대양성의 구도를 형성해야 함.

○ 각 급 농업방송통신학교의 건설 강화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농업방송통신학교의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함. 관련 부문의 지원 하에 인원확충을 확보해야 함.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시설 설비 개선을 확실히 해야 함. 농업방송통신학교의 건설을 위한 전략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농업방송통신학교의 건설표준을 연구·제작해야 하며 각급 정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하여 교학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농민과학기술양성센터의 건설을 강화해야 함. 농업방송통신학교에 위탁하여 설립되는 농민과학기술양성센터는 각 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진행되는 농민교육 사업을 위해 있는 한 기구임. 각 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주관 하에 이 센터는 종합적인 조절과 지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농민교육을 위한 연구센터, 지도센터, 서비스센터 및 홍보센터로 작용하게 해야 함.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장기효과 체제 형성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조직화를 강화해야 함. 농업방송통신학교는 농업, 교육, 조직, 인력사회, 재정, 발전개혁, 광전, 공청단, 부녀연합 등 여러 부문에서 연합하여 조직한 학교로서 학교의 리더체제를 완성해야 하고 학교의 발전 등 중대 문제를 즉시 연구하여 해결해야 함.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예산 보장을 실천해야 함. 각 급 재정부문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야 하고 농업방송통신학교의 교육내용과 관련 인원 등에 따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함. 각 급 재정부는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임.
- 농업방송통신학교의 발전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농민교육의 기초성, 공공성, 사회성 및 막대한 전략적 의의를 홍보함으로써 책임자가 중요시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 일부 국가급 현대농업시범구의 농업개혁 실시

- 농업부, 재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3년 8월 13일 《국가의 현대농업시범구의 개혁과 건설 시범점 업무에 대한 지도적 의견 (關於加強國家現代農業示範農業改革與建設試點工作的指導意見)》(農計發을[2013]18호)발표하였음.
- 일부 국가급 현대농업시범구를 선택하여 농업개혁을 전개하는 시범점으로 하는 것은 당의 18기 대회 및 2013년 중앙1호문건의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임. 각 지방의 시점 업무를 지도하고 현대농업발전체제 수립을 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기하였음.

〈총체적 요구사항〉

○ 전체개요

- 신형 농업생산 경영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 농업 경영 규모가 작은 점, 투자가 분산되어 있는 점, 용자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 등 제약과 걸림돌을 타파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문 자원을 통합하고 시범 지역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합쳐 시범 구역이 집약적이고 전문적이며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사화(四化)결합”된 농업 경영의 새로운 체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정 인도, 금융 지지, 보험보장, 선(先)주문 후(后)판매의 “사위(四位)일체”의 농업 발전의 새로운 시스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양성하고, 발전의 새로운 강세를 만들어야 하며, 농업 개혁과 건설의 선도자를 양성하고, 전국의 현대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경험을 축적하고 정책을 비추하고 길을 모색해야 함.

○ 주요목표

- 2015년까지 시범구 업무에 큰 진전이 있어야 함. 시점으로 선택된 시범구에서는 규모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경영 체계를 갖추고, 계약생산의 생산, 판매 방식을 수립하며, 자금통합사용을 중점 재정지원 방식으로 하며 금융 자본을 농업투자, 용자 시스템의 핵심으로 하고, 농업보험을 위험 경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현대 농업 건설의 내적 활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함. 식량생산에 있어서 규모화 경영을 통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2012년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비해 20%이상 증가 시켜야 하고, 농민 1인당 평균 순 수입을 연 평균 10%이상 증가하도록 하게 해야 함.

〈현대농업발전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 강화〉

○ 농업 기초 시설 건설 강화

- 선택된 시범구에 곡식, 면, 기름, 설탕 등 대량 농산물 생산조건 개선을 핵심으로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대규모로 실행하고, 2015년까지 고표준 농경지 비율을 50% 이상 도달하도록 함.

- 농업 기계화를 가속화 하고, 취약 단계의 기계화를 집중 공략하고, 적당한 선진 농업 기계화 기술과 장비를 널리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농업 기계와 영농 기술의 융합을 강화하고, 기계화와 정보화를 융합하고, 곡식 작물이 기본적으로 전 과정 기계화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작 종합 기계화 수준이 80%이상 도달 하도록 함.

○ 농업기술 통합 응용 추진

- 선택된 시범구는 농업과학원, 농업대학교 및 첨단기술을 갖춘 기업과 다양한 형식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해야 함.

〈규모화 경영 체제 건설〉

○ 농업 신경영 주체 육성 시스템 개선

- 선택된 시범구에서는 장려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대체하고, 직접보조, 용자 신청 시 이자보조 등 방식으로 신경영 주체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경영주체의 선두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료 연수제도를 도입하여 전업대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의 리더 및 사회조직 중의 우수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선택된 시범구 내에서 농촌토지도급 경영권의 권리확인, 등록, 증서 발부 업무를 가속하며 3년 내에 완성해야 함. 정부의 인도, 시장의 조절, 농민 자원, 법에 의한 유상토지양도체제 등의 혁신을 촉진함. 토지 이전을 위한 제3자 평가업무를 강화하고 현금에서 지도하고 향급 위주로 하며 촌을 기초로 하는 토지이전 교역 플랫폼 건설을 강화함.

○ 시범구 내 농업생산 조직화 향상

- 다양한 형식의 새로운 농민합작사를 대거 발전시키고 이들의 대동능력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농민합작사 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혁신하고 농업지원 사업과 농민합작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식량 생산 농민합작사에 대한 지원강도를 강화시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범구의 조직화 수준을 향상시킴.

○ 시범구의 새로운 농업사회서비스체계 건설 가속

- － 선택된 시범구에 공익성 서비스와 경영성 서비스 결합하여 전문성이 있고 종합적인 조절능력이 있는 새로운 농업사회서비스체계를 구축함을 지원함.

〈농산물 생산과 판매 연결, 계약생산 이행 시스템 개선〉

○ 계약생산 농업의 발전

- － 시범구 내에서 현대적 영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장소를 적극 창조하고 계약농업의 실제 실시 규칙을 완성해야 함. 특히 신경영 주체와 농산물 수매 및 저장, 가공, 판매 기업과 계약을 맺게 인도해야 함.

○ 농산물 계약 이행 시스템 혁신

- － 시범구 내에서 지역특징에 따라 계약 이행을 격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농산물주문+금융+생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주문서를 담보로 용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함.

〈사업 자금의 통합 시스템 수립〉

○ 농업 사업자금 규모 확대

- － 성급 농업, 재정부문은 적극적으로 시범구에 대해 농업기초시설 건설, 과학기술 보급 및 인재양성

○ 농업 사업자금 관리 규정 개선

- － 시범구에서는 신농업경영 주체가 자원 환경보호 등 사업자금을 통합하여 자금의 사용효율과 효익을 증가시켜야 함. 농업종합개발자금은 우선순위로 조건을 구비한 신경영주체가 논밭을 개선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해야 함.

〈농업 투자, 융자 서비스 체계 혁신〉

○ 농업 신용대출 및 투자 장려체제 구축

- 시범구는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신용대출의 구조적 최적화를 실현해야 하고 현대농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지도를 강화해야 함. 제도적으로 격려 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기구들이 농업관련 대출 투입을 증가하게 해야 함.

○ 농업용 융자서비스 개선

- 시범구에서 현대농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정책성은행, 상업성은행과 농촌중소금융기구를 주체로 하는 농업 신용체계 건설을 할 수 있게 격려함. 농민자금으로 호조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조건이 구비된 일부 농민합작사에서 신용협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며 중점적으로 본 시범구 내의 구성원과 본 시범구 내의 농가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해결함.

○ 농업 금융제품 혁신

- 시범구에 있는 금융기구는 3권(3권: 농민토지도급경영권, 저택지사용권, 집권수의 분배권)담보, 농기구담보대출, 주문서 등 담보대출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이로써 농업 신경영주체가 기초시설 건설, 농기구 및 농산물 가공유통설비 구매 및 생산자료 구매를 위한 융자수요를 만족시킴.

○ 농업 금융서비스 방식 개선

- 시범구 내에서 신경영 주체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 수속을 간편하게 하며 대출 기한 구조를 개선하고, 신경영 주체에게 고효율의 편리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보험을 통한 신경영 주체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함〉

○ 농업보험 지원정책 개선

- 선택된 시범구에서는 정부의 인도, 시장운영, 자주적 및 자원적, 협동추진의 원칙에 따라 농업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함. 다양한 형식의 농업보험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를 갖춘 경영의 발전을 위해 농업보험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농업보험의 품종도 다양하게 증가해야 함.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지방 특색의 품종과 시설 농업도 보험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농업 보험서비스 최적화

- － 선택된 시범구에서는 보험기구들을 동원하여 신경영 주체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서비스 지점을 증가시키고 농업기술보급기관과 협조하여 농업보험 업무를 추진하며 배상관리를 강화해야 함.

〈시범점에서의 업무추진을 보장해야 함〉

○ 조직의 리더 역할 강화

- － 시점 시범구의 당위 혹은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농업개혁과 건설의 제1책임인으로서 전체적인 조정을 강화해야 하고 조직의 리더기구를 강화해야 하며 각 부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투입 강도 제고

- － 중앙과 각 성급 농업관련 사업자금은 시점 시범구로 기울어져야 하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

○ 정책지원 강화

- － 성급 농업, 재정부문과 시범점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동적으로 업무 연결을 강화해야 하고 자신들의 직책에 근거하여 각각의 지원방안을 세워야 함. 각 시범으로 선택된 시범구에서는 시범점의 실시방안에 근거하여 신경영 주체를 육성,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키며 농업기술의 통합응용을 추진해야 함. 또한 사용토지문제, 용자문제 등을 시급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함.

○ 심사관리 강화

- － 농업부, 재정부, 은감회는 관련 시범점에 참여하는 기관과 함께 시범점 업무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선택된 시범구에 대해 농업개혁 및 건설효과 진행상황에 대해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야 함.

○ 경험교류 강화

- － 성급 농업, 재정부문과 선택된 시범구는 각 지역의 시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좋은

방법, 좋은 경험을 적극 교류하며 일정량의 혁신 성과를 거두어 지역의 농업현대화 건설의 정책 조치로 전환시켜야 함.

◆ 강농해농부농 정책의 실행 및 업적 관리 방안

○ 농업부는 2013년 7월 31일 《2013년 강농해농부농¹ 정책의 실행 및 업적과 성과로 이어지는 관리 업무 실행 방안 (關於印發農業部2013年度強農惠農富農政策落實延伸績效管理工作實施方案的通知)》을 하달하였음.

－ 발표 내용은 크게 강농해농부농 정책의 실행 성과의 심사내용 및 지표와 방법으로 구성되었음.

○ 성과의 심사내용 및 지표(기준)

－ 강농해농부농 정책의 성과는 농기구 구입 보조금과 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 및 건설 보조금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을 포함함.

－ 농기구 구입 보조금은 주로 성급 제도 건설, 중점업무, 집행실시, 실시 효과 등 내용에 대해 평가함. 성 급 지표는 총 4개의 1급 지표, 13개의 2급 지표로 구성되고, 동시에 가산점, 감점 항목 및 거부권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됨.

－ 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 및 건설 보조금은 주로 성급 조직 관리, 실행 관리 등 내용을 평가하는 것임. 성 급 지표는 총 2개 1급 지표, 8개 2급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가산점, 감점 그리고 거부권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됨.

○ 성과 심사 방법

－ 성급 자체 평가 : 각 성 농업 주관 부문은 농업부의 성과 관리의 내용과 구체적 지표를 기반으로 성 급의 각 항목의 관리 작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1차적 점수를 주어 성 급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농업부의 농기구부처(農機化司), 과학교육부처(科教司)에 각각 제출 함.

－ 검사 및 조사 : 농업부의 관련 부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각 성급 자체평가보고서

1 농업을 강화하고, 농업에 혜택을 주고, 농가가 부유해질 수 있는 정책.

와 자체 평가점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조사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첫째, 자료 심사. 농업부 평가팀은 각 성 농업 주관 부문에서 보내온 성과 보고서에 대해 각각 조사하고, 모든 항목의 지표에 대해 점수를 수정하며 필요 시 각 성에 관련 보충 자료를 요구함. 둘째, 현지 조사. 조사 팀은 각 성의 관련 정책의 실행 상황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고, 관할 부분의 현의 작업 완성 현황에 대해 임의로 샘플링을 진행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각 성 급 업무 조사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 점수를 재수정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급에 보고해 심사를 진행함. 조사 결과와 성 급 자체 평가의 점수 차가 비교적 클 때 각 성 농업 주관 부문과 소통을 하며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를 확보 함.

- 종합평가: 평가팀은 사실 확인 정황과 일상 업무의 실제상황에 따라 성과관리 종합보고를 작성하고 각 성의 성과 심사 득점상황과 결부하여 우수, 양호, 일반, 차등 등 4단계로 판정하게 됨.

◆ 교잡종 벼와 옥수수의 국가급 종자 생산기지 인정

- 농업부는 2013년 7월 29일 《교잡종 벼와 교잡종 옥수수의 국가급 종자 생산기지를 인정함에 대한 농업부의 통지(關於認定國家級雜交水稻和雜交玉米種子生產基地的通知)》(農種發[2013])를 발표하였음.
- 2013년 중앙 1호 문건과 《전국 현대 농호작물 종자업 발전 계획(2012-2020)》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교잡종 벼와 교잡종 옥수수의 국가급 종자 생산기지를 인정함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에서는 사천성 미엔양시(綿陽市) 등 31개 시 현을 교잡종 벼의 국가급 종자 생산기지로, 감숙성 장액시(甘肅省張掖市) 등 26개 시 현을 교잡종 옥수수의 국가급 종자 생산기지 인정하였음.

◆ 농기구 구입보조정책 실행 감독관리 강화

- 농업부는 2013년 7월 12일 《농기구 구입 보조정책 실행 감독 관리 작업 강화에 대한 의견(關於進一步加強農機購置補貼政策實施監督管理工作的意見)》(農機發[2013]2호)을 발표하였음.

- 농기구 구입보조정책은 강농해농부농 정책 중의 하나임. 정책을 실시한지 10년이 되었음. 각 급 농기구 주관부문 및 재정부문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감독 관리를 진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하지만 구체적인 실시과정에 일부 지역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농기구 구입보조정책의 실행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발표되었음.
 - 《의견》의 내용은 감독 관리 강화의 의의, 관리직책의 전면적 이해, 엄격한 규정 집행,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추진, 규정 위반을 엄히 처벌, 조직의 지도 강화 등 6가지로 구성됨.
- 다년간의 혁신과 개혁을 통해 중국은 완전한 농기구 "구매 보조 관리제도"를 수립하였음. 주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부, 재정부 두 부문의 《농업 기계 구입 보조금 전문 항목 자금 사용 관리 감독 실행 방법》으로 매년 지도 의견과 청렴 정치 위험 방어(청렴한 정치를 위한 감시 체계를 말함), 감독검사, 정보 공개, 보조 제품 경영 행위 관리 등 방법 등이 있음.
 - 둘째, “보조 제품에 있어서 목차 제도를 펴뜨리고, 보조 판매상 생산 기업의 자주적 선택 제도, 관리 과정 감독제도, 수익 대상 공개 제도, 실행 효과 조사 제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원칙 규정이 있음.
 - 셋째, “3개 금지, 4개 금지, 8개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칙이 요구사항임. 농기구 구입 보조금 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조 실행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고 각 실행 주체가 연관되어 있으며 각 업무 단계를 규범화 하고 있고 각 행위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 실시를 주도하는데 있어 주된 근거임.

◆ 3대 식량작물(보리, 옥수수, 벼) 재배지역에 맞춤 시비 건의

- 농업부 사무청은 2013년 7월 17일 《보리, 옥수수, 벼 3대 곡식 작물 구역 조성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건의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小麥, 玉米, 水稻三大糧食作物區域大配方與施肥建議(2013)的通知)》(農辦農[2013])를 하달하였음.

- 작물 생산과 농민 수입 증대를 촉진시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업부는 토양 검사를 통한 비료조성 기술 전문가 팀을 조직해서 9년 동안 전국 토양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비료 조성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보리, 옥수수, 벼 3대 곡식 작물에 대해 맞춤 시비를 건의하는 본 《건의》를 제정하여 발행하였음. 《건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첫째, 적극적으로 널리 보급해야 함. 각 급 농업 부문은 비료조성 방법 제정 업무를 강화하여, 현재 있는 비료조성 방법을 개선하고 조성 방법이 더욱 과학적이고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해당 구역의 비료조성 방법을 제정 및 발행 할 때 농업 부가 추천한 본 구역에 적합한 조성 방법을 포함해야 하고 적합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
 - 둘째,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함. 각 지역은 《농업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의 비료조성 방법 사용 확대에 대한 의견》(農農發[2013] 1호)을 참조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제도 규범이 완벽해 질 수 있도록 하며, 조성된 비료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조성된 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지도 서비스를 잘 수행해야 함. 농업 기업에 대한 연결을 강화하고, 비료 생산, 판매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도를 강화하고, 현지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비료 조성 방법을 따라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업이 적합한 지역에서 조성된 비료를 판매하도록 이끌고, 기업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더 큰 범위에서 비료 조성 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넷째, 홍보와 훈련을 진행함.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서 비료 조성 방법과 비료 사용 방법을 알림.

◆ 안심사용 가능 농자재 농촌으로 유입

- 농업부 판공청은 2013년 7월 24일 《안심사용 가능 농자재의 농촌 유입을 위한 시범 업무에 대한 통지》(關於開展2013年放年農資下鄉進村示範工作的通知)를 발표하였음.
- 안심사용 가능한 농자재가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자재 시장의 질서를 정립하고, 농민 이익을 보호하며 농업 생산 안전과 농산물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부는 2013년에 지속적으로 “농자재의 안정적인 농촌 유입을 위한”시범 활동을

해왔음. 각 성(구, 시)의 신청 및 추천을 거쳐, 북경시 창평구 등 30개 현(시, 구)를 시범 단위로 선정했고, 이를 중심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 재료 관리의 정보화 플랫폼을 만들어 농자재 경영 안심 네트워크를 만들었음.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범 사업의 지도 강화

- 2008년 중앙1호 문건은 명확히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 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농자재의 안정적인 농촌 유입을 실시하는” 시범 사업을 제의하였음. 각 지역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 사업에 대한 지도를 확실히 하여 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해야 함.

○ 시범사업 실행방안을 개선하고 사업의 중점과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 각 기관은 최종 평가와 홍보를 강화하고 적시에 관련된 정보를 농업부 농산물 품질 안전관리감독국에 제출해야 함.

◆ 축산 우량품종 보조금 사업

○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은 2013년 7월 11일 《2013년 축산업 우량품종 보조금 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關於印發2012年畜牧良種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을 하달하였음.

○ 《의견》 내용은 보조 범위 및 수량, 보조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선정 기준 등 8가지로 구성되었음.

○ 중앙농촌공작회의 정신과 국가축산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2013년 중앙재정은 계속해서 자금을 배정해 축산업 품종 개량에 힘써왔음. 축산 우량품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업 정돈과 진흥을 위한 기획요강》, 《돼지 우량종 보조금 관리 임시 방법》과 《젖소 우량종 보조금 관리 임시 방법》등 요구에 따라 특별히 아래와 같은 실행 지도 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음.

○ 보조 범위 및 수량

- 번식 능력이 있는 암돼지 1640 만 마리
- 우유용 번식 능력이 있는 암소 897.5만 마리
- 고기용 번식 능력이 있는 암소 500만 마리
- 숫양 24.7 만 마리
- 야크 숫소 1.82만 마리

○ 보조 대상

- 사업지역 내 우량품종 정액(精液)으로 인공수정을 한 암돼지, 젖소, 고기용 소 사육장(단지, 호)
- 사업담당 현 내 번식 능력 있는 암 양 30마리, 번식 능력 있는 암야크 25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사육장

○ 지원 기준

- 돼지 우량종 지원: 번식 가능한 암돼지 한 마리가 매년 4번 정액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매회 정액사용 시 10위안을 지원함.
- 젖소 우량종 지원: 번식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매년 30위안 혹은 20위안을 지원함. 물소외에 홀스테인 소는 번식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매년 2회 정액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매회 15위안씩 지원하고, 기타 젖소 품종은 정액 한 회 사용 시 10위안 지원함. 물소는 한 마리당 매년 3회 정액을 사용하는 전제하에 한 회 당 10위안을 지원함.
- 육우 우량품종 지원: 번식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매년 2회 정액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매 회 5위안 지원함.
- 양, 산양 우량종 지원: 양, 산양의 수소는 일회적으로 800위안/마리 지원함.
- 야크 우량종 지원: 야크 수소는 일회적으로 2000위안/마리 지원함.

○ 지원 품종

- 돼지 지원 품종은 투르크 돼지, 랜드레이스, 요크셔 등 국가가 허가한 수입 품종, 그리고 육성 품종과 지방 품종이 있음.

- 젖소 지원 품종은 홀스테인 소, 저지소, 물소, 시멘탈 젖소, 브라운 캐틀, 야크, 삼하소 등 품종이 있음.
- 국가가 수입을 허가하고 자주적으로 육성한 육우, 양, 산양 야크 품종 및 우수 지방 품종을 지원함.

○ 지원 절차

- 돼지 우량품종 지원 절차: 사업담당 현에서 정자(精子) 제공 회사를 확정 후, 정자 제공 회사는 지원된 만큼 할인된 가격에 따라 사육자에게 정액을 제공함. 사업담당 현의 재정부문은 축산 부문이 지정한 교배 품종 상황과 정자 제공 회사가 제공한 관련 증서를 토대로 정자 제공 회사와 보조 자금을 결산함.
- 젖소와 육우 우량 품종 지원 절차: 농업부가 조직한 전문가들이 수소 선정을 하고, 정액 생산 회사를 결정한 후, 선정한 수소의 일련번호와 생산 능력 등 기술 지표를 공표함. 성 급 축산 재정부문은 본 의견 요구에 따라 사업자금 하달 및 수소 선정 공표 후 한 달 반 이내에 사업 담당현에서 선별 구입 작업을 마치고 구입 계약을 농업부에 보고함. 성 급 재정부문은 현 급 축산 부문이 제공한 구입 계약, 판매 영수증과 정액 출입고 증거를 토대로 수소 스테이션과 결산을 진행함. 정자 제공 회사는 지원 후의 할인된 가격으로 사육자에게 정자를 제공함.
- 양, 산양과 야크 우량품종 지원 절차: 성 급 축산 부문은 전문가를 조직해 가축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씨가축 검정 및 선정된 씨가축장 목록 공표를 진행하고, 재정부문에서 사업담당 현에서 통일된 씨가축 구매 계약을 진행함. 성 급 재정부문은 구입 계약, 판매 영수증을 토대로 씨가축 제공 회사와 보조금 결산을 진행함. 씨가축 제공 회사는 보조금 후의 가격으로 사육자에게 씨가축을 제공함.
- 사업자금 및 소의 냉동 정액이 남는다면 그 다음해까지 이어서 계속해 사용해야 함.

○ 사업담당 현의 선정 기준

- 돼지. 번식 가능한 암돼지 2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이고, 돼지 인공 수정 커버율이 50% 이상인 현(구, 시)을 새로운 사업담당 현으로 선정함.
- 젖소, 홀스타인 소(저지 소 포함) 우량 품종 지원은 전국 범위에서 실시함. 물소 우량 품종 지원 선정 조건은 비교적 우대적임. 번식 가능한 암소 3000마리 이상을

사육 중인 현(시)는 전체를 선정함. 시멘탈 젖소, 브라운 캐틀과 삼하소 우량 품종 지원 선정은 번식 가능한 암소 5000마리 이상의 현(시) 전체를 선정함.

- 육우. 번식 가능한 암소 5000마리 이상의 현(시)을 선정해 실시함.
- 양, 산양. 번식 가능한 암 양 2만 마리 이상을 사육 중인 현(시)을 선정해 실시함.
- 야크. 사업 참가 성 급 축산, 수의(獸醫) 주관 부문이 현지 사정을 토대로 결정해 사업담당 현을 선정함.

◆ 2013년 재배업 재정(財政) 시범사업 성과 평가

○ 농업부 판공청은 2013년 7월 18일 《2013년 재배업 재정 시범사업 성과 평가 대한 통지(關於做好2013年種植業財政項目績效評價試點工作的通知)》를 발표하였음.

- 발표 내용은 평가 목적, 평가 내용,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절차, 관련 요구 사항으로 구성됨.

○ 《농업부 2013년 부문 예산에 대한 회답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에 따라 농업부가 조직 및 실시한 “경작지 질 보호 전문 사업”과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전문 사업 경비(농약관리)”가 2013년 재정 지출 성과 평가 시범 사업(약칭: 두개의 전문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성과 평가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아래와 같이 관련 통지를 내림.

○ 평가내용

- 사업의 조직 및 관리 상황. 사업 실행 기구가 완전한지, 업무 분담이 명확한지, 사업의 관리 제도는 완전한지, 그리고 엄격하게 관련 사업 관리 제도를 이행하는지 등이 포함됨.
- 사업 자금 관리 상황. 지출 근거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지출 상황을 허위로 열거하지는 않았는지, 자금을 억류, 점용, 횡령하는 상황은 없는지, 기준 초과 지출은 없는지, 자금관리 제도가 완전하고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지, 재무 조사는 규범에 부합하는지 등 내용이 포함됨.
- 사업 실적 상황. 사업의 실제 상황이 매 년 실적 목표와 지표에서 이미 정한 생산수

량, 품질과 효과에 도달했는지, 사업의 해당 연도의 완성 정도가 장기 목표와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내용이 포함됨.

○ 평가 주체 및 대상

- 실적 평가 주체. 재배업 관리사는 본 사업의 실적 평가를 위하여 “재배업 재정 사업 실적 평가 전문가 팀”을 조직함(약칭: 전문가 팀) 전문가 팀은 실적 평가 관련 제도를 토대로, 규범에 맞는 방식, 방법과 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실적 평가 업무를 진행함.
- 실적 평가 대상. 2013년 두 개의 전문 사업을 담당한 모든 기관. 두 개의 전문 사업 실적 임무는 이미 구체적인 담당 기관으로 분산지시 되었음.

○ 평가 절차

- 사업 담당기관의 자체평가 및 현장 조사를 통한 평가

◆ 중앙재정 농민전문합작조직 발전자금의 관리 방법

○ 재정부에서는 2013년 7월 23일 《중앙재정 농민전문합작조직 발전자금 관리 방법 (中央財政農民專業合作組織發展資金管理方法)》(財農[2013]156호)을 발표하였음.

- 중앙재정에서 농민전문합작조직의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자금 사용 효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합작사법》에 의해 본 “방법”을 발표한 것임.
- 발표 내용은 제 1장 총칙, 제 2장 지원 조건과 범위, 제 3장 자금 분배 및 하달, 제 4장 자금 관리와 사용, 제 5장 감사(監査), 제 6장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지원 조건과 범위

-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농민 합작 조직의 규장제도를 갖추어야 함.
- 재정관리 제도가 완전하고 민주 관리 정책 결정 등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함.
- 서비스 네트워크가 완전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합작 조직의 조직원에게 농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사업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함.
- 합작 조직의 구성원은 원칙상 100 가구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자산 기초를 가져야 함.
- 합작 조직 발전 자금 주요 지원의 범위
 - 새 품종을 수입하고 신기술을 퍼뜨리는 것.
 - 전문 기술, 관리 지식 훈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표준화 생산을 조직하는 것.
 - 농산물 가공, 정리, 저장 및 신선도 유지관련 된 것.
 - 인증 획득, 브랜드 육성, 시장 영업과 정보 자문 등 서비스하는 것.
 - 농민전문합작 조직의 창조와 발전을 돕는 것.
 -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는 기타 항목.

○ 자금 분배 및 하달

- 합작조직발전자금은 식량 생산량, 지방재력, 농업생산비중, 농민전업합작조직 발전 상황, 각 지방 업무 수준과 기타 관련 요소를 토대로 분배해야 함.
- 자금 분배 방안에 따라 재정부는 합작발전자금을 각 지역의 재정 부문에 하달함.
- 각 지역 재정 부문은 재 정부가 하달한 자금을 받은 후 신속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정하고, 빠르게 자금 하달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자금 관리와 사용

- 합작조직발전자금은 각 지역 재정 부문에서 관리함.
- 각 지역 재정 부문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경쟁 입안, 전문가 평가 등 방식을 채택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 할 수 있음.
- 합작조직발전자금은 직접보조를 선택해도 되고, 상금으로 사용 할 수도 있으며,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지역의 현 급 재정 부문은 합작조직발전자금 사용의 관리를 책임지고 엄격하게 회계 보고 제도를 실행해, 재정 국고 관리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지불을 진행하고, 책임 분담에 따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사업

○ 재정부는 2013년 7월 1일 《일사일의(一事一議)² 재정장려보조를 통한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추진에 관한 통지 (關於發揮一事一議財政獎補作用推動美麗鄉村建設試点的通知)》(財農改[2013]3호)를 발표하였음.

- 중국공산당의 18기 인민대회와 2013년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일사일의 재정장려보조 업무의 요구에 따라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일사일의 재정장려보조 업무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음. 올해부터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을 실행함. 관련된 항목에 대한 통지는 ①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중요 의의 ②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목표와 기본 원칙 ③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 ④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관련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음.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

○ 촌 급 공익사업 건설을 잘 잡고, 점진적으로 도로는 튼튼히, 위생을 깔끔하게, 마을은 푸르고 반짝이게, 환경 미화 등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마을의 모습과 농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향촌 생태 농업, 생태 여행 등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중심 마을과 농촌의 새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 마을, 자연 마을을 조건에 따라 병합하고, 마을 구성을 최적화하여, 농촌 인구가 적절하게 집중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농업 집약 토지를 절약하도록 함.

- 농촌 기초 시설 건설과 공익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관련 요구

2 일사일의(一事一議) : 농촌세금개혁공정으로서 수리, 도로, 식수, 농업종합개발 등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농민에게서 고정적으로 거두던 예전의 방식을 고치고 “일사일의”원칙에 따라 농민대표 회의에서 2/3이상 농가대표가 참가하여 반수이상인 동의하였을 때 모집하는 방식임.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방안을 구체적 제정해야 함. 각 지역은 신속하게 시범 사업 범위, 정책 지원, 자금 항목 관리 요구, 실적 평가 등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시범 범위와 방법을 제정해야 함.
- 아름다운 향촌 마을 건설 시범 사업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함. 각 지역의 차이와 특징을 토대로 지리, 문화, 자원, 경제 발전 수준 등 요소의 종합적 발전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아름다운 향촌 건설 루트를 실행함.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 자금 투자에 대한 통합 조정을 강화해야 함.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과 자금 감독을 강화하고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조사 연구와 추적 지도를 강화해야 함.
- 아름다운 향촌 건설 시범 사업의 조직적 지도를 강화해야 함.

◆ 2013년도 중·만생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국가식량국·농업발전은행·중국비축식량총공사(中儲糧總公司) 등 6개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2013년 9월 18일 공동명의로 2013년 중·만생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예비안을 발표하였음.
- 《2013년 중·만생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예비안 하달에 대한 통지(關於印發2013年中晚稻最低收購價執行豫案的通知)》(發改經貿[2013]1836호)
- 중·만생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예비안의 주요 내용
 - 대상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사천성 등 11개 주산지 성(자치구)
 - 최저수매가격(2013년산 중·만생종 벼 국가표준 3등급 기준): 중·만생 장립종 벼 2.70위안/kg, 중·단립종 벼 3.00위안/kg
 - 최저수매가격 적용 기간
 -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사천성 등 8개 주산지 성: 2013.9.18.~2014.1.31.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3개 주산지 성: 2013.11.16.~2014.3.31
- 예비안 집행기간 내에 중·만생종 벼 시장가격이 최저수매가보다 낮아질 경우, 중국 비축 식량관리 총공사의 각 지사는 가격, 식량, 농업,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성급 관련 부서와 함께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중국 비축 식량관리 총공사의 비준을 받아 관련 시(현) 또는 전국 성(구) 범위 내에서 예비안을 발동함. 각 위탁수매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수매가격에 의거하여 중·만생종 벼를 수매함.
- 중국 비축 식량 총공사(中儲糧總公司)는 국가가 위탁한 최저수매가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주체로서 수매한 중·만생종 벼의 수량, 품질, 재고 관리, 판매·출고 등에 대한 총책임과 위탁수매기관에 대한 자격심사 등을 담당함.
- 비표준품에 해당하는 중·만생종 벼의 구체적인 수매가격
- 국가개발위원회, 국가식량국, 재정부, 국가질검총국이 공동으로 하달한 《식량·유지작물의 품질표준 관련 문제 처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통지(關於執行糧油質量標準有關問題的規定的通知)》(國糧發[2010]17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정미율 38% 이하 중·만생 장립종 벼와 정미율 49% 이하 중·단립종 벼는 최저수매가격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옥수수 임시수매 가격 향상

- 재정부는 2013년 7월 3일 《2013년 옥수수 수매 임시가격 향상에 대한 통지(關於提高2013年玉米臨時收儲價格的通知)》(發改經貿[2013]1289호)를 발표하였음.
- 농민 이익을 보호하고 곡식 재배를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하게 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올해는 계속해서 동북 등 주생산지에서 옥수수 임시 수매가격 정책을 결정했고, 또한 적당히 임시 수매 가격 수준을 올리기로 했음.
- 2013년에 생산된 옥수수(국제3등급 수준) 임시 수매 가격: 내몽고, 요녕 2.26위안/kg, 길림 2.24위안/kg, 흑룡강 2.22위안/kg, 모두 2012년에 비해서 0.12위안/kg 상승했음.

- 임시 수매의 구체적인 실행 시간과 기타 관련 요구는 국가의 관련 부문이 올해 새로 생산된 옥수수가 시장에 나올 때 시장 상황 연구에 따라 결정 한 후 다시 통보하게 됨.

◆ 농업표준화 시범 사업에 대한 검사 실시

- 농업부 판공청은 2013년 9월 9일 《농업표준화 실시 시범사업 조사업무에 대한 통지(關於組織開展農業標準化實施示範項目考核驗收工作的通知)》(農辦質[2013]46호)를 발표했다.
 - － 발표 내용은 조사 범위, 조사 근거와 주요 내용, 조사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었음.
- 조사 검사 범위
 - － 이번 조사 검사 범위는 2006-2012년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농업 표준화 실시 시범 사업임. 2012년 새로 시작하는 농업 표준 실시 시범 사업은 자원 원칙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참여함.
- 조사 근거와 중점
 - － 조사 업무는 주로 사업문건과 《농업표준화 실시 시범사업 가이드》, 《농업표준화 실시 시범사업 실시 방안》, 《농업표준화 실시 시범사업 조사 규범》을 근거로 진행됨.
 - － 조사의 중점은 사업 수행 과정 중의 조직 관리, 제도 수립, 집중전환 및 훈련, 핵심 시범 구역(향진) 건설, 브랜드 육성 등 방면에 대해 조사 평가를 진행함.
- 조사 요구사항
 - － 조사는 과학적이고, 규범화되어야 하며 엄밀하고 세심해야 함.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하고 공개·공정해야 함. 각 급 농업행정부문의 규범 따라 적시에 조사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함.

◆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의 조정 및 보급

- 농업부 농간국(農墾局)은 2013년 9월 11일 《학생이 마시는 우유계획 조정 및 보급 방식에 대한 통지(關於調整學生飲用奶計劃推廣工作方式的通知)》를 발표했다.
- 중국의 유제품 소비와 유업 발전과 청소년의 영양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 농업부와 원국가발전기획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원위생부, 원국가 품질기술감독국과 원국가정공업국 등 7개 기관이 연합해 국가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을 실시하였음.
- 현재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 실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반드시 그 업무 방식을 정비하고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국은 현대적인 유업을 건설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우유 연간 생산량은 3,744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유제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둘째, 2011년 국무원은 농촌 의무 교육 학생 영양 개선 계획을 시작해, 이미 우유를 학생의 영양 개선 식품 중 하나로 확정했음. 또한, 학생 영양 개선 업무는 이미 각 급 정부와 사회 전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셋째, 식품 안전, 유제품 관리 감독 등 방면에서의 법률 규칙은 날로 완전해져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보장 수준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음. 넷째, 중앙은 정부의 직능을 변환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하였음.
- 정부 직능을 개선하고 시장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며 사회적 힘에 의지하고자 연구를 통해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음.
 - －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의 확대 업무 전체를 중국 유업협회에 전가함. 중국 유업협회는 식품 안전, 유업관리 관련 법률 요구에 따라 관련된 확대 및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지속해서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을 실행함.
-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부 관련 팀과 그 사무실을 철수하고, 원래 실행되고 있던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과 관련한 규칙 제도 역시 자동으로 폐지함.
 - － 학생이 마시는 우유는 일반적인 유제품으로서 관련 직능 부문의 생산과 품질 감독에 일률적으로 편입되어 학생이 마시는 우유 제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 각 지역, 각 급의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 주관 부문은 반드시 위의 의견 요구에 따라 현지 실제 상황과 결합해 그 실행을 실천해야 할 것임.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적당한 절차를 채택하고 “학생이 마시는 우유 계획”업무의 정비 기간 동안의 각 항목의 업무를 잘 해내고, 학생 영양 개선 업무와 기업 생산 경영 등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회피해야 할 것임. 학생이 마시는 우유의 생산, 가공, 판매, 음용 등 중요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중국 새 정부의 농업정책

1 중국농업 발전 개황

- 중국은 역사적으로 농업을 매우 중히 여겨왔음.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특히 개혁개방이후로 중국정부는 농업정책을 개선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발전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성과를 거두었음. 중국은 세계 전체 경지면적의 9%의 경지를 갖고 있고 전 세계 담수자원의 6.5%의 수자원을 갖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20%의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혁개방 이후, 특히 신세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의 강농혜농부농(強農惠農富農)정책의 추진하에 중국농업은 빠르고 좋은 발전을 실현하였음.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1.1. 농업종합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

- 2012년, 중국 식량생산량은 11,792억 근에 달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역사기록을 세웠음. 식량 생산에서 9년 연속 증산을 실현하였고 총생산량은 5년 연속 10,500억 근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전무한 수치임. 2012년 중국 국민 일인당 식량 점유량은 435kg에 달하였음. 면화, 식용유, 당, 육류, 알류, 우유, 과일, 채소, 어류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유료(油料), 채소, 과일, 육류, 알류와 수산

품 등의 생산량은 다년간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음. 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농산물의 품질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검사합격률은 전체적으로 96%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1.2. 농민수입이 대폭 증가

- 2012년, 농촌 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7,917위안에 달하여 실제로 10.7% 증가하였으며 GDP는 실제 2.9% 포인트의 증가속도로 증가하였고 농민수입은 9년 연속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농민수입의 증가속도는 3년 연속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속도를 초월하였음. 도시주민과의 소득격차 축소 추세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농민의 의식주행 역시 전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엔젤지수도 1978년의 68%에서 2012년의 39.3%로 하락하였음.

1.3. 농업과학기술과 물질장비수준이 새로운 단계로의 업그레이드 실현

- 2012년 농업과학기술진보의 공헌도는 54.5%에 달하였음. 주요 식량의 우량 품종 보급률은 96%이상으로 되었으며 농기계 총 동력은 10억 kw를 넘었음. 파종과 수확의 종합기계화율은 57%에 달하였음. 과학기술은 이미 중국농업발전의 주 역량이 되었으며 농업생산방식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온 인력과 축력위주에서 기계작업 위주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

1.4. 농업농촌개혁의 큰 진전

- 농업세를 취소하고 “4가지 보조”를 실행하였으며 농민합작사를 발전시켰고 농업법률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농촌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세웠으며 농업농촌 발전의 활력을 증가시켰음.
- 현재 1.3억 명의 농촌학생은 학비·잡비 및 교재비가 면제되고 있고 8억 명의 농민이 신행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하였으며 1.2억 명의 농민이 양로금을 받고 있음. 5,300만 명의 농민은 저소득지원금을 받았으며 많은 농민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노년에 보장이 있게 되었으며 아프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꿈을 이루었음.

1.5. 농업 대외개방이 새로운 발걸음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음. 중국의 농산물 무역총액은 1700억 달러를 초월하여 전 세계 제3대 농산물 무역국이 되었음. 중국은 세계 농산물 무역에서의 지위가 대폭 향상되었음.
- 농업과학기술교류 및 협력 역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음. 외국으로 농업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과의 농업협력을 확대 해 나가고 있음. 아프리카 등 국가로 선진기술을 제공하고, 장비와 관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 농업과 식량생산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고 상호이익과 공영발전을 실현하고 책임감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하였음.

2 중국농업정책의 기본 현황

- 근년에, 중국정부는 국가식량안보와 농민수입증가, 농업의 지속발전 실현이란 목표를 에워싸고 농업발전의 이론과 정책을 개선하여 현재는 초보적으로 새로운 시기의 농업정책체계를 수립하였음. 이러한 농업정책체계를 근본으로 하여 전체 농업에 관통하고 있음.

2.1. 기본경영제도

- 1970년대 말, 중국은 농촌개혁을 단행하였음. 이로써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한 통분결합(統分結合)의 이중(雙層)경영체제를 확립하였음. 1993년에 국가헌법에는 가정도급제도를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로 정하였고 2002년에는 농촌 토지 도급법을 제정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농촌 토지 도급경영권을 부

여하였음. 2007년에는 “물권법”(物權法)을 반포하여 농민의 토지권리를 재차 확인하였음.

- 기본경영제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함.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통분결합의 이중경영체제를 견지해야 함. 이로써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정에 따라 결정된 것임. 이 기본제도는 중국의 현 단계 경제발전 수준과 부합되는 농촌기본경영제도이고 또한 중국 농촌정책의 초석임.
-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시장(流轉市場)을 완비함. 현재의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으로 장기 불변함을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법에 의거하고 자발적이며 유상(有償)의 원칙하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토지의 이전을 실행해야 함. 또한,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규모화 된 경영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며 전업대농(專業大戶),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규모경영 주체의 발전을 지원해야 함. 토지도급 경영권 이전의 주체는 농민이고 이전의 체제는 시장체제이며 이전의 형태에는 도급양도, 임대, 호환, 양도 및 주식형 협력 등이 있음. 이전의 엔드라인은 토지의 집체소유의 성격을 변화시켜서는 안 됨, 토지의 사용용도를 변화시켜서는 안 됨, 농민의 토지도급권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 농업경영체제메커니즘의 혁신을 추진함. 가정경영은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기술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켜야 하며 집약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통일경영은 농가 연합과 협력 발전을 지향하고 다원화, 다차원, 다형식의 경영 서비스 체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집체조직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또한, 농민의 신행협력조직을 육성하고 각종 농업사회화 서비스조직을 발전시키며 용두기업과 농민이 긴밀한 이익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조직화의 수준 제고에 진력함.

2.2. 경지보호제도

- 중국은 인구는 많고 토지가 적으며 경지자원이 결핍한 국가임. 현재 중국의 경지면적은 18.26억 무로 국민 일인당 경지면적은 약 1.35무임. 이는 전 세계 평균수준의 40% 밖에 되지 않음. 이러한 특수한 국정에 의거 중국은 경지보호를 장기간 기본국가정책의 하나로 견지하여 왔음. “헌법”과 “토지관리법”, “기본농전보호조례”와

“농촌 토지 도급법” 등 일련의 법률·법규 중에는 모두 경지자원을 보호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기본농지보호제도를 수립하였음. 국가는 일정시기의 인구와 사회경제발전이 농산물에 대한 요구와 토지이용 총 계획에 따라 기본농지를 결정함. 기본농지는 주로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하고 확정한 식량, 면화, 유지 생산 기지 내의 경지, 양호한 수리시설과 수토유지시설을 갖춘 경지, 개량계획이 실시되고 있거나 개량 가능한 중·저산의 경지 및 과학연구, 교학실험지 등이 포함됨. 국가는 기본농지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이용과 배양을 결부시키며 엄격히 보호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기본농지 면적이 감소하지 않고,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며, 토질이 제고되는 것을 확보함.
-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행함. 중국정부는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용지절약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또한, 규획과 계획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발휘하여 토지이용구조를 최적화하였음. 특히 건설용 토지의 심사승인관리를 강화하였음. 중국정부는 토지징발제도(征地制度)의 개혁을 추진하여 농민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였음. 특히 지방정부의 경지보호 책임을 강화하여 18억 무라는 경지면적 레드라인을 보호하는 목표를 지켰음.
- 경지의 품질향상을 강화하였음. 국가에서는 농민과 농촌경제조직에서 토지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킬 것을 격려하고 있음. 그래야만 지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기본농경지보호조례”에는 농업생산자는 경영하고 있는 기본농경지에 유기비료를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함을 격려하고 무한다고 규정하였음. 특히 기본농경지를 사용하여 농업생산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의무적으로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정하였음. 근년에 들어 국가에서는 농경지 지력건설의 기준을 높이고 토양측정을 통한 배합 시비 등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경지건설을 강화해 왔음.

2.3. 식량안보정책

- 중국은 세계 제1의 인구대국으로 이 많은 인구의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대 중

국정부가 직면 한 가장 중대한 일임.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일련의 식량발전 정책과 조치를 취해왔으며 또한 시장경제 규칙에 부합되는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하였음. 중국의 식량안보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을 견지함. 중국은 세계에서 식량 생산대국임과 동시에 소비대국임. 매년 식량생산량과 소비량은 모두 전 세계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의 연간 식량무역 총량은 약 2억 톤인데, 이는 중국 식량소비총량의 40%에 불과한 수량임. 따라서 국내 기본적인 자급에 입각하여 중국인의 밥그릇은 자기 손으로 견고히 받쳐 들어야 하므로 우리 자신의 밥그릇은 주로 자국에서 생산한 식량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곧 중국이 필히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방침임. 앞으로 일정시기동안의 농산물의 수급 형세와 자원조건을 결부하여 분석해보면 쌀, 밀, 옥수수의 3대 주곡의 자급률은 95%이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쌀과 밀의 양대 식량은 자급률 100%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식량 주산지를 식량안보 확보의 중점으로 삼음. 근년에 국가는 식량 주산지를 중점으로 농업종합개발, 대형 상품화 식량기지, 식량산업공정, 《전국1000억 근 식량생산능력규획(2009~2020년)》과 고표준농경지건설 등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식량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하였음. 국가의 강농혜농부농정책은 주로 식량주산지와 식량작물 재배 농가를 중점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식량생산대현(產糧大縣)에 대해 장려와 보조를 부여해 주었고, 식량 생산 농민에게는 직접보조를 해주어 식량생산 종사자로 하여금 효익이 있고 손해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량 주산지와 식량생산농민들의 식량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보호하고 동원함.
- 과학기술진보를 통해 단위면적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 노선임. 중국은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고를 국가의 식량안보 확보의 주요 노선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중점적으로 육종, 병충해방제 등 중대과제를 해결하는데 지원하고 종자산업체계를 육성하며 우량품종의 개발과 보급능력개발을 지원하였음. 또한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음.
- 식량생산용 농경지의 생산능력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함. 고표준 농경지를 대규모로 건설함. 2020년까지 8억 무의 가뭄과 홍수에 관계없이 수확을 보장할 수 있

는 교표준 농경지를 확보할 예정임. 소형 관개시설을 건설을 강화하고 절수관개와 한작(旱作)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농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유도함. 서남중점수원공정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공정성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

2.4. 농업세수정책

- 새로운 세기로 들어서면서 농업세수정책은 중국역사상 큰 변화가 일어났음. 농촌세비개혁 이전에 중국에서는 농업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주요 세금 종류는 농업세, 농업특산세, 목축세, 도축세 등이 있었음.
- 2000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에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농촌세제개혁을 가동하였음. 주 내용은 “농업4세”를 취소하는 것이었음. 첫 번째, 농업세를 취소하였음. 우선 농업세 세율을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 이르러 “농업세조례”를 폐지시켰으며 전국 범위 내에서 모든 농업세를 취소하여 농민은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음. 두 번째, 농업특산세를 취소하였음. 2004년부터 중국은 담배이외의 농업특산세를 취소하였음. 세 번째, 2004년부터 국무원에서는 정식으로 “도축세잠행조례”를 폐지시켰음. 네 번째, 목축세를 취소하였음. 2005년부터 국가에서는 전면적으로 목축세를 취소하였음. “농업4세”를 전면 취소함으로써, 2600여 년 간 시행해 오던 농민이 소유한 토지면적에 따라 납세 하던 역사가 종료되었음.
- 농업세와 각종 비용의 징수를 취소함에 따라 농촌세비개혁 이전인 1999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농민의 부담은 1,335억 위안이 경감되었고, 8억 명의 농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음. 농업세수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임. 이 또한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세금 우대정책과 부합되며 농업생산을 보호하는 관례에 부합되는 일임.

2.5. 농업보조정책

- 새 중국이 성립된 이후, 장시간 동안 중국은 국가적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잉여로 공업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을 취해왔음. 농업세수, 농산품 가격 “협상

가격차” 등 방식으로 농업이 공업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하였음.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중국의 경제는 장족의 발전을 해왔고 공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가적 재정능력도 강해졌음. 이로써 중국은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침을 사용하고 있음. 국제적인 경험을 빌어 WTO 규칙에 부합되며 중국국정에 맞는 농업보조정책을 수립하였음. 현재 중국의 농업보조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가 있음.

- 식량재배 농민에게 직접적인 보조(직접 지불)를 실행. 2004년부터 시작하여 농민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국은 과거 유통단계에 사용하던 보조를 식량생산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였음. 식량생산 주산지를 위주로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식량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2006년부터 농자재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농민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적 직접 보조 제도를 수립하여 농민이 화학비료, 농약, 농용유류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임.
- 우량종자의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우량종자 보조정책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실시하였음. 이는 국가 재정을 이용하여 농민이 우량종자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우량종자의 보급과 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음.
- 농기구 구매보조. 중국은 2004년부터 농기구 구매를 위한 보조정책을 실시하였음. 농민이 선진적인 농기구를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여 농업기계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의 장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2013년 농업 “4보조” 자금의 규모는 1672.5억 위안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4.5억 위안 증가하였음. 새로 증가된 보조금은 주로 주산지와 신형 경영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됨.

2.6. 농산품가격정책

- 지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중국은 상당해 긴 시기동안 주요 농산품에 대해 통일적으로 구매하고 통일적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사용하였음. 이로 인해 농산품 시장은 국

유기업에 의해 독점되었으며 농산품의 가격은 국가에서 정하였음. 또한 농산품 가격을 낮추는 가격정책을 실시하였음.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시장의 개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농산품 시장 역시 점차 개방되었음. 2004년 국가에서 식량유통을 자유화함에 따라 담배, 누에고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품에 대해 시장유통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농산품의 가격 역시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였음. 이로써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기초적인 작용이 발휘되었음.

- 시장체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동시에 농산품의 특수한 역할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음. 2004년부터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량시장과 가격을 전면 개방하였고 또한 중국은 벼 최저가격수매정책을 수립하였음. 국가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 생산의 원가 등 요인에 따라 식량최저 매수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최저 매수가격보다 높을 시 정부는 시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시장가격이 최저매수가격보다 낮을 시 정부는 식량유통기업에 위탁하여 특정지역과 특정시간에 매수와 판매를 통해 안정을 유지함.
- 2006년부터 소맥 또한 최저매수가격정책 항목에 포함시켰음. 현재 이 정책은 주로 벼(쌀), 밀 두 가지 주요 식량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근년에 밀과 쌀의 최저매수가격은 매년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량생산을 위한 원가상승을 보상하며 농민이 식량작물 재배를 통해 수익이 안정적으로 향상됨을 촉진하고 농민의 생산을 예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

2.7. 농산품무역정책

-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중국 농산품무역은 엄격한 계획 관리를 진행하여 왔음. 정책의 목표는 주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거나 여유분과 부족한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었음. 개혁개방 이후로는 전 세계 경제일체화와 무역자유화의 발전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점차적으로 농산품의 무역체제를 개혁하였으며 대폭으로 관세를 저하시키고 환율체제를 개혁하며 가격체제를 개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방식과 수단을 점차적으로 국제화 시켰으며 이는 농업의 대외개방과 농산품 무역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음. 1978년, 중국 농산품의 수출액은 61달러이었을 뿐

인데 2012년에는 중국 농산품의 수출입 총액은 이미 1,700억 달러에 달하였음.

-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은 농업면에서 대폭 감면약속을 하였음. 주로 농산품 관세 감소, 농산품 수출보조 취소, 일부 중요농산품에 대해 관세할당관리와 농산품 수입관세 배액 관리 제도를 수립하였음. WTO가입 이후, 중국은 WTO의 규칙을 이행하였으며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면에서 약속한 이상의 공헌을 하였음. 현재 중국 농산품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15.2%로 하락하였으며 WTO 성원국의 평균수준의 1/4밖에 되지 않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농산품시장이 가장 개방된 국가로 되었음.

3 결론과 전망

- 현재, 중국은 공업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 발전을 이끄는 단계에 들어섰음. 또한, 전통농업을 개조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로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음. 농업농촌 발전의 단계적 발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금후 일정 시기의 중대임무로 삼아야 할 것임. 또한 강농해농부농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해나가야 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기초를 견고히 다져야 할 것이며 농업현대화 수준과 농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야 함.

〈종합토론 요지〉

- 〈질의1〉: 중국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토지의 질의 개선이 매우 중요할 것임.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지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혹시 친환경 비료의 생산이나 수입을 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은지?
- 〈답변1〉: 중국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갑자기 교체한다면 식량생산량이 감소될 것이고 또한 현재의 친환경 비료의 생산 원가가 비교적 높기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계속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갈 계획임.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겸해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음. 예로써 서북지역의 수자원 결핍지역은 관개시스템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중국의 농작물 폐기물을 이용한 생물비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시비도 토양을 측정하여 맞춤 시비를 하는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질의2〉: 중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삼농정책에서 4화동보(四化同步)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 〈답변2〉: 중국은 예로부터 농업을 중요시하는 일괄적인 정책을 펴왔음.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은 중요한 부분임. 13.5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중국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임.

○ 〈질의3〉: 중국 정부에서는 농부산물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생각은 없는지? 사료가공이라든가 유기비료제조 관련하여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고려가 없는지?

－ 〈답변3〉: 생태농업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정책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부산물을 활용한다든가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원할 방침이지만 중국 정부의 농업부, 상업부, 공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 앞으로 서서히 해결해 나갈 것임.

○ 〈질의4〉: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양적인 수요에서 질적인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 양적인 확보가 어려울 텐데 이에 관해 중국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 〈답변4〉: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중요시하고 있음. 중국의 식량안보는 배불리 먹기 위한 식량 생산량보다 잘 먹기 위한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하고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잘 먹기 위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소비자는 점점 잘 먹고 안전하게 먹기를 원하고 있음.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식량의 자급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입량을 증가하는 것임.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3년 1~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7%로 2012년 동기의 7.7%에 비해 같은 수준이었음.
- － 동 기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각각 3.4%와 7.8%로 전년 동기의 4.2%와 8.1%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3차 산업은 GDP 증가율이 8.4%로 전년 동기의 7.9%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13년 1~9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9.6%로 2012년 동기의 10.0%에 비해 하락하였음.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GDP 성장률	9.6	8.7	10.3	9.2	7.8	7.7	7.6	7.7
1차산업	5.4	4.2	4.3	4.5	4.5	3.4	3.0	3.4
－ 농업 전체	-	3.8	4.0	-	4.3	3.4	-	-
·재배업	-	2.2	3.3	-	4.0	3.4	-	-
·임업	-	4.9	9.9	-	7.0	5.1	-	-
·축산업	-	4.9	2.3	-	4.2	2.8	-	-
·어업	-	3.2	3.4	-	4.5	4.5	-	-
2차산업	9.9	9.5	12.2	10.6	8.1	7.8	7.6	7.8
3차산업	10.4	8.9	9.5	8.9	8.1	8.3	8.3	8.4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부가가치성장률	12.9	11.0	15.7	13.9	10.0	9.5	9.3	9.6
경공업	12.3	9.7	13.6	13.0	10.1	8.7	7.3	-
중공업	13.2	11.5	16.5	14.3	9.9	9.8	10.0	-
국유기업	9.1	6.9	13.7	9.9	6.4	5.2	5.2	6.3
사영기업	20.4	18.7	20.0	19.5	14.6	13.9	13.1	12.8
집체기업	8.1	10.2	9.4	9.3	7.1	6.7	5.0	4.5
주식합작기업	11.4	10.3	14.0	14.7	6.5	2.7	7.6	7.3
주식회사	15.0	13.3	16.8	15.8	11.8	11.3	10.9	11.0
직접투자기업	9.9	6.2	14.5	10.4	6.3	6.9	7.4	7.9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동 기간 기업의 성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국유기업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는 전년 동기보다 대체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그러나 직접투자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2 고정자본 투자

- 2013년 1~9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0.2%로 2012년 동기의 20.5보다 하락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31.1%와 17.1%로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였음. 그러나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2.3%로 전년 동기의 19.4%에 비해 증가하였음.
 - 동 기간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9.2%, 18.4%와 35.4%로 전년 동기의 33.5, 32.4%와 36.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반면 연초제조업의 증가율은 21.3%로 전년 동기의 -1.7%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동 기간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2.2%로 2012년 동기의 27.0%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음.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투자 성장률	26.1	30.5	24.5	23.7	20.6	20.9	20.1	20.2
1차산업(농림목어업)	54.5	49.9	18.2	25.0	32.2	31.4	33.5	31.1
2차산업 이 중	28.0	26.8	23.2	27.3	22.0	16.2	15.6	17.1
- 농부식품가공업	25.7	38.2	28.1	44.1	32.0	23.8	25.9	29.2
- 식품제조업	17.8	32.4	28.8	23.1	28.1	15.5	15.7	18.4
- 음료제조업	22.4	22.4	25.6	40.7	36.2	41.0	38.6	35.4
- 연초제조업	20.9	63.7	-0.4	37.1	-8.7	40.3	10.9	21.3
3차산업 이 중	24.1	33.0	25.6	21.1	20.6	23.5	23.9	22.3
- 숙박, 외식업	30.5	34.4	27.9	34.3	30.2	29.2	25.0	22.2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소비

- 2013년 1~9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2.9%로 2012년 동기의 14.1%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 동 기간 도시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2.7%로 전년 동기의 14.0%에 비해 하락하였음. 농촌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4.5%로 전년 동기의 14.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소매업과 외식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13.4%와 8.9%로 전년 동기의 14.2%와 13.2%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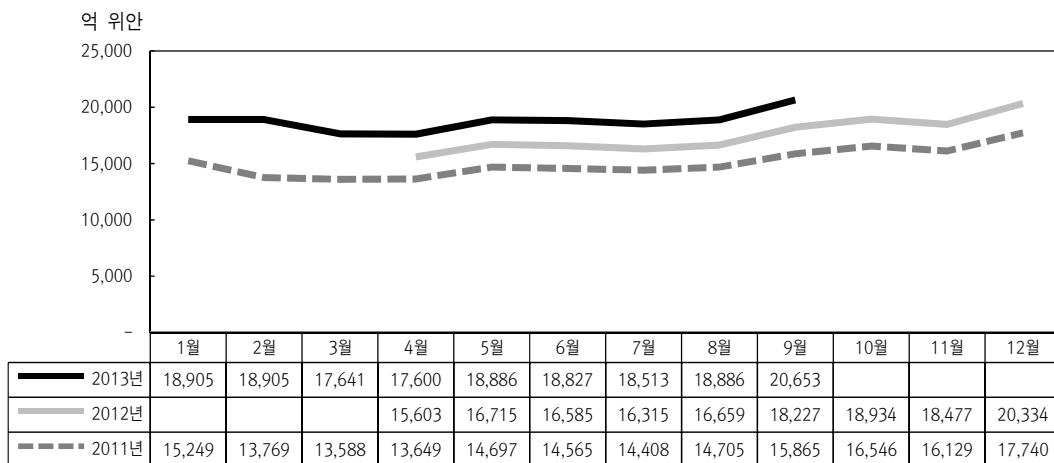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16.3	16.8	17.0	17.1	14.8	14.4	14.1	14.3	12.4	12.7	12.9
지역별	도시	16.4	16.9	17.1	17.2	14.9	14.3	14.0	14.3	12.2	12.5	12.7
	농촌	15.8	16.2	16.4	16.7	14.6	14.5	14.4	14.5	13.9	14.3	14.5
업종별	소매업	16.5	16.9	17.0	17.2	15.0	14.5	14.2	14.4	12.9	13.2	13.4
	외식업	15.3	16.2	16.5	16.9	13.3	13.2	13.2	13.6	8.5	8.7	8.9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변화 추이



주: 2013년 1월과 2월의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발표되지 않고 1~2월 누계치(37,809.8억 위안)만 발표됨.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 물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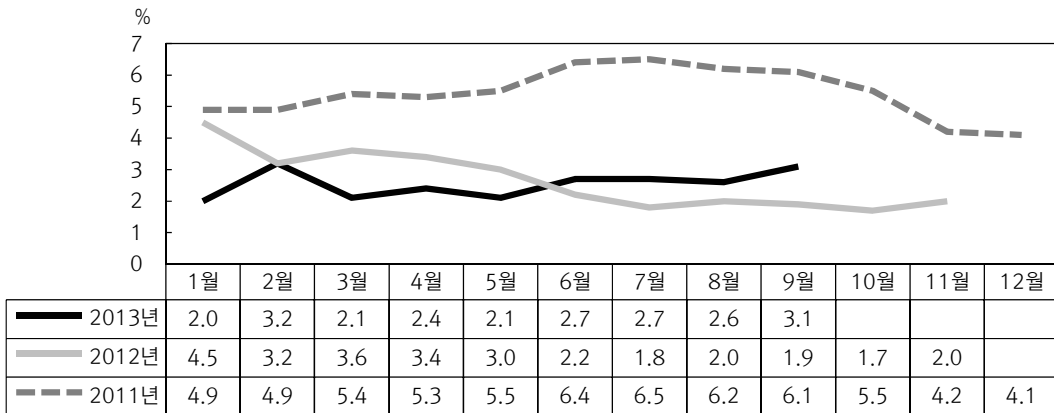
○ 2013년 1~9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5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함.

－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9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 3/4분기에는 3%의 증가율을 나타냄.¹

- 2013년 1~9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가격,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의류 및 복장,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4%, 0.6%, 2.3%, 1.5%, 1.5%, 1.4%, 2.8% 상승하였고 교통 및 통신 가격은 0.4% 하락하였음.
- 2013년 1~9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4% 상승하였음. 이는 식품가격을 구성하는 식량,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금 알,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 4.1%, 7.6%, 3.6%, 5.2%, 5.6%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임.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¹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운데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식품가격 33.2%,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3.9%, 의류 및 복장 가격 9.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10.0%,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6.0%,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14.2%, 교통 및 통신 가격 10.4%, 주택(거주) 가격 13.2%임(<http://www.8ttt8.com/jingji/w4123.htm>). 이 중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식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0% 정도이며, 돼지고기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정도임.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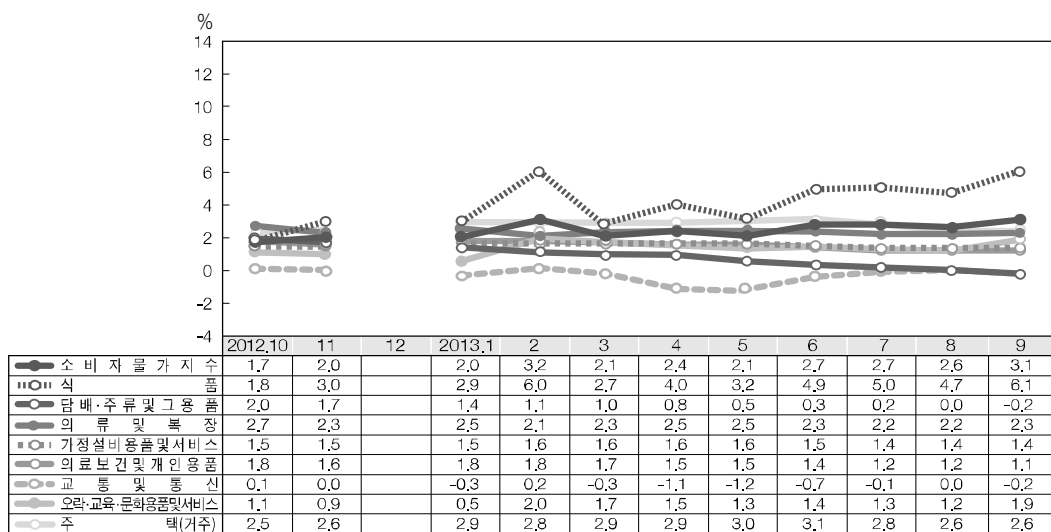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소비자물가지수	99.3	103.3	105.4	102.6	102.4	102.4	102.5
식품	100.7	107.2	111.8	104.8	103.8	104.0	104.4
-식량	105.6	111.8	112.2	104.0	105.0	105.1	104.9
-육류·가금 및 그 제품	91.3	102.9	122.6	102.1	103.2	102.9	104.1
-가금 알	101.6	108.3	114.2	97.1	114.8	111.3	107.6
-수산물	102.5	108.1	112.1	108.0	103.9	103.2	103.6
-신선채소	115.4	118.7	100.5	115.9	100.5	102.3	105.2
-신선과일	109.1	115.6	116.4	98.8	100.7	104.1	105.6
담배·주류 및 그 용품	101.5	101.6	102.8	102.9	101.2	100.8	100.6
의류 및 복장	98.0	99.0	102.1	103.1	102.3	102.4	102.3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0.2	100.0	102.4	101.9	101.6	101.6	101.5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1.2	103.2	103.4	102.0	101.7	101.6	101.5
교통 및 통신	97.6	99.6	100.5	99.9	99.9	99.4	99.6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99.3	100.6	100.4	100.5	101.4	101.4	101.4
주택(거주)	96.4	104.5	105.3	102.1	102.9	102.9	102.8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13년 9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99.6으로 전년 동월대비 3.5% 상승하였음. 기업상품가격지수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2011년 말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4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단, 2012년 8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9월 기업상품가격지수를 상품별로 보면 농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0.1%과 10.3% 상승한 반면 석탄·석유·전기는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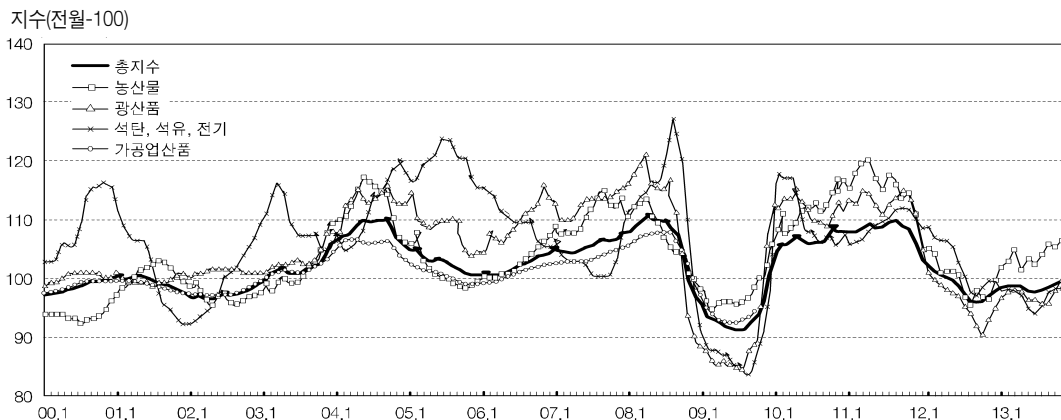
표 6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구 분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지수	97.3	98.0	98.4	98.9	98.9	98.3	97.9	97.7	98.1	98.8	99.3	99.6
농산물	96.4	99.7	101.9	103.0	105.1	101.6	103.5	102.4	104.4	106.1	105.3	106.7
광산물	93.0	95.1	96.8	97.8	98.1	98.0	96.4	96.5	95.8	95.7	98.0	99.7
석탄·석유·전기	99.6	99.5	98.0	98.3	98.1	97.3	95.0	94.2	95.6	97.8	98.3	98.2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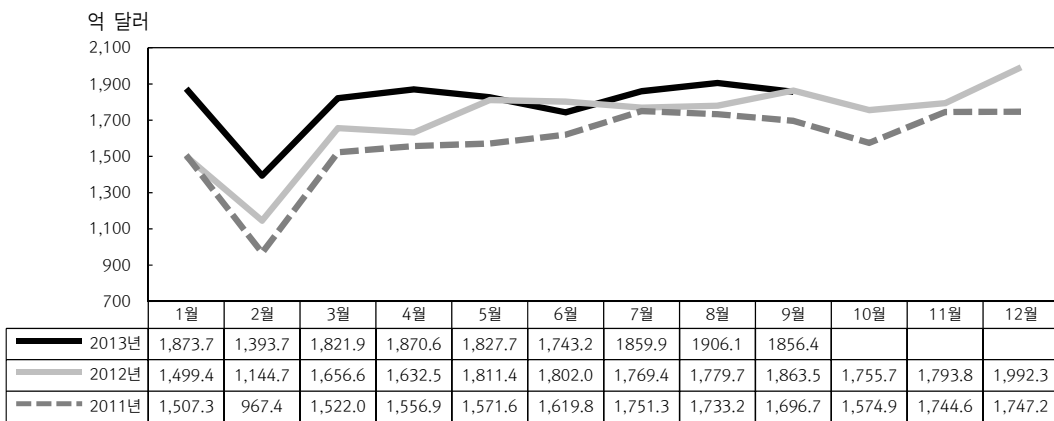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5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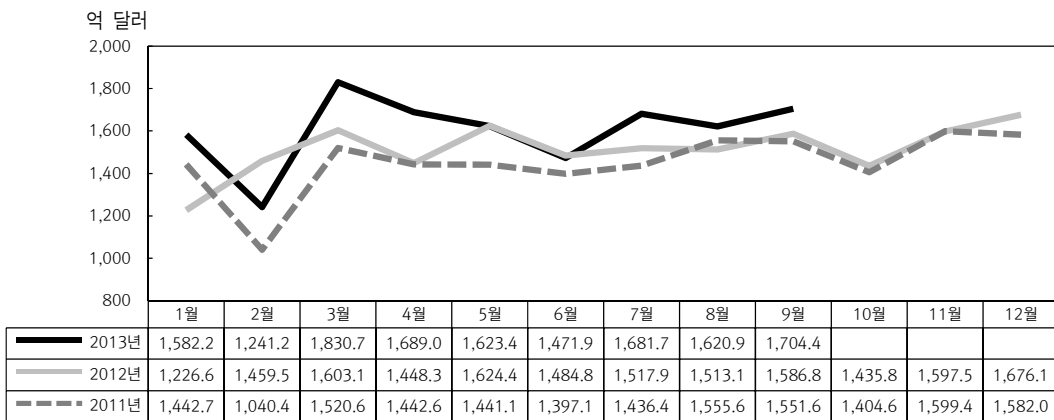
- 2013년 1~9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30,60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 하였음.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09년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0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1, 2012, 2013년에도 지속되고 있음.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012년 3/4분기 6.2%에서 2013년 2/4분기 7.7%로 증가하였음.

그림 5 중국의 수출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6 중국의 수입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 2013년 1~9월 중국의 수출은 16,148.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4,455.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수출입 총액	22,072.7	29,727.6	36,420.6	38,667.6	9,746.7	19,976.9	30,603.7
- 증가율(%)	-13.9	34.7	22.5	6.2	13.5	8.6	7.7
수출 총액	12,016.6	15,779.3	18,986.0	20,489.3	5,088.7	10,528.2	16,148.6
- 증가율(%)	-16.0	31.3	20.3	7.9	18.3	10.4	8.0
수입 총액	10,056.0	13,948.3	17,434.6	18,178.3	4,658.0	9,448.7	14,455.0
- 증가율(%)	-11.2	38.7	24.9	4.3	8.6	6.7	7.3
무역 수지	1,960.6	1,831.0	1,551.4	2,311.1	430.7	1,079.5	1,693.6
- 증가율(%)	-34.2	-10.8	-14.5	49.0	3,780.2	57.4	14.6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6 금융 및 환율

- 2013년 9월 광의통화(M2)는 107조 7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하였음. 2013년 3/4분기 통화량 증가율은 약 14% 정도로 2012년 3/4분기의 19% 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 2013년 9월 협의통화(M1)는 31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하였음. 2012년 3/4분기에는 통화량 평균 증가율이 6%를 머물렀으나 2013년 3/4분기에는 약 10% 정도로 대폭 상승하였음.
- 2013년 9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5조 7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하였음. 시중 유통 현금(M0)은 2012년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월 6조 2천 억 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월대비)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광의통화(M2) ³	9,364	9,448	9,742	9,921	9,986	10,359	10,326	10,422	10,545	10,522	10,613	10,774
-증가율(%)	14.6	14.5	14.4	15.9	15.2	15.7	16.1	15.8	14.0	14.5	14.7	14.2
협의통화(M1) ²	2,933	2,969	3,087	3,112	2,961	3,109	3,067	3,102	3,136	3,106	3,141	3,123
-증가율(%)	6.0	5.5	6.5	15.3	9.5	11.8	11.5	11.3	9.1	9.7	9.9	8.9
유통 중 현금(M0) ¹	515	524	547	624	603	555	556	544	542	544	549	565
-증가율(%)	10.5	10.8	7.9	4.3	17.3	11.9	10.0	11.0	9.9	9.5	9.4	5.8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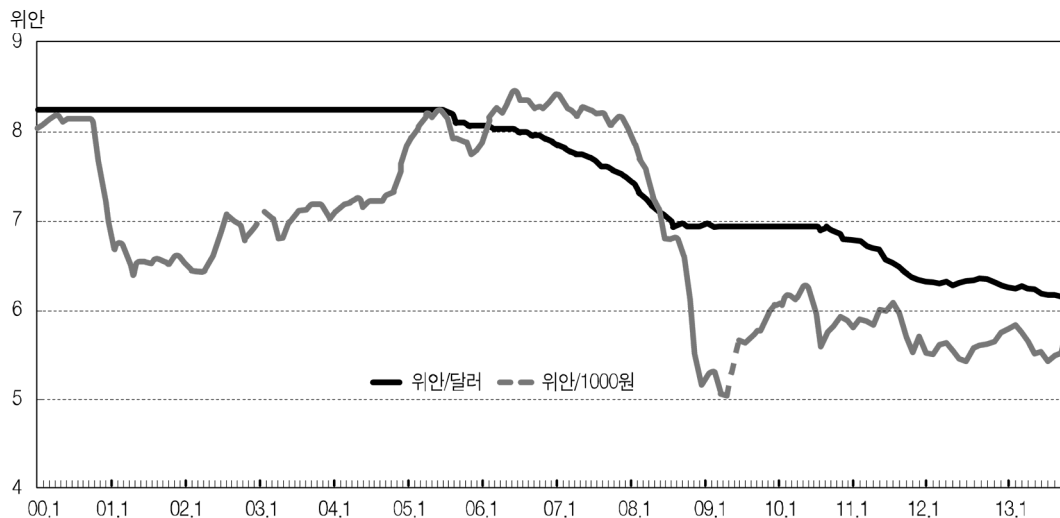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otongji/tongjishuju/>)

○ 2013년 7월, 8월, 9월의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6.1725, 6.1708, 6.1588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7월, 8월, 9월의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5.4463, 5.4873, 5.6424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위안/달러	6.3144	6.2953	6.2900	6.2787	6.2842	6.2743	6.2471	6.1970	6.1718	6.1725	6.1708	6.1588
위안/1000원	5.6680	5.7339	5.7974	5.8350	5.7400	5.6319	5.5182	5.5209	5.3987	5.4463	5.4873	5.6424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가격 동향

1 농산물 도매가격지수¹ 동향

- 중국의 전체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2월 218.4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6월 후반부터 증가추세가 지속되며 9월 초에 최고치 213.3으로 기록하였음.
- 중국의 “채림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 182.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2월 222.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유지하다가 6월 후반부터 증가추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9월 초에 최고치 216.6으로 기록하였음.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추이(2009.1~2013.9)



자료: 農 業 部(<http://www.agri.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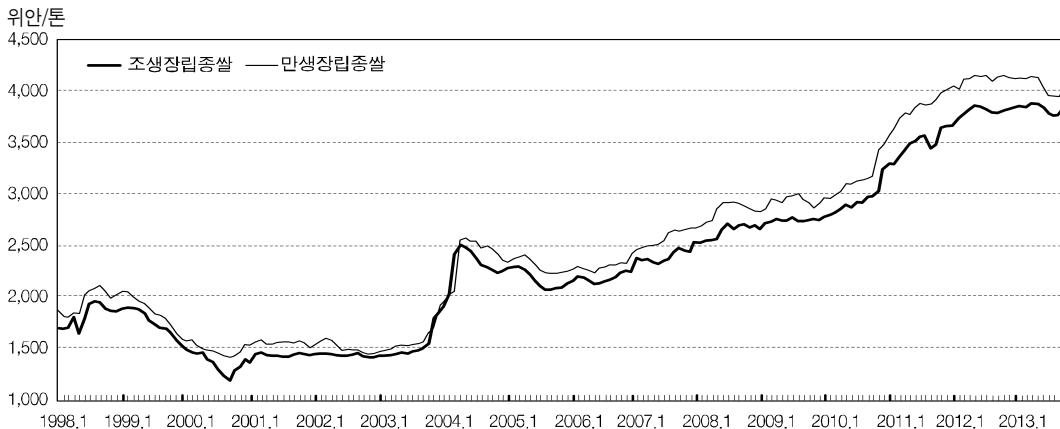
1 농산물 가격지수는 2000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산정한 것임.

2 식량작물²

2.1. 장립종 쌀(秈米)

-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3년 3월 조생 장립종 쌀 및 만생 장립종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3,879위안과 4,147위안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7월에 각각 3,767위안과 3,954위안으로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였음.
- 조생 장립종 쌀(早秈米)³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3,79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801위안에 비해 0.26% 하락하였음.
 - 월별로 보면 7월 3,767위안, 8월 3,777위안, 9월 3,829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7월과 8월에 각각 1.2%, 0.5% 하락하였고 9월에 각각 0.9% 상승하였음.

그림 2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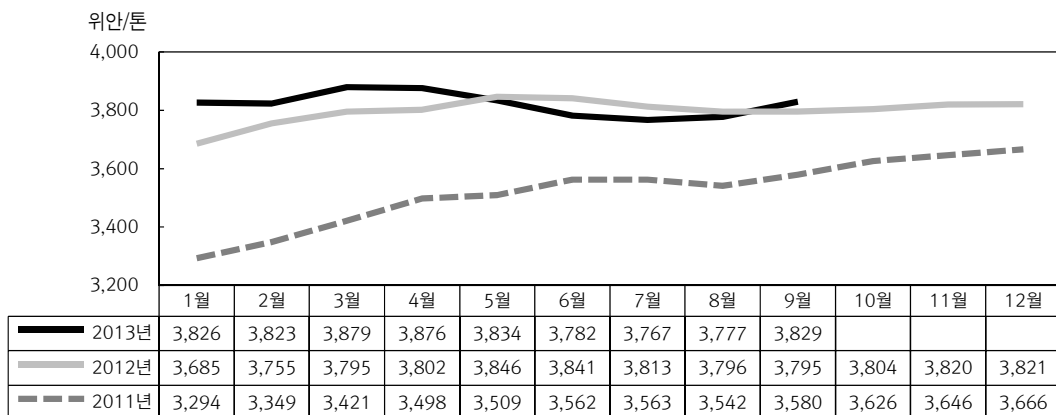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축식량에 대한 경영·관리(국가의 구매·판매 위탁 업무 포함)를 책임지고 있는 국유기업인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정주화량과 기주식유한회사(鄭州華糧科技股份有限公司)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중국농업부의 중국농업신식망(中國農業信息網)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안휘성,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14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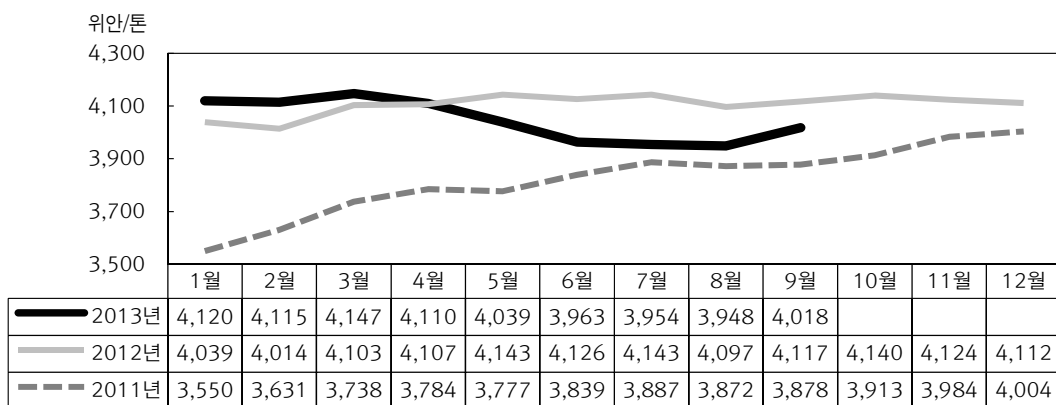
- 만생 장립종 쌀(晩秈米)⁴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3,97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119위안에 비해 3.5% 하락하였음.
- － 월별로 보면 7월 3,954위안, 8월 3,948위안, 9월 4,018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7월과 8월과 9월에 각각 4.6%, 3.6%, 2.4% 하락하였음.

그림 3 조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9)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그림 4 만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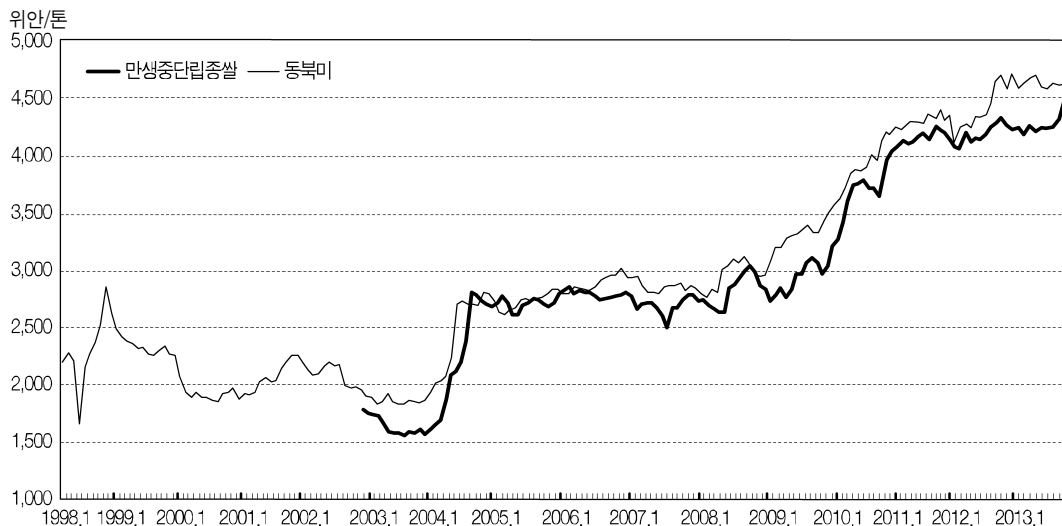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4 안휘성, 복건성,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2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2.2. 중·단립종 쌀(粳米)

- 중국 남부지역이 주산지인 만생 중단립종 쌀(晚粳米)⁵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9월 톤 당 4,314위안을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4월에는 톤 당 4,120위안으로 12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하였음.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 9월에는 톤 당 4,470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인 동북미(東北米)⁶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도 초반 이후 급격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011년 8월 톤 당 4,449위안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나타냈음. 2012년 들어 상승추세로 전환하여 2012년 12월 톤 당 4,650위안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13년에 4,600위안의 수준에서 등락했다.

그림 5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9)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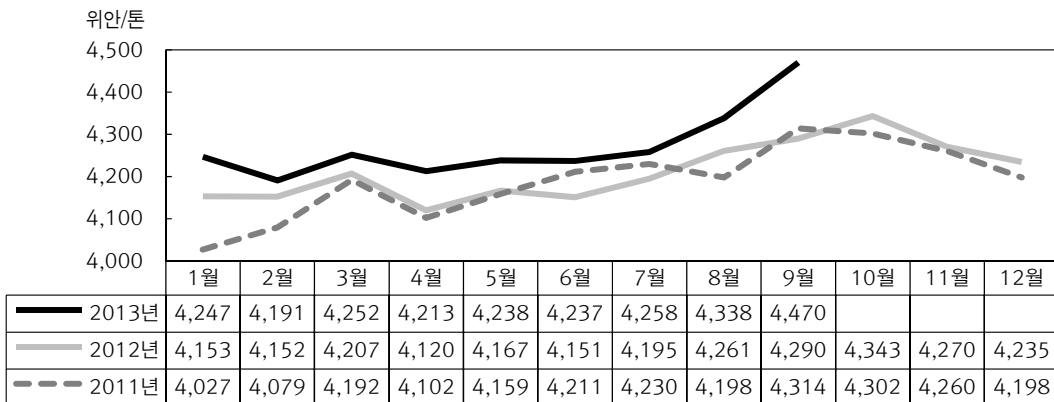
5 안휘성, 하남성, 길림성, 강소성, 청해성, 섬서성, 절강성의 1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6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강서성, 내몽고자치구, 천진시, 절강성의 19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 만생 중단립종 쌀(晚梗米)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35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249위안에 비해 2.5%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7월 4,258위안, 8월 4,338위안, 9월 4,470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7월과 8월과 9월에 각각 1.5%, 1.8%, 4.2% 상승하였음.

그림 6 만생 중단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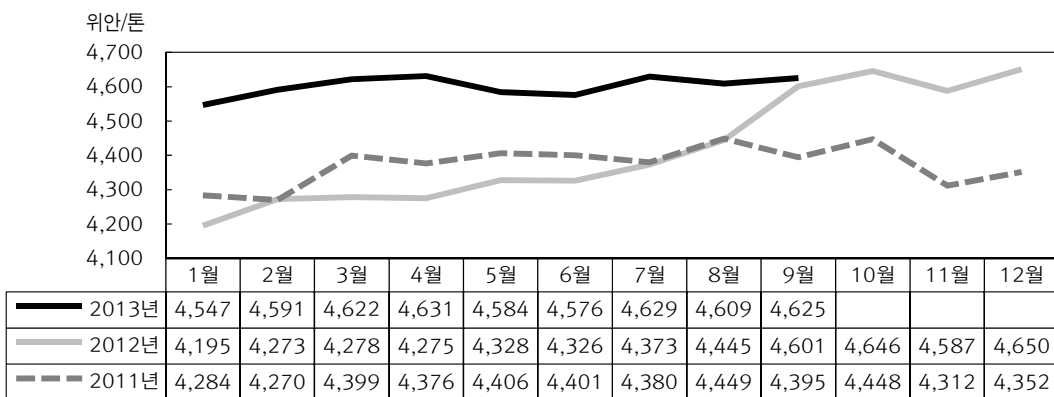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동북미(東北米)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62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473위안에 비해 3.3%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7월 4,629위안, 8월 4,609위안, 9월 4,625위안으로 등락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7월과 8월과 9월에 각각 5.9%, 3.7%, 0.5% 상승하였음.

그림 7 동북미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9)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3. 밀

- 중국 중·북부지역이 주산지인 밀(小麥)⁷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2012년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톤 당 2,480위안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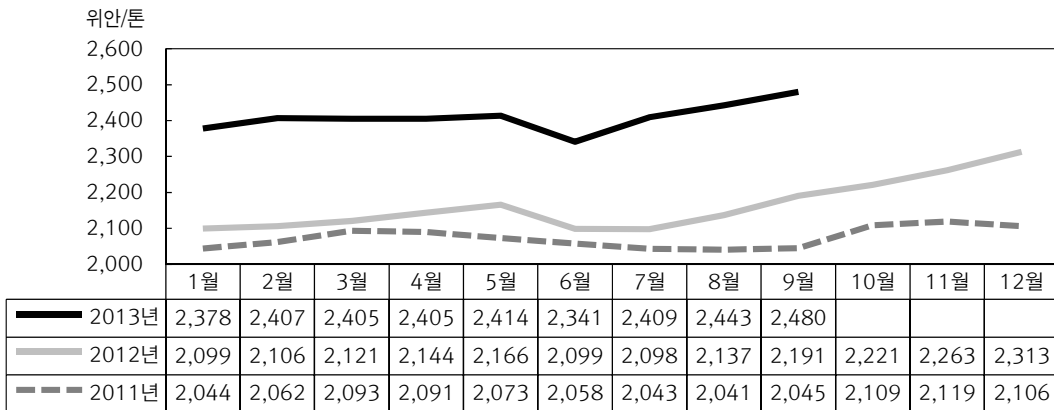
그림 8 중국의 밀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5.1~2013.9)



- 밀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44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142위안에 비해 14.1%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7월 2,409위안, 8월 2,443위안, 9월 2,480위안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14.8%, 14.3%, 13.2% 상승하였음.

⁷ 안휘성,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하남성, 호북성, 강소성, 산둥성, 산서성, 천진시, 신강성의 33개 지역에서 보고된 3등급(標三) 평균가격임.

그림 9 밀 월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1.1~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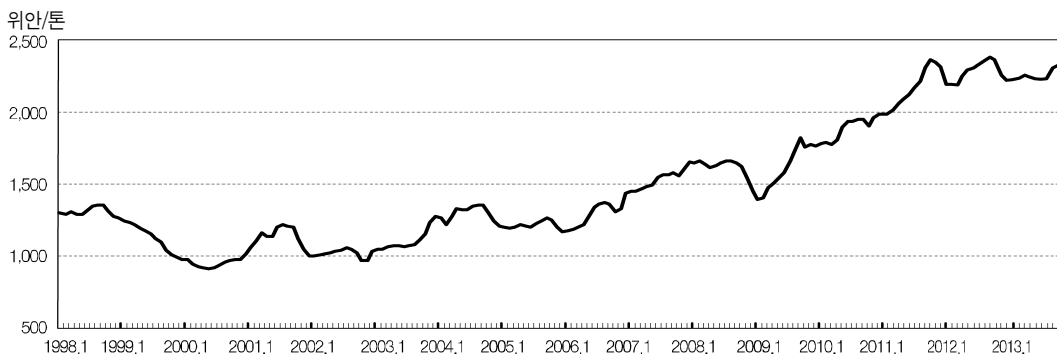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4. 옥수수

- 중국 동북부지역이 주산지인 옥수수(玉米)⁸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1년 말 하락한 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8월 톤 당 2,369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 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3년 7월에 2,307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음.

그림 10 중국의 옥수수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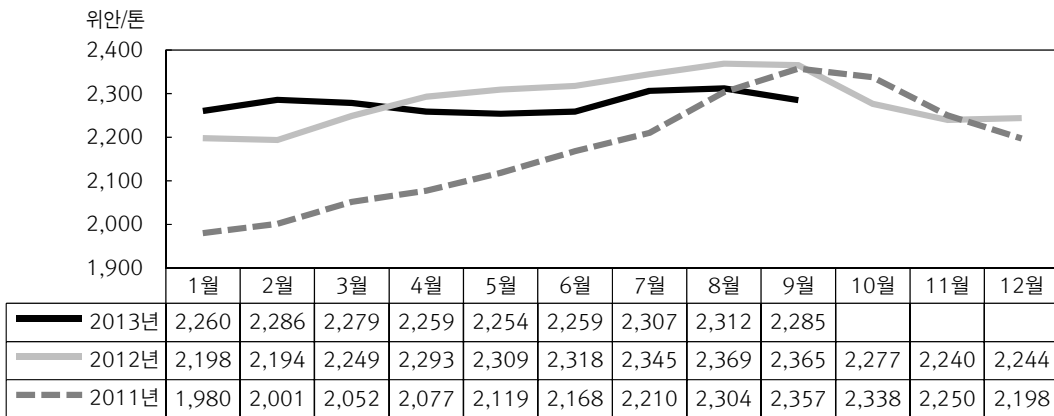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8 안휘성, 복경시, 복건성, 감숙성, 광둥성, 광서성, 하북성, 하남성, 흑룡강성, 호북성, 길림성, 강소성, 요녕성, 내몽고성, 산둥성, 산서성, 천진시의 55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 옥수수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30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360위안에 비해 2.5% 하락하였음.
- － 월별로 보면 7월 2,307위안, 8월 2,312위안, 9월 2,285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1.6%, 2.4%, 3.4% 하락하였음.

그림 11 옥수수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9)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5. 대두

- 대두(大豆)⁹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후반부터 2008년 초반 까지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인 후 2009년 초반까지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였음. 2010년 7월부터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톤 당 4,849위안으로 12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하락하기 시작하며 2013년 8월에 4,753위안의 저가를 기록하였음.
- 대두의 2013년 7~9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76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295위안에 비해 11.0% 상승하였음.
- － 월별로 보면 7월 4,789위안, 8월 4,753위안, 9월 4,763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0%, 9.1%, 11.9% 상승하였음.

9 하남성, 흑룡강성, 길림성, 산둥성의 9개 지역에서 보고된 3등급(標三) 평균가격임.

그림 12 중국의 대두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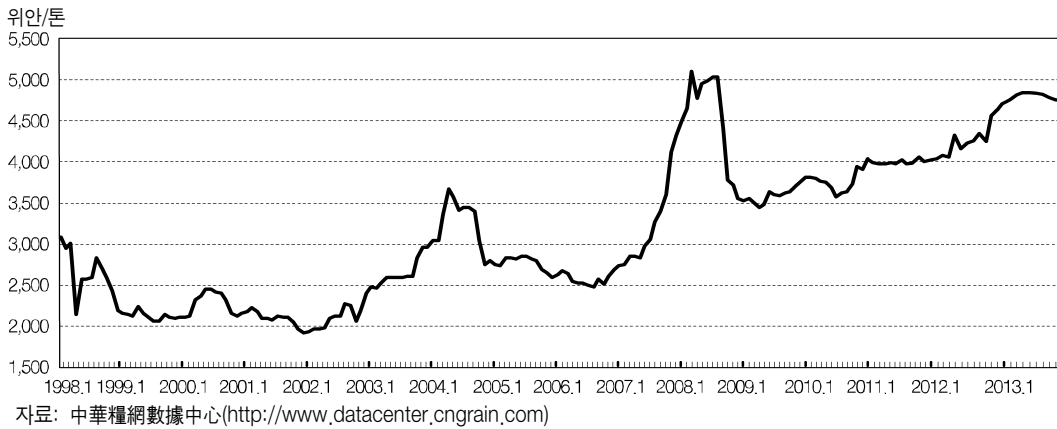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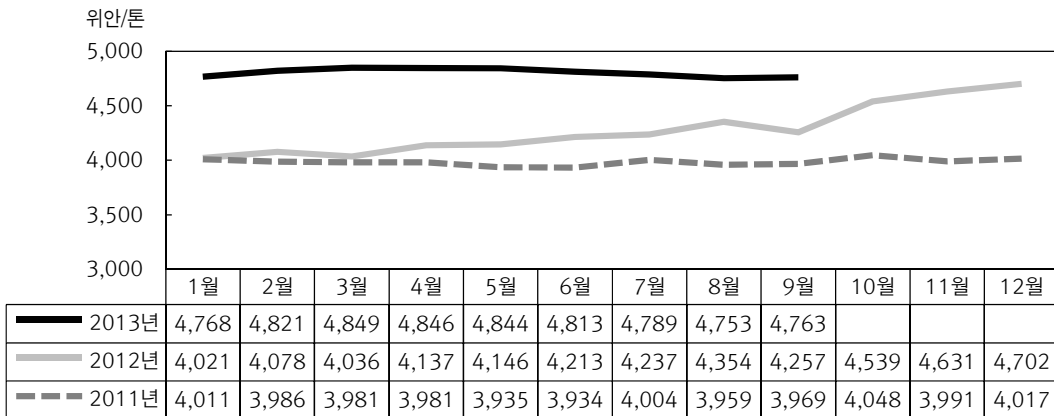


그림 13 대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9)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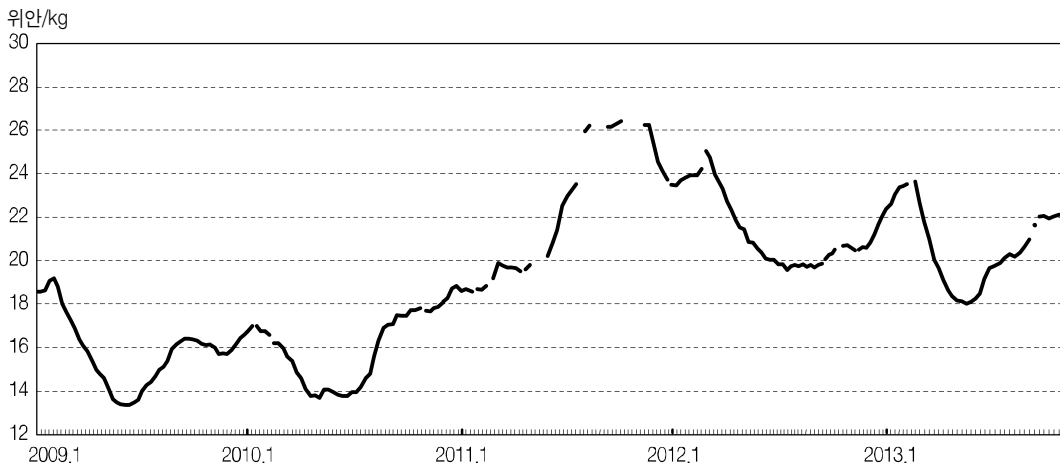
3 육 류¹⁰

3.1. 돼지고기

10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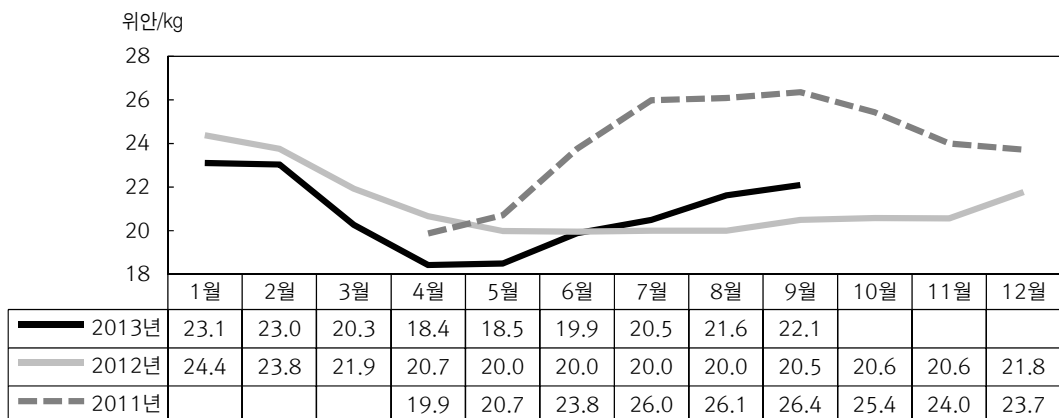
-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음. 2012년 5월 이후 반등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kg 당 23.1위안으로 9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임. 2013년 3/4분기에 들어와 소폭 상승해 9월에 22.1위안의 고가를 기록하였음.

그림 14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추이(2009.1~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15 돼지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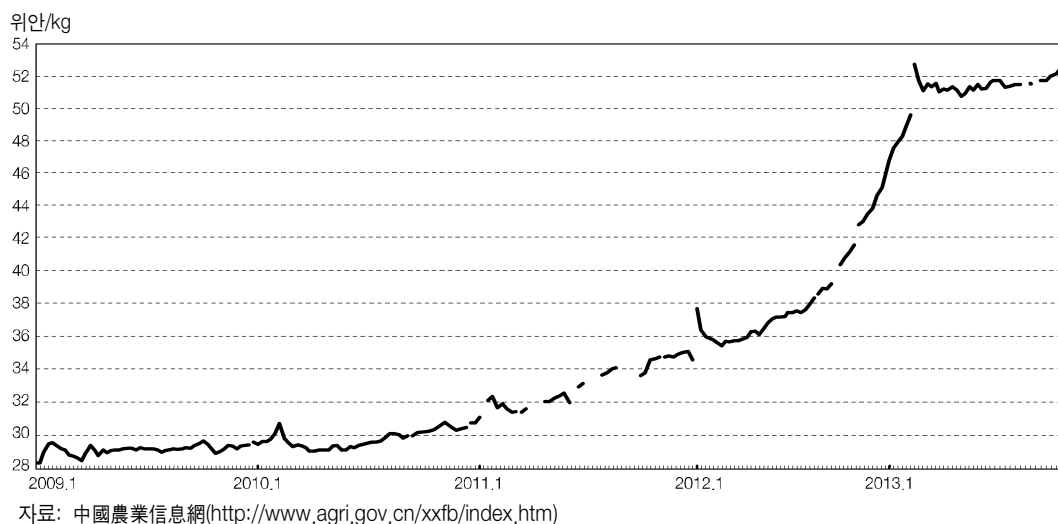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돼지고기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1.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0.2위안에 비해 5.9%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7월 20.5위안, 8월 21.6위안, 9월 22.1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3.2.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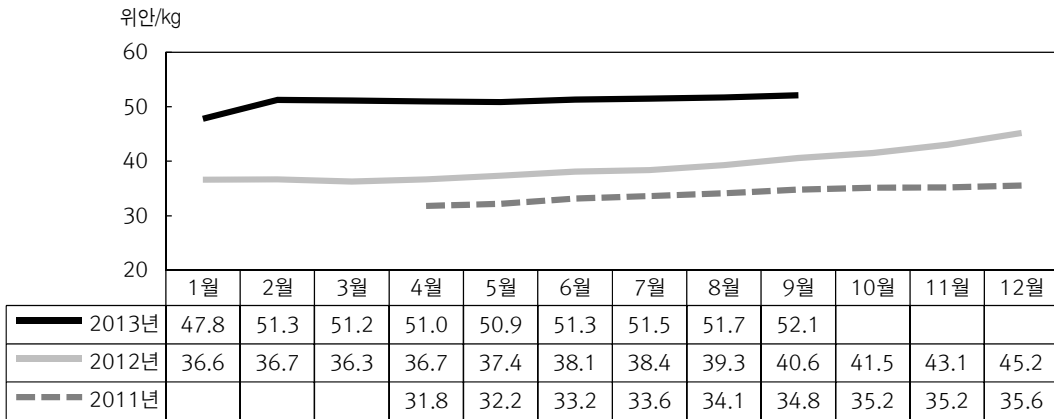
- 쇠고기 가격은 2011년 5월부터 상승하여 2012년 1월에 kg 당 37.2위안을 기록하였으나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됨. 2012년 3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사상 최고가인 52.1위안을 기록하였음.
- －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주요한 원인임.

그림 16 중국의 쇠고기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3.9)



- 쇠고기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1.8위안으로 전년 동기인 39.4위안에 비해 31.5%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7월 51.5위안, 8월 51.7위안, 9월 52.1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17 쇠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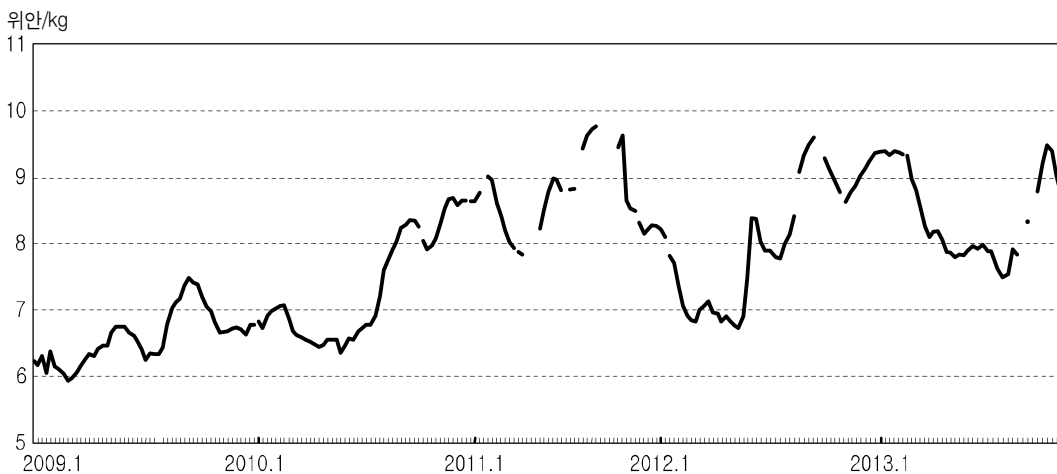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3.3. 계란

- 계란 가격은 2011년 9월에 kg 당 9.7위안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5월 이후 상승하다 다시 9월부터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7월에 7.7위안의 저가를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여 9월에 9.3위안의 고가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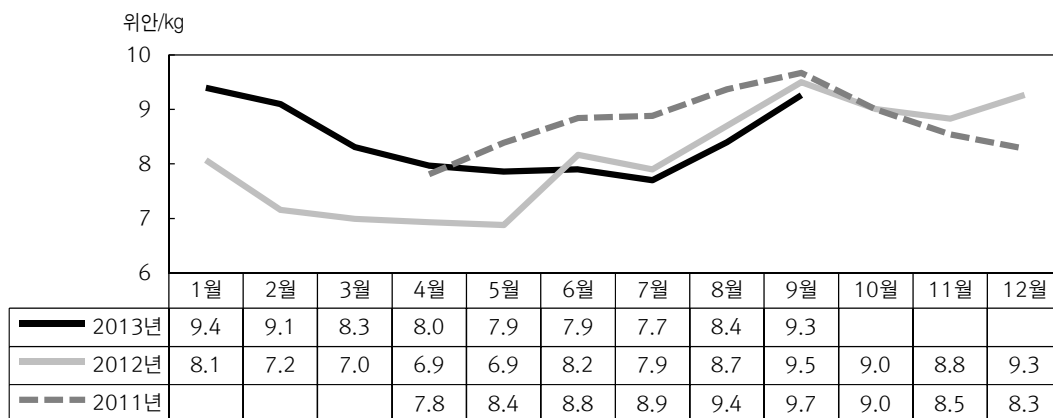
그림 18 중국의 계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계란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8.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8.7위안에 비해 2.3%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7월 7.7위안, 8월 8.4위안, 9월 9.3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19 계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3.4.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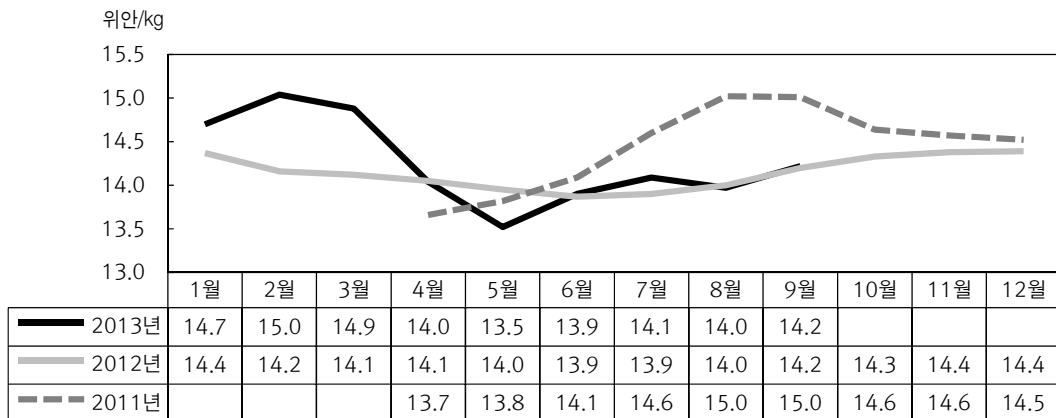
- 닭고기 가격은 201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8월에 kg 당 15.0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3년 2월에는 kg 당 15.0위안으로 다시금 최고가를 기록하고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닭고기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4.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4.0위안에 비해 0.7%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7월 14.1위안, 8월 14.0위안, 9월 14.2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20 중국의 닭고기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21 닭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표 1 주요 축산물의 주간 도매시장 가격 동향(2013.1~2013.9)

단위: 위안/kg

	기간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2013년	1. 1 - 1. 6	9.39	14.62	22.60	47.57
	1. 7 - 1.13	9.34	14.64	23.07	47.92
	1.14 - 1.20	9.39	14.79	23.39	48.25
	1.21 - 1.27	9.38	14.79	23.41	48.86
	1.28 - 2. 3	9.35	14.82	23.53	49.61
	2.11 - 2.17	9.32	15.16	23.63	52.72
	2.18 - 2.24	8.98	15.08	22.54	51.74
	2.25 - 3. 3	8.80	15.14	21.77	51.04
	3. 4 - 3.10	8.58	15.02	20.98	51.49
	3.11 - 3.17	8.28	14.82	20.07	51.31
	3.18 - 3.24	8.12	14.82	19.62	51.51
	3.25 - 3.31	8.20	14.73	19.11	50.98
	4. 1 - 4. 7	8.21	14.64	18.58	51.14
	4. 8 - 4.14	8.05	14.21	18.38	51.09
	4.15 - 4.21	7.86	13.63	18.19	51.26
	4.22 - 4.28	7.85	13.62	18.16	51.02
	4.29 - 5. 5	7.78	13.54	18.06	50.65
	5. 6 - 5.12	7.83	13.42	18.16	50.83
	5.13 - 5.19	7.82	13.43	18.28	51.29
	5.20 - 5.26	7.89	13.48	18.52	51.02
	5.27 - 6. 2	7.95	13.73	19.22	51.42
	6. 3 - 6. 9	7.92	13.89	19.71	51.11
	6.10 - 6.16	7.97	13.73	19.74	51.14
	6.17 - 6.23	7.88	14.14	19.89	51.55
	6.24 - 6.30	7.88	14.13	20.11	51.61
	7. 1 - 7. 7	7.63	14.19	20.30	51.62
	7. 8 - 7.14	7.51	14.17	20.22	51.31
	7.15 - 7.21	7.56	14.15	20.37	51.40
	7.22 - 7.28	7.94	14.11	20.66	51.51
	7.29 - 8. 4	8.20	14.10	20.98	51.48
	8.12 - 8.18	8.37	14.11	21.62	51.54
	8.26 - 9. 1	8.80	13.96	22.02	51.72
	9. 2 - 9. 8	9.23	14.05	22.04	51.72
	9. 9 - 9.15	9.49	14.23	21.94	52.06
	9.16 - 9.22	9.40	14.32	22.02	52.17
	9.23 - 9.29	9.04	14.32	22.11	5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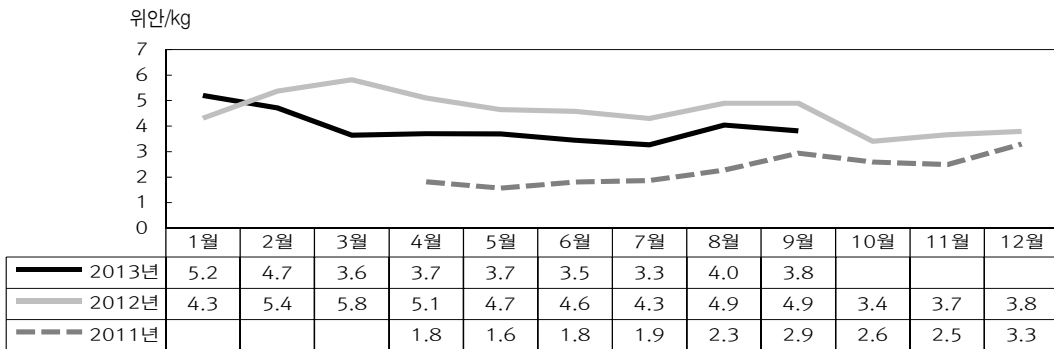
자료: 農業部, 農業部2013年批發市場鮮活農產品交易情況周報(2013年1月~2013年9月)

4 양념채소¹¹

4.1. 파

- 파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7 위안에 비해 21.3%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7월 3.3위안, 8월 4.0위안, 9월 3.8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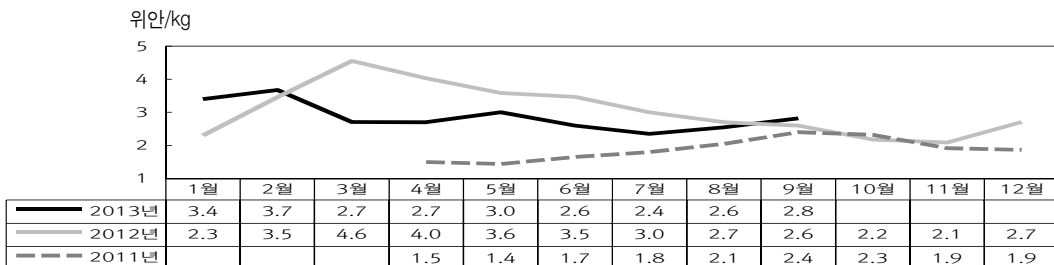
그림 22 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대파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8위안에 비해 7.1%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2.4위안, 8월 2.6위안, 9월 2.8위안으로 상승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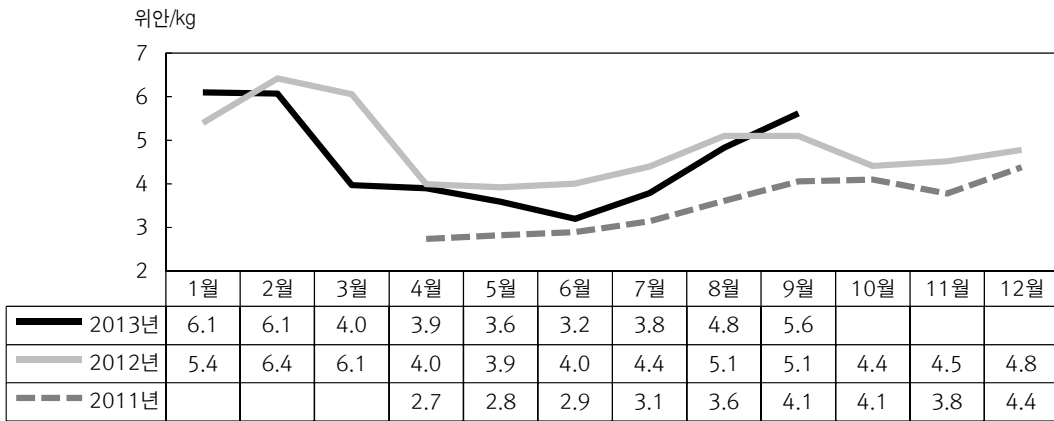
그림 23 대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1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市場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그림 24 쪽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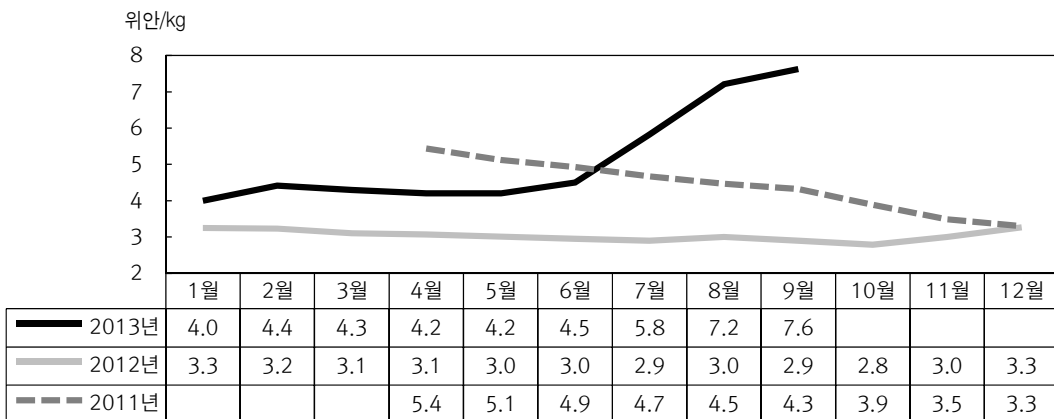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쪽파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9위안에 비해 4.1% 하락하였음.

－ 월별 가격은 7월 3.8위안, 8월 4.8위안, 9월 5.6위안으로 상승추세임.

4.2. 생강

그림 25 생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생강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6.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9위안에 비해 137.9%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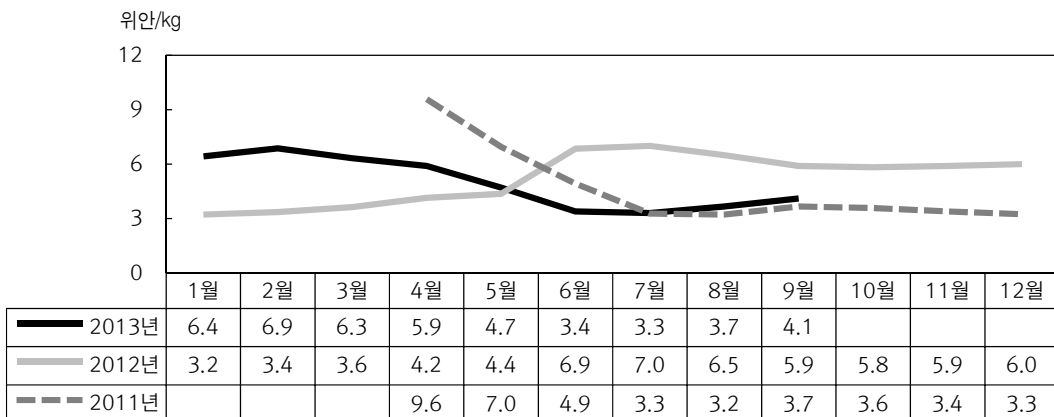
－ 월별 가격은 7월 5.8위안, 8월 7.2위안, 9월 7.6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4.3. 마늘

○ 마늘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5위안에 비해 43.1% 하락하였음.

－ 월별 가격은 7월 3.3위안, 8월 3.7위안, 9월 4.1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26 마늘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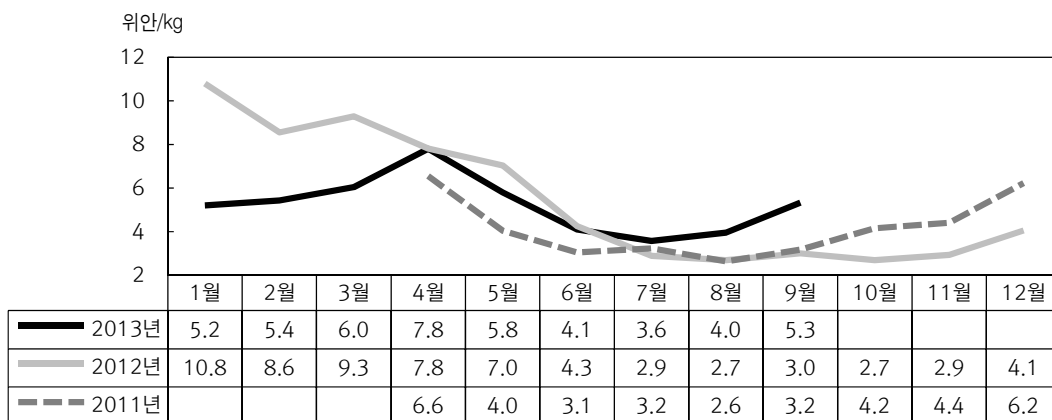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4.4. 고추

○ 풋고추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9위안에 비해 48.3%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3.6위안, 8월 4.0위안, 9월 5.3위안으로 상승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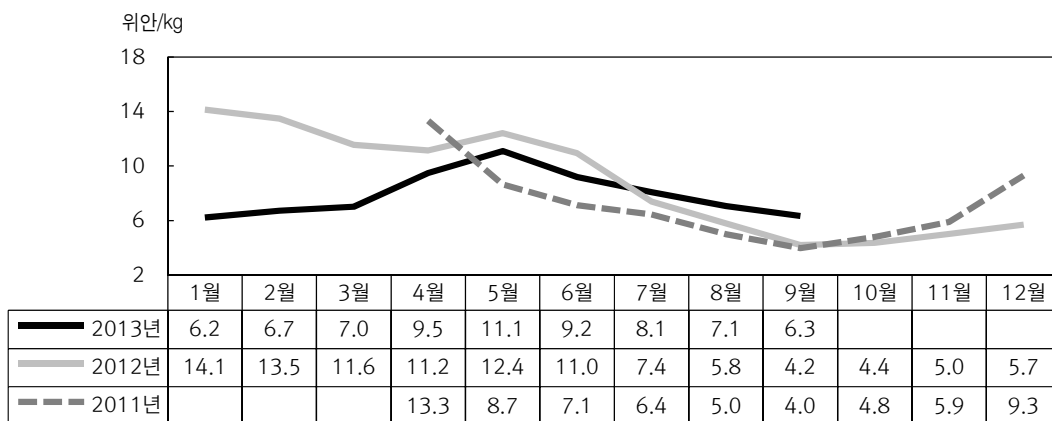
○ 홍고추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7.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8위안에 비해 24.1%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8.1위안, 8월 7.1위안, 9월 6.3위안으로 하락추세임.

그림 27 풋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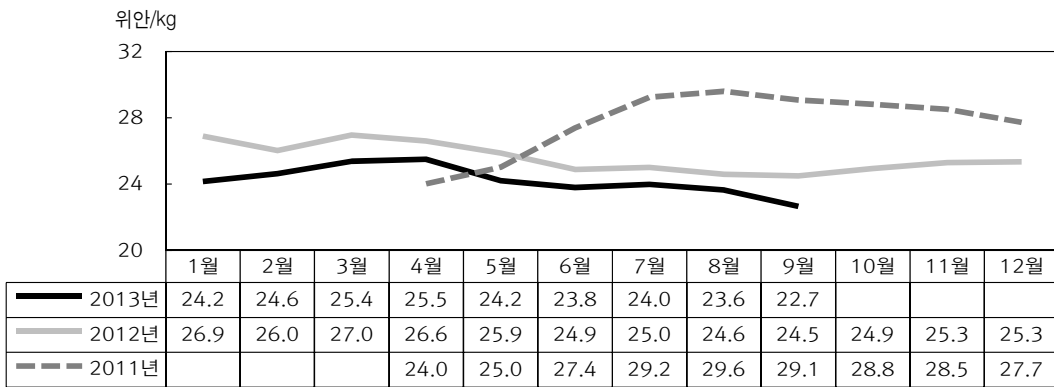
그림 28 홍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건고추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3.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4.7위안에 비해 5.3%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24.0위안, 8월 23.6위안, 9월 22.7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9 건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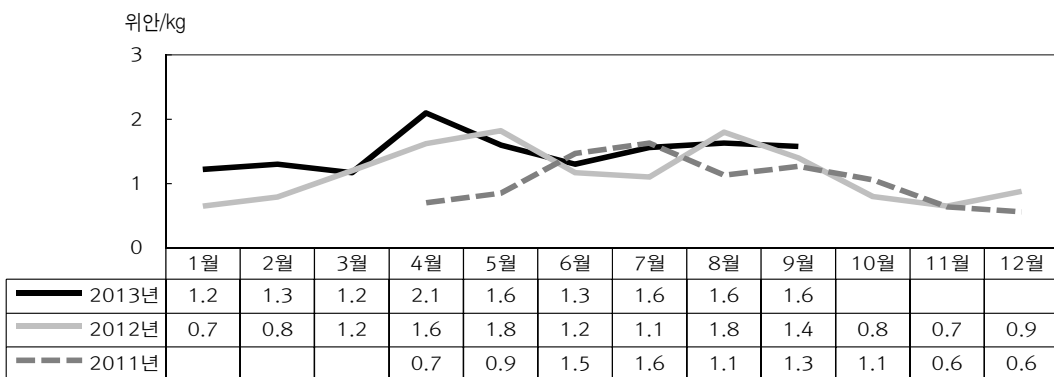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 엽근채소¹²

5.1. 배추

- 배추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4위안에 비해 14.3%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6위안, 8월 1.6위안, 9월 1.6위안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림 30 배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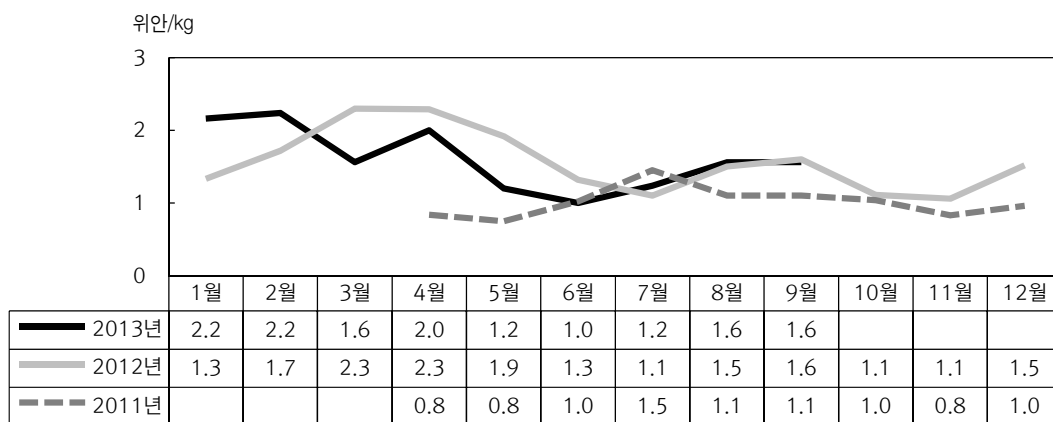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2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5.2. 양배추

- 양배추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4위안과 동일함. 월별 가격은 7월 1.2위안, 8월 1.6위안, 9월 1.6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31 양배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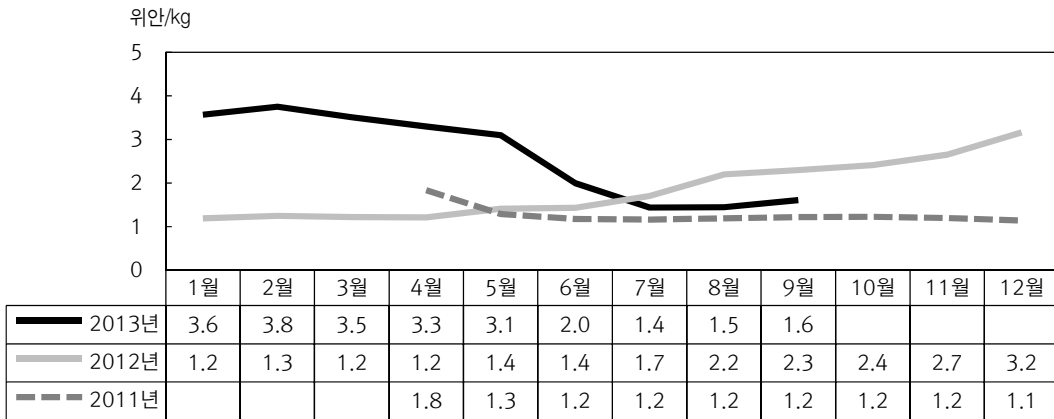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3. 양파

- 양파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위안에 비해 25.0%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7월 1.4위안, 8월 1.5위안, 9월 1.6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그림 32 양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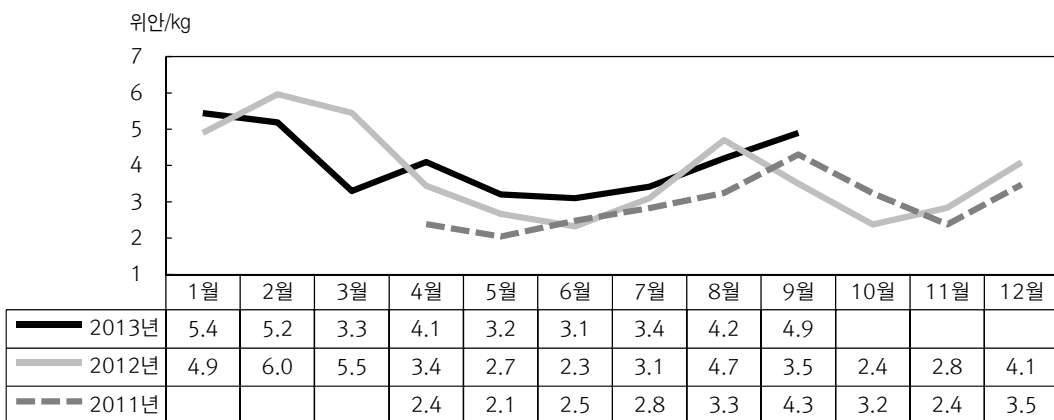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4. 상추

- 상추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8위안에 비해 10.5%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3.4위안, 8월 4.2위안, 9월 4.9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그림 33 상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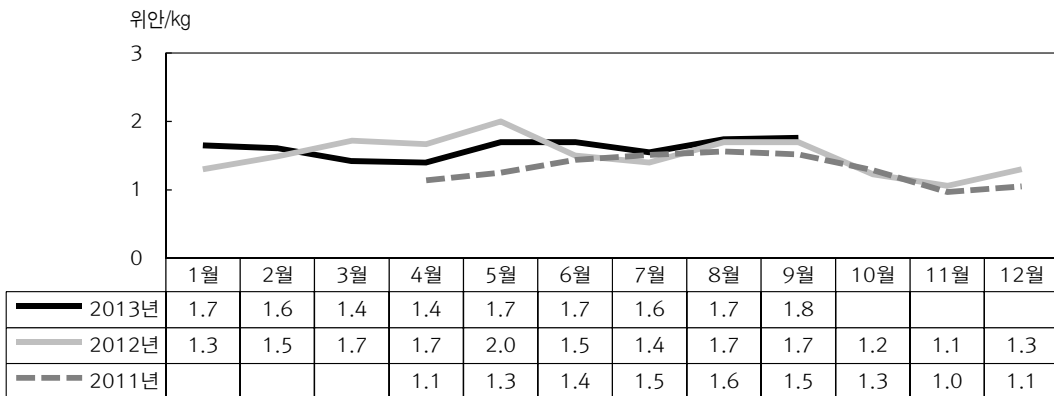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5. 무

- 무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6위안에 비해 6.3%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6위안, 8월 1.7위안, 9월 1.8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34 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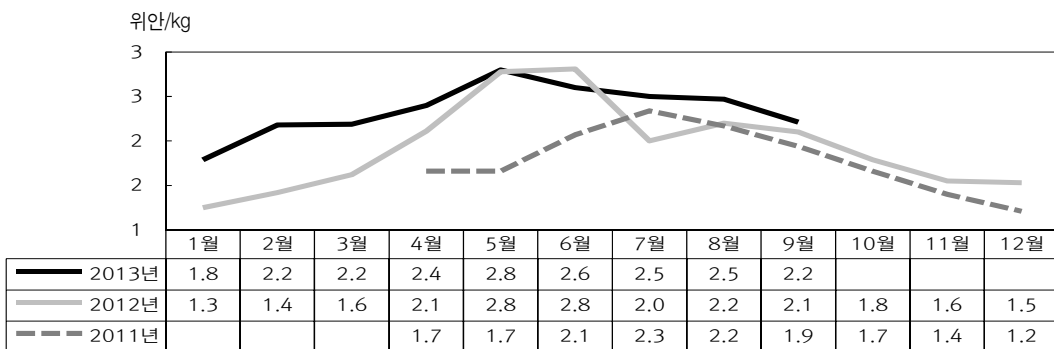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6. 당근

- 당근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1위안에 비해 14.3% 상승함. 월별 가격은 7월 2.5위안, 8월 2.5위안, 9월 2.2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35 당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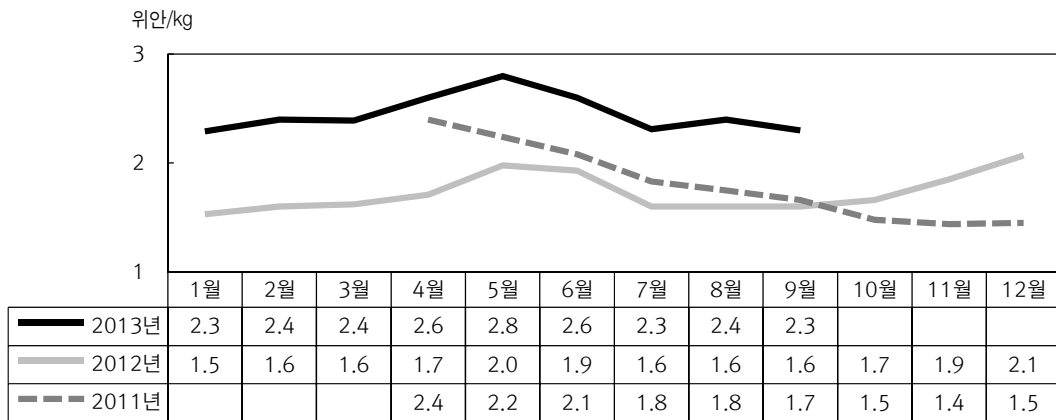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7. 감자

- 감자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6위안에 비해 43.8%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2.3위안, 8월 2.4위안, 9월 2.3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36 감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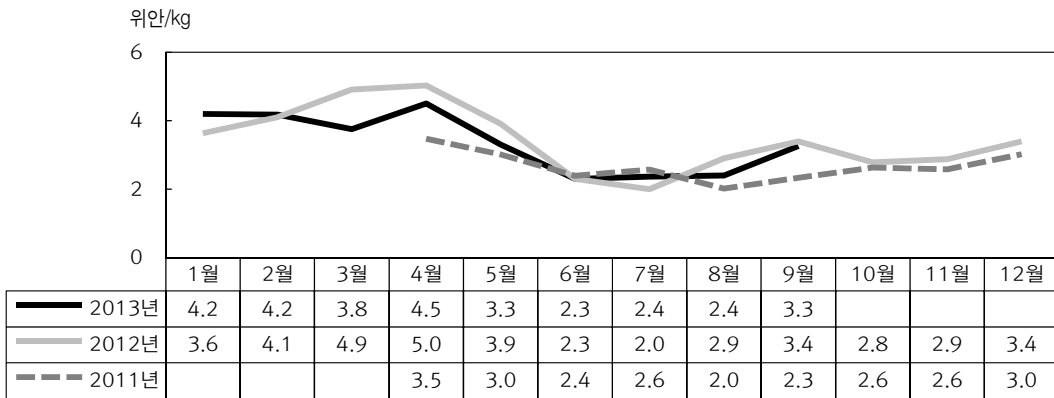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 과채¹³

6.1. 토마토

- 토마토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8위안에 비해 3.6%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2.4위안, 8월 2.4위안, 9월 3.3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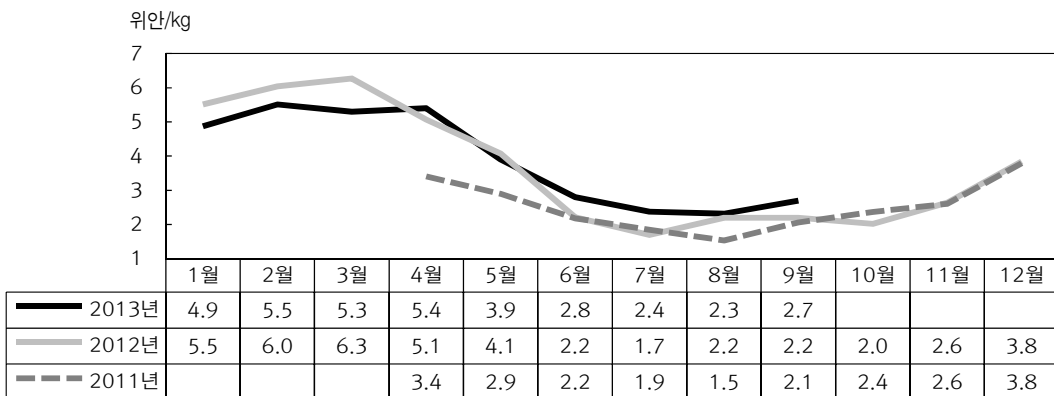
13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市場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그림 37 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2. 가지

- 가지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위안에 비해 25%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2.4위안, 8월 2.3위안, 9월 2.7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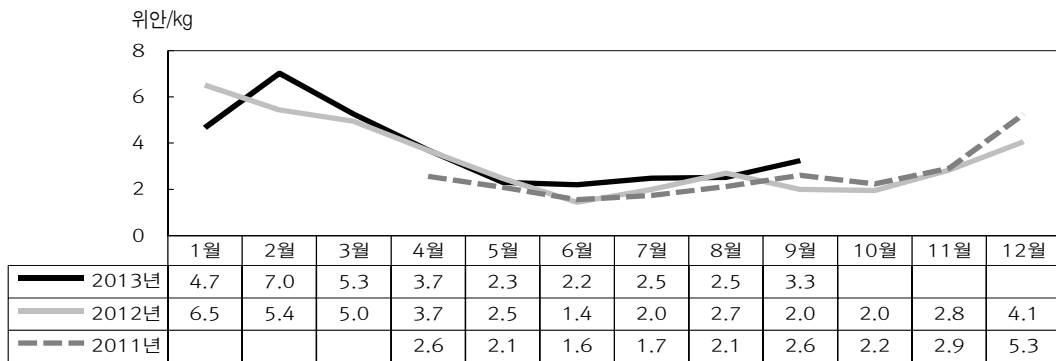
그림 38 가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3. 오이

- 오이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2위안에 비해 27.2%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2.5위안, 8월 2.5위안, 9월 3.3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39 오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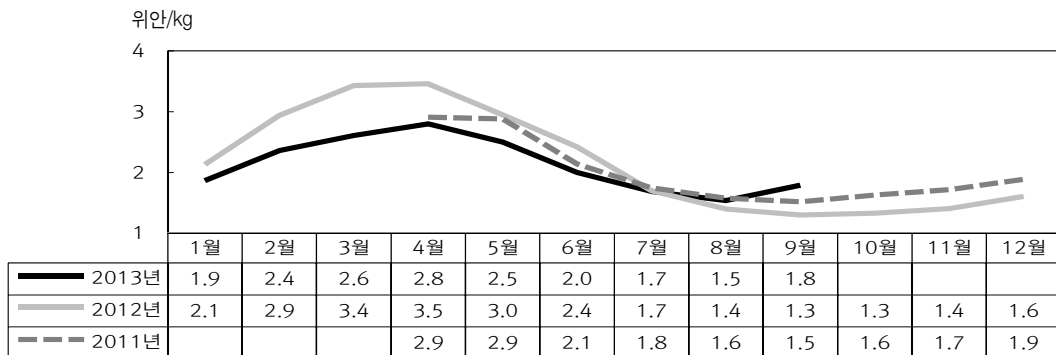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4. 호박

- 호박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5위안에 비해 6.7%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7위안, 8월 1.5위안, 9월 1.8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40 호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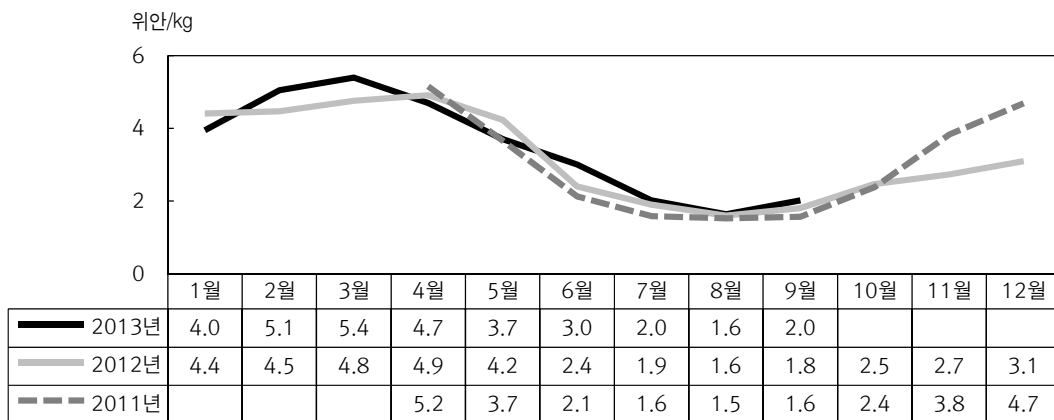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5. 수박

- 수박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8위안에 비해 5.6% 상승함. 월별 가격은 7월 2.0위안, 8월 1.6위안, 9월 2.0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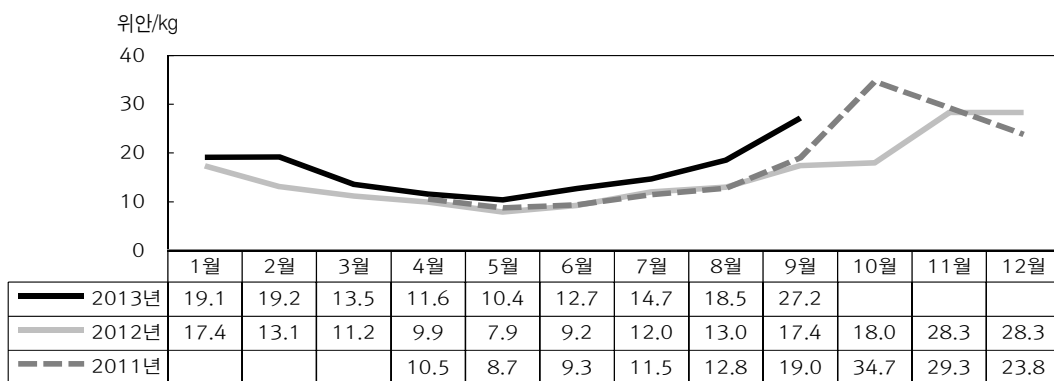
그림 41 수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6. 딸기

그림 42 딸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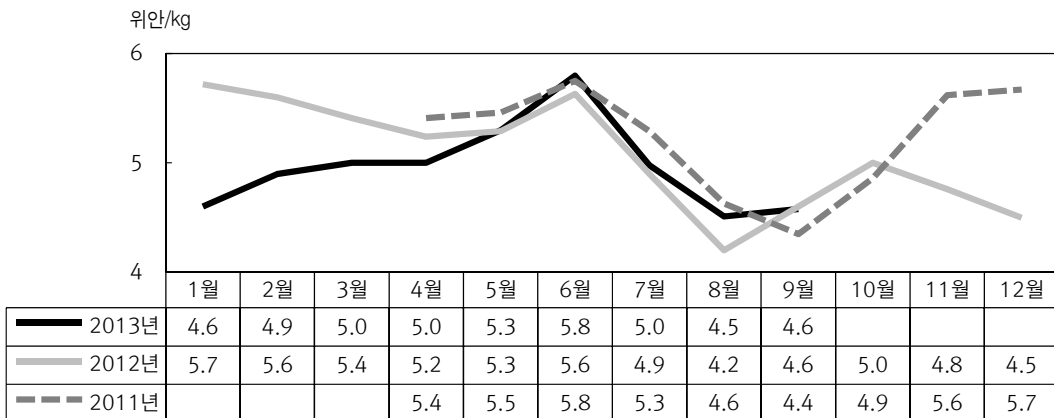
- 딸기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0.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4.1위안에 비해 42.6%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4.7위안, 8월 18.5위안, 9월 27.2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7 과일¹⁴

7.1. 사과

- 사과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6위안에 비해 2.2% 상승함. 월별 가격은 7월 5.0위안, 8월 4.5위안, 9월 4.6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43 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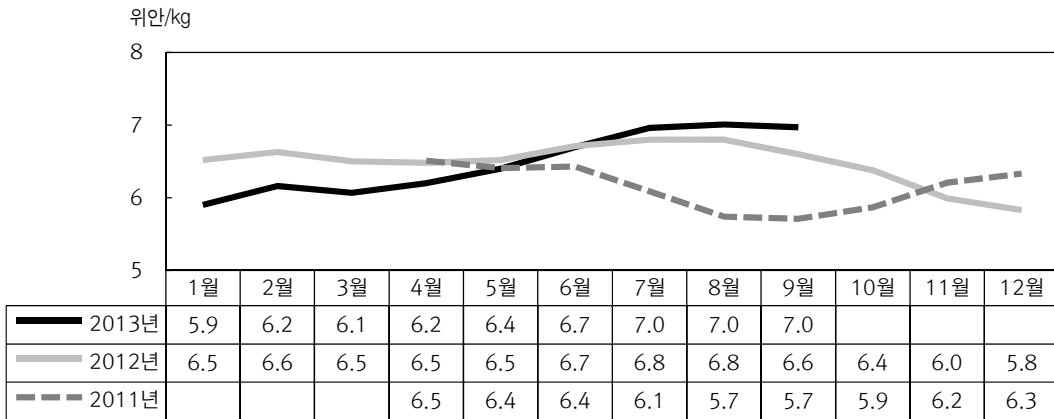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부사사과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7.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7위안에 비해 4.5%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7.0위안, 8월 7.0위안, 9월 7.0위안으로 같은 수준임.

14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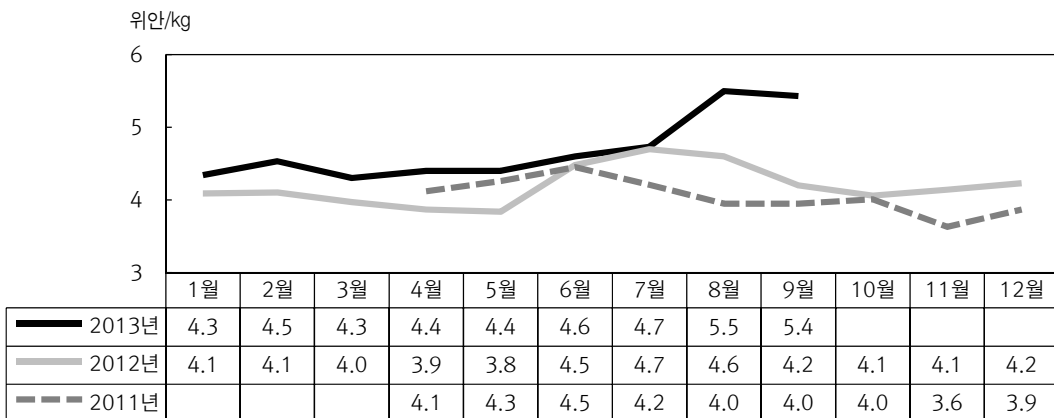
그림 44 부사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국광사과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5위안에 비해 15.6%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4.7위안, 8월 5.5위안, 9월 5.4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45 국광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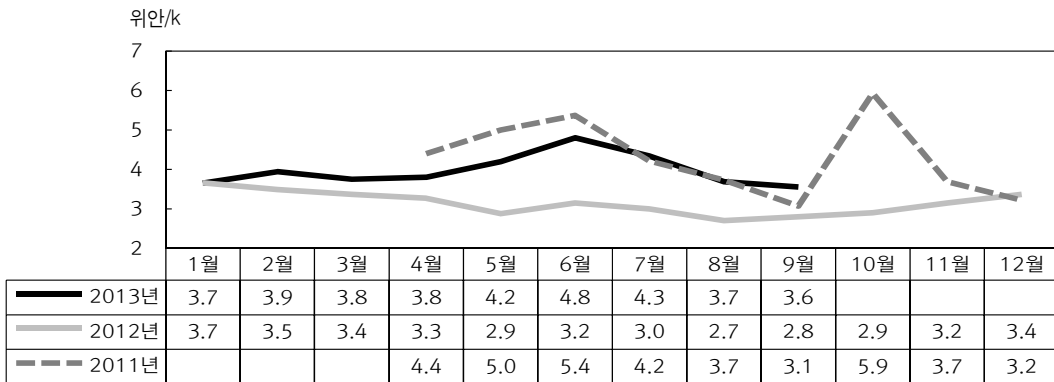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2. 배

- 배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8위안에 비해 39.3%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4.3위안, 8월 3.7위안, 9월 3.6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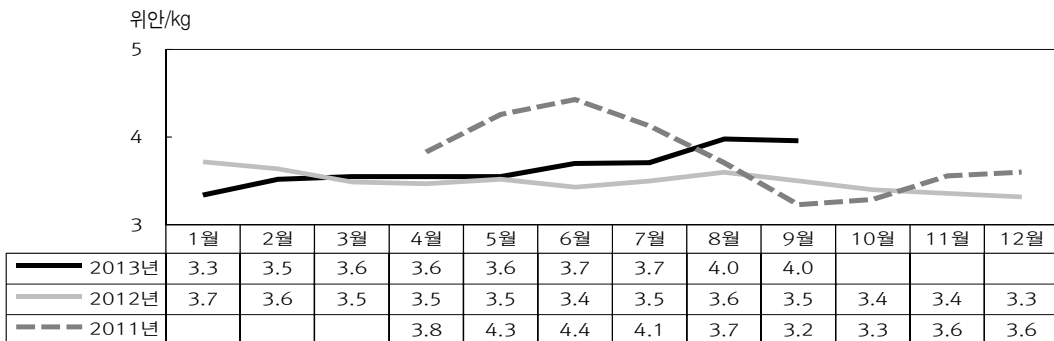
그림 46 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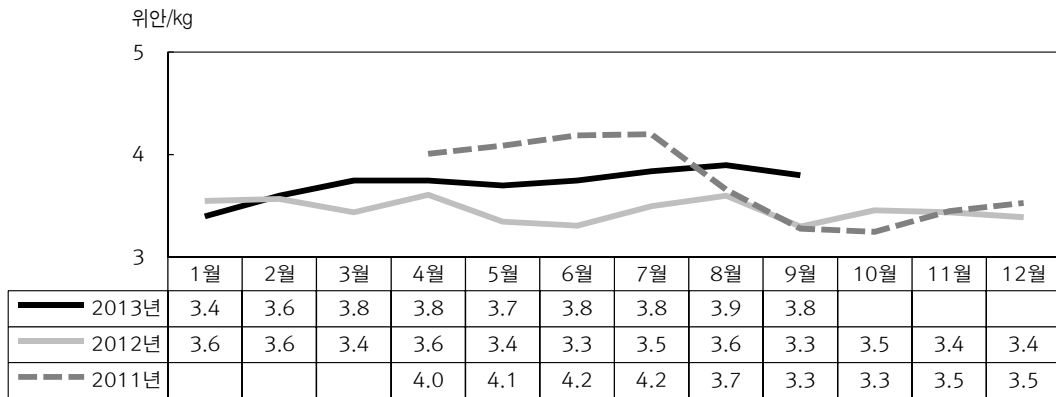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압리(鴨梨)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5위안에 비해 11.4%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3.7위안, 8월 4.0위안, 9월 4.0위안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그림 47 압리(鴨梨)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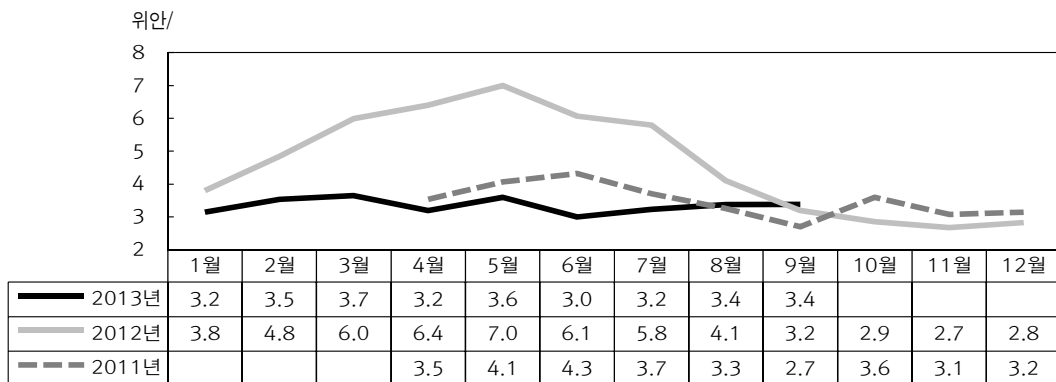
그림 48 설리(雪梨)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설리(雪梨)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5위안에 비해 8.6%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3.8위안, 8월 3.9위안, 9월 3.8위안으로 소폭 등락을 보였음.

7.3. 감

- 감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4위안에 비해 25%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3.2위안, 8월 3.4위안, 9월 3.4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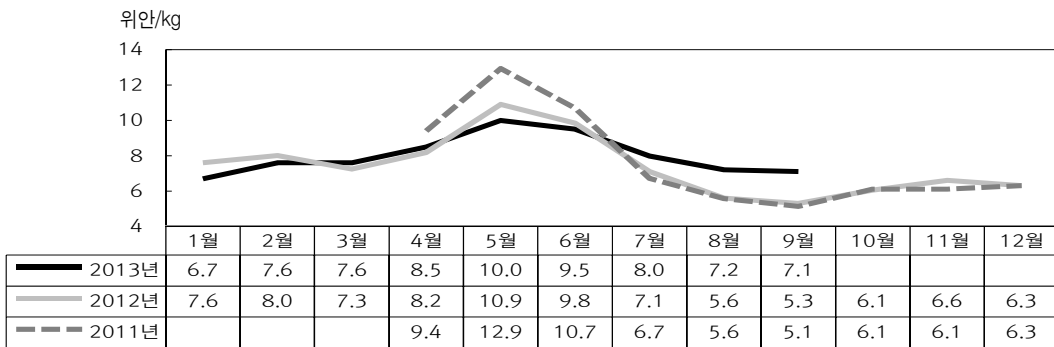
그림 49 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4. 포도

- 포도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7.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1위안에 비해 21.3%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8.0위안, 8월 7.2위안, 9월 7.1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임.

그림 50 포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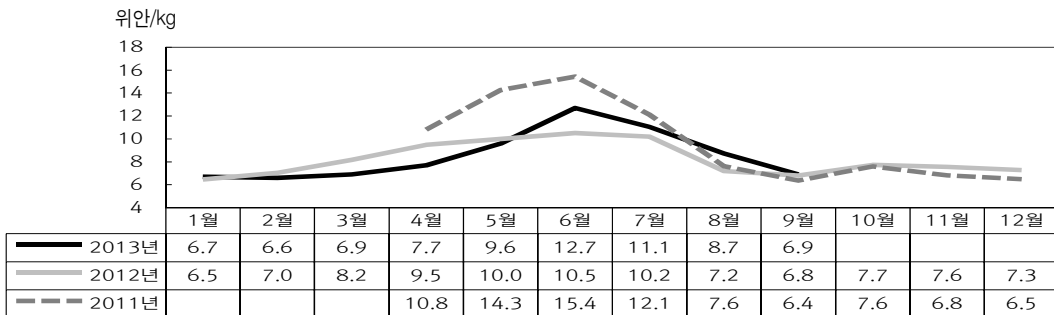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5. 키위

- 키위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8.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8.1위안에 비해 9.9%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1.1위안, 8월 8.7위안, 9월 6.9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그림 51 키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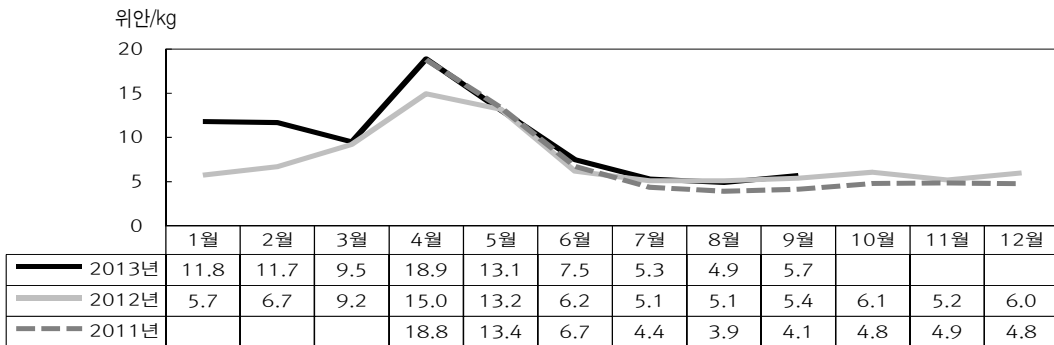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6. 복숭아

- 복숭아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2위안에 비해 3.8%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5.6위안, 8월 4.9위안, 9월 5.7위안으로 등락을 보임.

그림 52 복숭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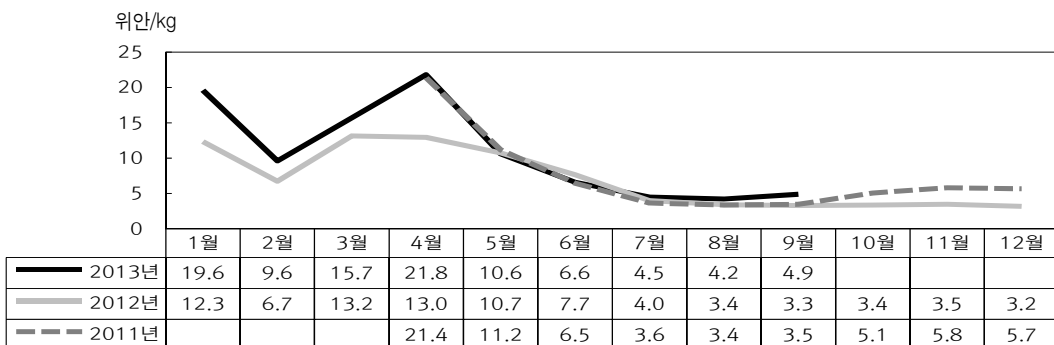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7. 자두

- 자두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7위안에 비해 21.1%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4.5위안, 8월 4.2위안, 9월 4.9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53 자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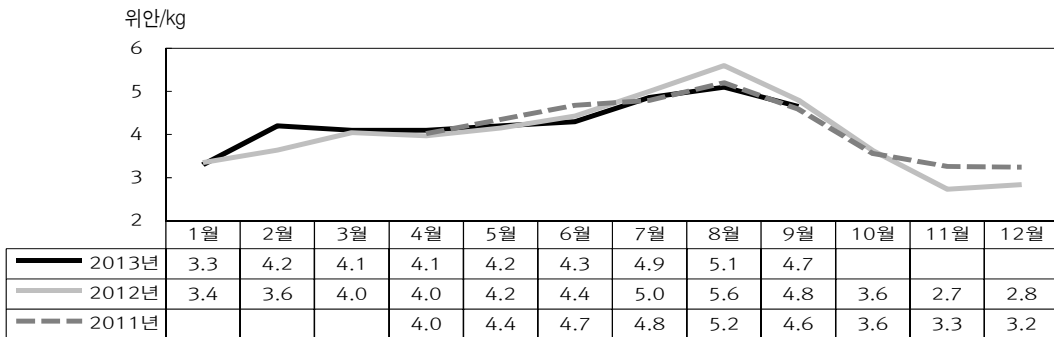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8. 감귤

- 감귤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1위안에 비해 3.9%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4.9위안, 8월 5.1위안, 9월 4.7위안으로 등락을 보임.

그림 54 감귤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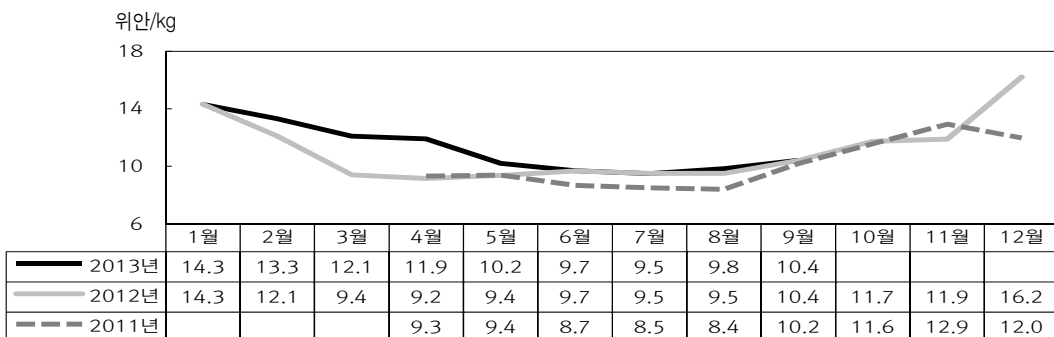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9. 망고

- 망고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9.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9.8위안에 비해 1%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9.5위안, 8월 9.8위안, 9월 10.4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55 망고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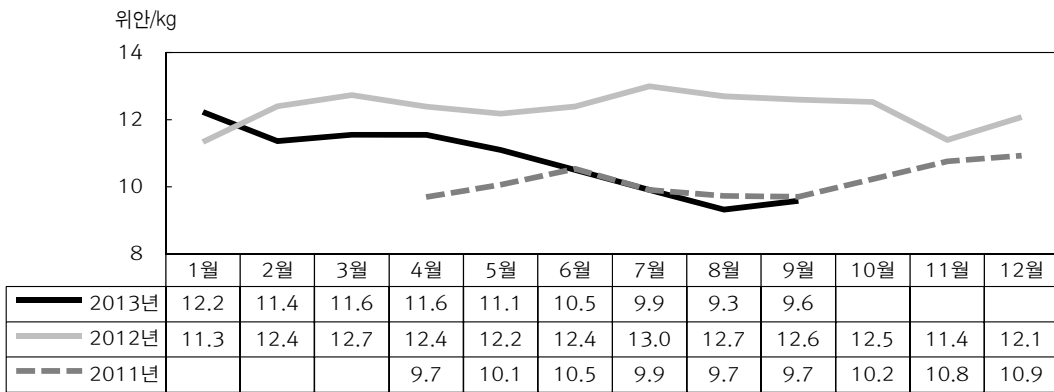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8 기타¹⁵

8.1. 땅콩

- 땅콩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9.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2.8위안에 비해 25%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9.9위안, 8월 9.3위안, 9월 9.6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56 땅콩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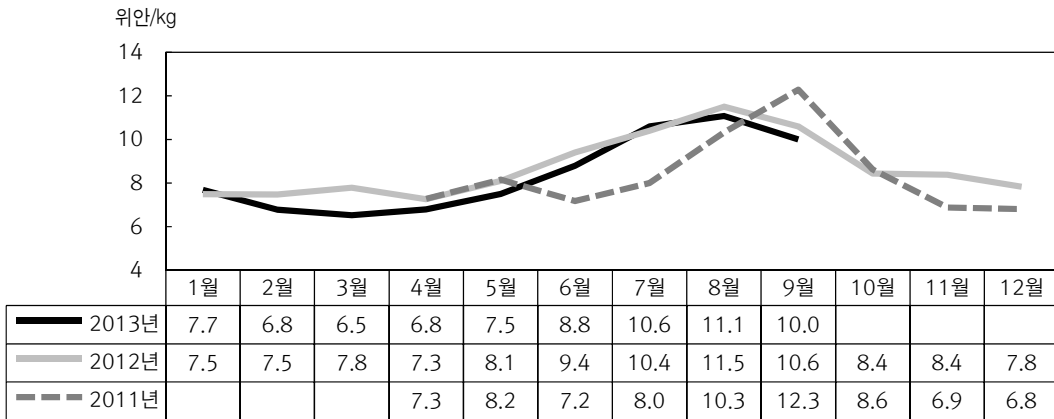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8.2. 버섯

- 양송이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0.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0.8위안에 비해 1.9%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0.6위안, 8월 11.1위안, 9월 10.0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 느타리버섯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6.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3위안에 비해 3.2% 상승함. 월별 가격은 7월 6.0위안, 8월 6.8위안, 9월 6.6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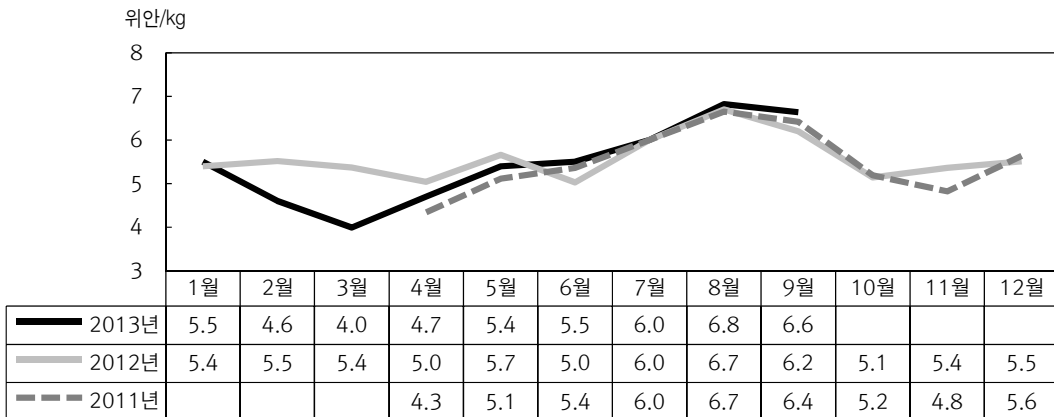
15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그림 57 양송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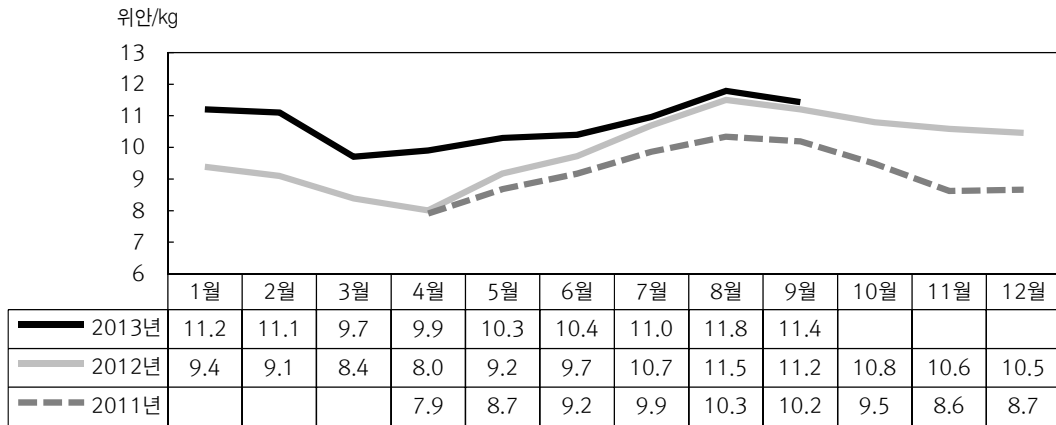
그림 58 느타리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표고버섯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1.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1위안에 비해 2.7%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11.0위안, 8월 11.8위안, 9월 11.4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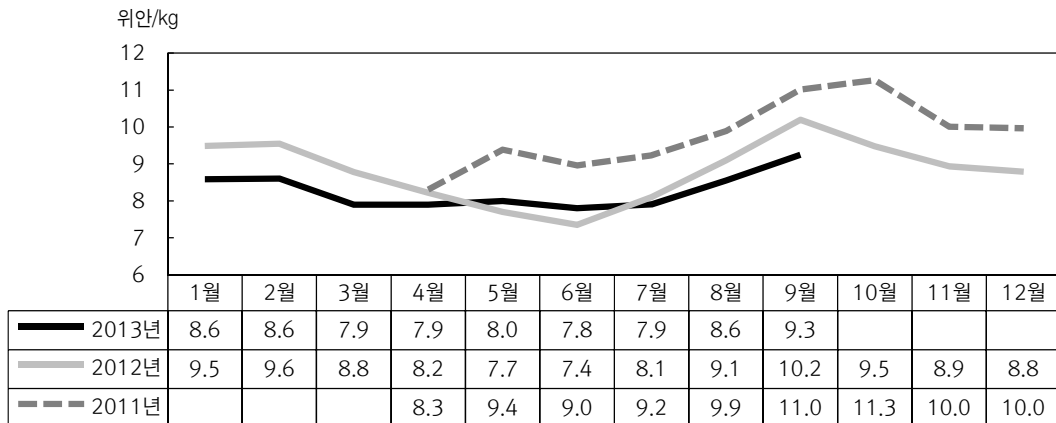
그림 59 표고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팽이버섯의 2013년 7~9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8.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9.1위안에 비해 5.5%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7월 7.9위안, 8월 8.6위안, 9월 9.3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그림 60 팽이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4~2013.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참고자료

- 中華糧網數據中心. 早籼米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晚籼米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粳稻穀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晚粳米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玉米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大豆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小麥均價走勢圖(2013年 7月·8月·9月)
- 中華糧網農業部. 2009~2013年全國畜產品, 飼料價格情況(2009年1月~2013年9月)
-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 한·중 간 농산물 무역

1.1. 2013년 1~9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입 동향

1.1.1. 개황

- 2013년 1~9월 한국의 대 중국 농수산물 (HS 01류~24류) 수입액은 2,766.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 품목군은 HS 03류(어패류), HS 23류(조제사료), HS 07류(채소), HS 20류(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순임, HS 10류(곡물)순임. 상기 5개 품목군이 전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5%로 수입 품목의 집중도가 높음.
- HS 03류의 2013년 1~9월 수입액은 604.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21.8%를 차지했음.
 - － HS 03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0303(냉동어류)과 HS 0307(연체동물)로 각각 205.9백만 달러와 161.0백만 달러이며, HS 03류 총수입액의 34.1%와 26.7%를 차지했음.
- HS 23류의 2013년 1~9월 수입액은 441.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5.4% 증가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16.0%를 차지했음.

- HS 23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2303(전분박과이와 유사한박(residue)류, 비트 펄프(beet-pulp), 버개스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와 HS 2304(대두유 추출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로 각각 197.4백만 달러, 125.5백만 달러이며, HS 23류 전체 수입액의 44.7%, 28.4%를 차지했음.
- HS 07류의 2013년 1~9월 수입액은 380.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13.7%를 차지했음.
 - HS 07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0710(냉동채소)와 HS 0706(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로 각각 118.5백만 달러, 74.5백만 달러이며, HS 07류 전체 수입액의 31.2%, 19.6%를 차지했음.
- HS 20류의 2013년 1~9월 수입액은 227.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8.2%를 차지했음.
 - HS 20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2005(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과 HS 2008(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로 각각 112.5백만 달러, 71.0백만 달러이며, HS 20류 전체 수입액의 49.5%, 10.8%를 차지했음.
- HS 10류의 2013년 1~9월 수입액은 215.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7.3% 증가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7.8%를 차지했음.
 - HS 10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1006(쌀)과 HS 1008(기메밀·밀리트·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로 각각 204.3백만 달러, 8.4백만 달러이며, HS 10류 전체 수입액의 95.0%, 3.9%를 차지했음.

표 1 2013년 1~9월 중국산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1	산동물	5.5	5.9	0.2	5.7
02	육, 식용설육	0.0	0.0	0.0	-79.7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659.2	604.0	21.8	-8.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2.3	1.7	0.1	-23.9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75.9	120.4	4.4	58.7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6.9	19.6	0.7	15.1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331.7	380.1	13.7	14.3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35.7	33.6	1.2	-6.1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46.2	17.8	0.6	-61.8
10	곡물	80.5	215.1	7.8	167.3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31.6	25.7	0.9	-18.8
12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품 식물, 짚·사료식물	224.1	214.4	7.7	-4.5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37.4	38.9	1.4	4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1.0	1.4	0.1	36.2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6	11.9	0.4	-24.1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04.5	94.6	3.4	-9.5
17	당류와 설탕과자	57.1	69.8	2.5	22.3
18	코코아, 코코아 조제품	5.1	7.8	0.3	53.9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99.4	99.4	3.6	0.3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231.7	227.1	8.2	-2.1
21	각종 조제식료품	104.3	104.1	3.8	-0.7
22	음료, 알코올, 식초	9.7	22.5	0.8	131.1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66.8	441.4	16.0	65.4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7.3	9.2	0.3	26.6
총 계		2,449.8	2,766.5	100.0	12.9

주: 1. 비중은 전체 수입액 2,766.5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 2013년 1~9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품목 중 수입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HS-10단 위 품목은 총 258개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96.8%를 차지하였음.

- 총 258개 품목 가운데 HS 03류가 64개로 24.8%를 차지했으며, 수입금액은 594.1백만 달러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21.5%를 차지했음.
- HS 07류, HS 20류, HS 23류가 각각 36개 품목, 23개 품목, 16개 품목으로 14.0%, 8.9%, 6.2%를 차지했으며, 수입금액은 각각 369.3백만 달러, 221.9백만 달러, 434.6백만 달러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13.4%, 8.0%, 15.7%를 차지했음.
- HS 03류를 제외할 경우 수입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HS-10단위 품목은 총 194개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75.4%를 차지함.

표 2 2013년 1~9월 주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품목(HS-10단위)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137,440	175,512	6.3	27.7
1006201000	메현미	8,067	133,773	4.8	1558.2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254	125,521	4.5	1256.4
0505100000	숨털 및 충전재용 깃털	67,550	112,814	4.1	67.0
2005991000	김치	81,106	87,632	3.2	8.1
1006301000	멥쌀	62,576	70,537	2.5	12.7
0710807000	고추류(캡시쿰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70,793	65,471	2.4	-7.5
1902192000	당면	49,596	50,924	1.8	2.7
1207400000	참깨	37,972	50,479	1.8	32.9
1211909099	기타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41,523	46,509	1.7	12.0
2103909090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및 장류	47,274	40,784	1.5	-13.7
0706101000	당근	31,823	39,931	1.4	25.5
2008119000	기타 낙화생	40,025	33,072	1.2	-17.4
1702909000	기타 전화당 및 당류	28,214	30,547	1.1	8.3
1207991000	들깨	19,119	29,508	1.1	54.3
1201903000	콩나물용	28,424	29,300	1.1	3.1
0703101000	양파	3,932	29,147	1.1	641.2
1302199099	기타 식물성 엑스 및 팩틴질	28,011	26,817	1.0	-4.3
0706904000	도라지	25,931	25,042	0.9	-3.4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309101000	개사료	22,307	24,520	0.9	9.9
0710802000	마늘	21,805	21,063	0.8	-3.4
0713329000	기타 팔	17,406	20,978	0.8	20.5
20089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18,813	19,049	0.7	1.3
0710809000	기타 냉동채소	16,784	18,845	0.7	12.3
0712902010	고사리	16,867	17,559	0.6	4.1
2303200000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17,266	15,206	0.5	-11.9
1108191000	고구마의 것	20,885	15,059	0.5	-27.9
0709592000	표고버섯	13,772	14,978	0.5	8.8
1605599090	기타 연체동물	13,095	13,943	0.5	6.5
2309901040	축우용의 것	11,521	13,381	0.5	16.2
1605219000	기타 새우류	14,680	13,266	0.5	-9.6
2103909030	혼합조미료	18,218	12,875	0.5	-29.3
2309909000	기타 사료용 조제품	13,389	12,490	0.5	-6.7
2308009000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12,873	12,233	0.4	-5.0
0711905099	기타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8,928	11,723	0.4	31.3
1704902090	기타 설탕과자	8,073	11,134	0.4	37.9
0704100000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10,884	10,957	0.4	0.7
2308001000	도토리	10,374	10,483	0.4	1.1
20059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	9,888	10,189	0.4	3.0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23	10,176	0.4	44899.8
0811909000	기타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12,184	10,148	0.4	-16.7
0709999000	기타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097	9,831	0.4	-2.6
2308003000	면실피	6,782	9,269	0.3	36.7
1905901050	미과	11,354	9,227	0.3	-18.7
0712902030	파	7,552	9,157	0.3	21.3
16023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9,997	9,105	0.3	-8.9
2106909099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6,050	8,898	0.3	47.1
1905901090	기타 베이커리제품 및 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등	9,290	8,684	0.3	-6.5
2306490000	기타유채(레이프또는콜자)씨의 것	-	8,516	0.3	-
0811901000	밤(냉동)	5,764	8,429	0.3	46.2
1201909000	기타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398	8,381	0.3	-75.6
1703109000	기타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1	8,253	0.3	766866.0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704901000	양배추	1,143	8,141	0.3	612.4
0811100000	초본류 딸기	8,107	7,669	0.3	-5.4
0712391020	표고버섯	7,789	7,620	0.3	-2.2
2005512000	팔의 것	9,019	7,519	0.3	-16.6
1702301000	포도당	10,069	7,482	0.3	-25.7
0904210000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35,261	7,252	0.3	-79.4
1605542091	조미오징어	14,215	6,894	0.2	-51.5
1902199000	기타 파스타와 쿠우스쿠우스	5,976	6,726	0.2	12.5
2303301000	사료용	5,862	6,672	0.2	13.8
2306100000	면실의 것	5,218	6,421	0.2	23.1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4,598	6,398	0.2	39.2
0706909000	기타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	5,445	6,390	0.2	17.4
2306903000	옥수수씨눈에서 나온 것	1,775	6,369	0.2	258.8
2003104000	양송이 버섯	8,806	6,341	0.2	-28.0
1605542099	기타 갑오징어와 오징어	5,662	6,338	0.2	11.9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 상인 것에 한한다)	9,244	6,273	0.2	-32.1
160419909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 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5,705	6,087	0.2	6.7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5,027	5,998	0.2	19.3
1008299000	기타 메밀·밀리트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4,657	5,886	0.2	26.4
2401201000	황색종	4,553	5,799	0.2	27.4
2008191000	밤	6,014	5,738	0.2	-4.6
0705110000	결구상추	4,896	5,706	0.2	16.5
1602329000	기타 닭의 것	5,593	5,668	0.2	1.3
16029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4,632	5,628	0.2	21.5
2203000000	맥주	4,572	5,523	0.2	20.8
2309901099	기타 사료용 조제품	4,409	5,265	0.2	19.4
20081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견과류	5,002	5,202	0.2	4.0
0603140000	국화	1,730	5,201	0.2	200.7
1604199010	쥐치포	3,706	5,017	0.2	35.4
1212993000	화분	5,342	4,916	0.2	-8.0
1212992000	구약구의 뿌리	5,639	4,877	0.2	-13.5
2009790000	기타 사과즙스	5,853	4,865	0.2	-16.9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3,091	4,843	0.2	56.7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712902099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5,066	4,782	0.2	-5.6
160556109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4,866	4,729	0.2	-2.8
1704909000	기타 설탕과자	5,183	4,603	0.2	-11.2
18069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1,196	4,544	0.2	280.0
1212999000	기타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044	4,535	0.2	49.0
0703909000	기타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1,185	4,371	0.2	268.7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5,207	4,298	0.2	-17.4
2001909090	기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4,161	4,216	0.2	1.3
0713319000	기타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091	4,125	0.1	97.2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3,838	4,052	0.1	5.6
1302390000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632	4,019	0.1	146.2
2005592000	팥의 것	1,175	3,949	0.1	236.2
2003901000	표고버섯	4,117	3,938	0.1	-4.3
2007991000	잼·과실젤리 및 마말레이드	3,103	3,835	0.1	23.6
0711400000	오이류	4,278	3,769	0.1	-11.9
2004909000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3,602	3,683	0.1	2.3
1901909099	기타 쌀·보리 가루의 것	3,516	3,557	0.1	1.2
1209919000	기타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3,301	3,515	0.1	6.5
0106903010	갯지렁이	2,948	3,498	0.1	18.7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엑스	3,851	3,430	0.1	-10.9
0602902099	기타 산림수	4,148	3,401	0.1	-18.0
160553900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홍합	4,958	3,381	0.1	-31.8
0710806000	송이버섯	3,304	3,308	0.1	0.1
12089000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의 분과 조분	8,469	3,307	0.1	-60.9
0602901010	난초	3,691	3,246	0.1	-12.0
1517909000	기타 마가린	2,510	3,218	0.1	28.2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26	3,172	0.1	-7.4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103909040	메주	2,361	3,095	0.1	31.1
091011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985	3,038	0.1	53.1
16042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4,177	3,038	0.1	-27.3
16056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4,020	3,016	0.1	-25.0
1704902010	드롭프스	1,983	2,949	0.1	48.7
08024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052	2,892	0.1	40.9
2208906000	고량주	2,286	2,860	0.1	25.1
1209911010	양파종자	464	2,854	0.1	515.7
2102103000	제빵효모	2,620	2,842	0.1	8.5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것)	2,331	2,817	0.1	20.8
2401301000	잎의 주맥	2,317	2,734	0.1	18.0
2008111000	피넛 버터	2,932	2,695	0.1	-8.1
09042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267	2,593	0.1	14.4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3,043	2,567	0.1	-15.6
1108199000	기타 전분	1,786	2,509	0.1	40.5
0813401000	감	4,441	2,504	0.1	-43.6
0709591000	송이버섯	2,434	2,472	0.1	1.6
1212212020	염장한 것	3,218	2,396	0.1	-25.5
0712902040	당근	2,822	2,357	0.1	-16.5
0710801000	양파	1,123	2,329	0.1	107.4
2202909000	기타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 소주스를 제외한다)	1,660	2,300	0.1	38.5
0712902060	양배추	2,814	2,278	0.1	-19.0
1904901010	짜거나 삶은 쌀	2,354	2,273	0.1	-3.4
2008309000	기타 감귤류 과실	3,151	2,269	0.1	-28.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3,073	2,251	0.1	-26.7
0602909040	버섯의 종균	1,894	2,246	0.1	18.6
1806311000	초콜릿과초콜릿과자	450	2,233	0.1	396.2
2009892000	채소주스	2,087	2,217	0.1	6.3
2005910000	죽순	2,464	2,198	0.1	-10.8
0706901000	무	1,304	2,160	0.1	65.6
0705190000	상추(결구상추 제외)	1,943	2,142	0.1	10.2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1,710	2,137	0.1	25.0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103201000	토마토 케첩	1,690	2,124	0.1	25.6
0602901090	기타 화훼류	2,319	2,079	0.1	-10.4
2103901010	된장	1,790	2,077	0.1	16.0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1,420	2,072	0.1	45.9
0710290000	기타 채두류	1,732	2,043	0.1	18.0
1211906000	감초	1,382	2,022	0.1	46.3
2101309000	기타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1,665	2,015	0.1	21.1
1007900000	비종자 수수	1,874	1,946	0.1	3.8
1904109000	기타 곡물 및 조제식료품	3,179	1,910	0.1	-39.9
1518002000	에폭시화한 대두유	1,179	1,771	0.1	50.2
07123200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1,714	1,744	0.1	1.8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1,018	1,708	0.1	67.8
1208100000	대두의 것	2,068	1,703	0.1	-17.7
1702903000	맥아당	1,087	1,680	0.1	54.6
120600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70	1,667	0.1	-15.4
1302312000	가루한천	456	1,652	0.1	262.3
0713339000	기타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 가리스)	1,032	1,633	0.1	58.4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68	1,618	0.1	3.2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1,331	1,613	0.1	21.2
0602909090	기타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1,775	1,597	0.1	-10.0
0712902020	무(간조한 것)	1,461	1,541	0.1	5.5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1,701	1,496	0.1	-12.1
0511999090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1,567	1,487	0.1	-5.1
1108129000	기타 옥수수의 것	1,076	1,477	0.1	37.3
0710804000	당근	1,141	1,475	0.1	29.3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1,016	1,423	0.1	40.2
2009891090	기타 크랜베리 이외의 과일주스	1,213	1,408	0.1	16.1
0106191000	개	1,479	1,400	0.1	-5.4
12079990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25	1,394	0.1	-71.7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1214101000	사료용	1,761	1,348	0.0	-23.4
1209912000	무 종자	685	1,333	0.0	94.6
1518009090	기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323	1,332	0.0	0.6
0712200000	양파	916	1,322	0.0	44.3
0703209000	기타 마늘	9,258	1,310	0.0	-85.8
2309901030	어류용의 것	1,991	1,272	0.0	-36.1
1604179000	기타뱀장어	372	1,266	0.0	240.0
0813409000	기타 과일	1,355	1,252	0.0	-7.6
1212212010	미역(건조한 것)	1,253	1,229	0.0	-1.9
0507901110	전지	2,474	1,221	0.0	-50.6
1901101010	조제분유	104	1,207	0.0	1,060.9
1605529000	기타 가리비과의 조개	847	1,200	0.0	41.8
1905909090	기타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928	1,186	0.0	27.9
2004100000	감자	1,157	1,174	0.0	1.5
1302191110	인삼엑스	1,048	1,167	0.0	11.3
2101209090	기타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조제품	690	1,163	0.0	68.6
2101111000	인스턴트커피	477	1,156	0.0	142.1
160555900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문어	3,030	1,153	0.0	-61.9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907	1,055	0.0	16.4
1211909092	구기자	1,322	1,055	0.0	-20.2
1008100000	메밀	725	1,009	0.0	39.2
	총계	1,702,443	2,084,976	75.4	22.5

주: 1.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HS 03류를 제외)

2. 비중은 전체 수입액 2,085,0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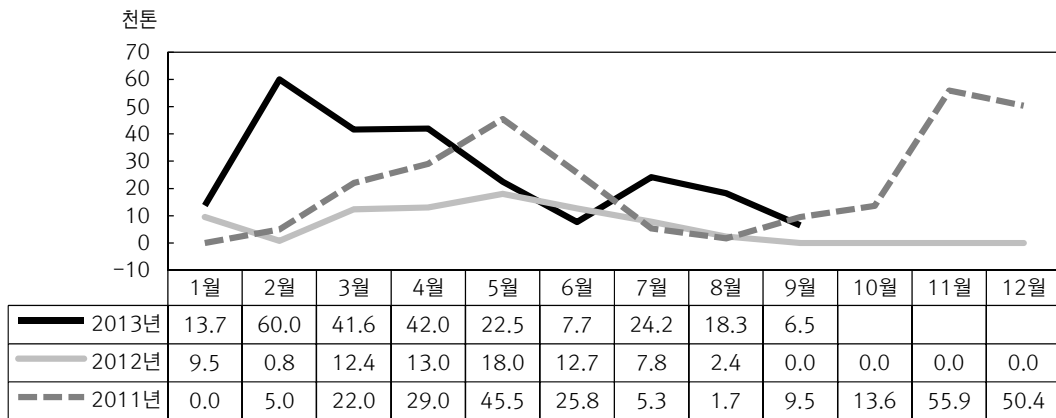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1.1.2.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 동향

◆ 쌀

- 2013년 1~9월 중국산 쌀 수입량은 236.5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8.8%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204.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9.2% 증가하였음. 7, 8, 9월별 수입액은 각각 21.3백만 달러, 15.4백만 달러, 5.4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1~6월 메현미(HS1006201000)와 맵쌀(HS1006301000)의 수입량이 각각 160.1천 톤과 76.4천 톤으로 각각 전체 중국산 쌀 수입량의 67.7%, 32.3%를 차지했음.

그림 1 한국의 중국산 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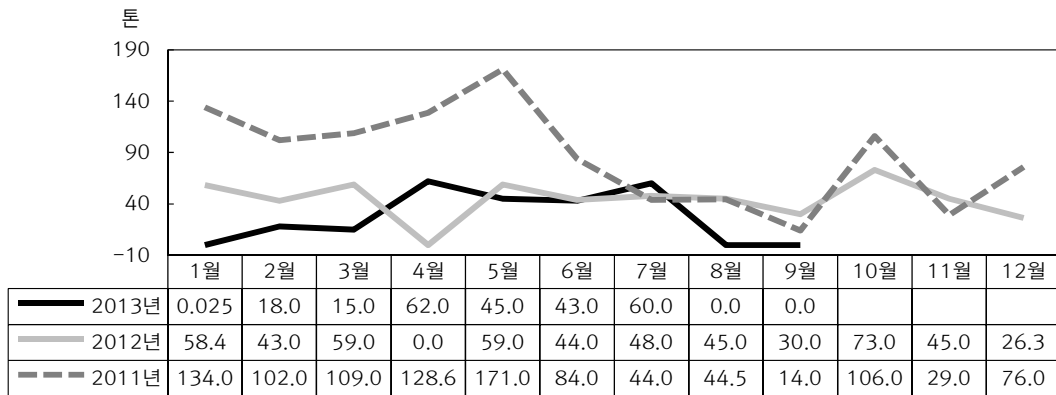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옥수수

- 2013년 1~9월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243.3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1%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133.7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6.6% 감소하였음. 7, 8, 9월별 수입액은 각각 2.5만 달러, 0.0만 달러, 0.003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가루(HS1102200000), 종자용 옥수수(HS1005100000)의 수입량이 각각 180.0톤과 3.0톤으로 각각 전체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의 98.4%, 1.6%를 차지했음.

그림 2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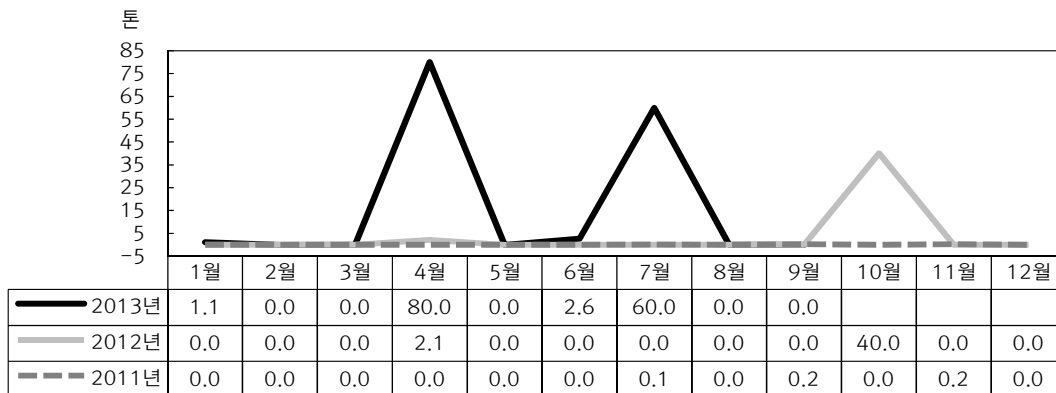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밀

- 2013년 1~9월 중국산 밀 수입량은 143.7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646.7%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7.8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21.4% 증가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3.1만 달러, 0.0만 달러, 0.0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밀가루(HS1101001000), 메슬린 외 기타(기타)(HS1001999090)의 수입량이 각각 141.1톤과 2.6톤으로 각각 전체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의 98.2%, 1.8%를 차지했음.

그림 3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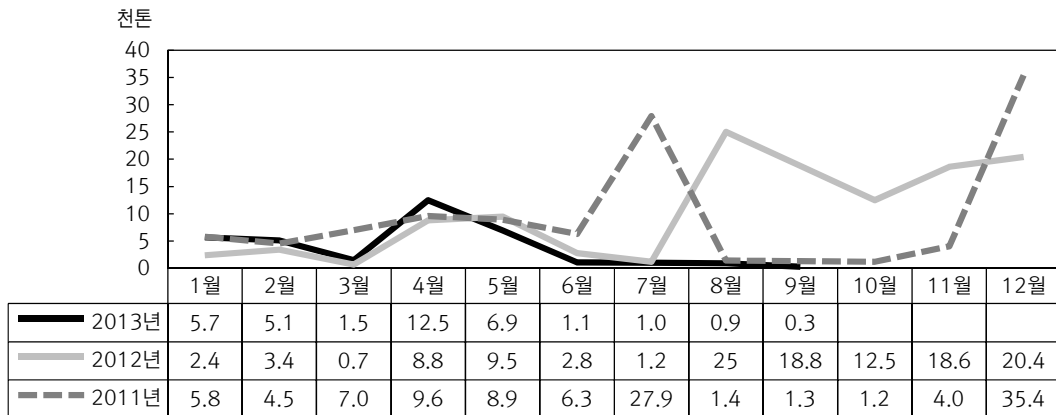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대두

- 2013년 1~9월 중국산 대두 수입량은 35.0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2.0% 감소했고, 수입액도 39.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2% 감소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0.9백만 달러, 0.8백만 달러, 0.4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대두(콩나물용, 기타)(HS1201903000) 23.6천 톤, 대두 기타(기타)(HS1201909000) 9.1천 톤, 대두의 분과 조분(HS1208100000) 2.4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대두 수입량의 67.4%, 26.0%, 13.1%를 차지함.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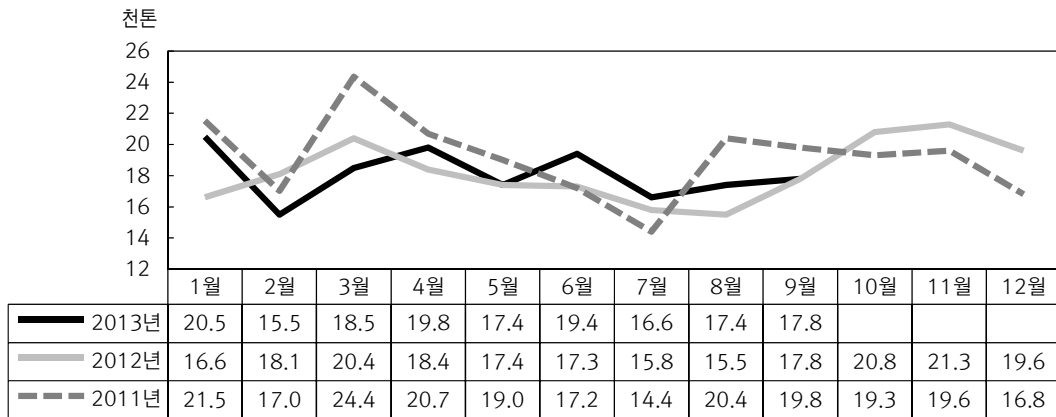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김치

- 2013년 1~9월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162.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고 수입액은 8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9.2백만 달러, 9.5백만 달러, 9.5백만 달러임.

그림 5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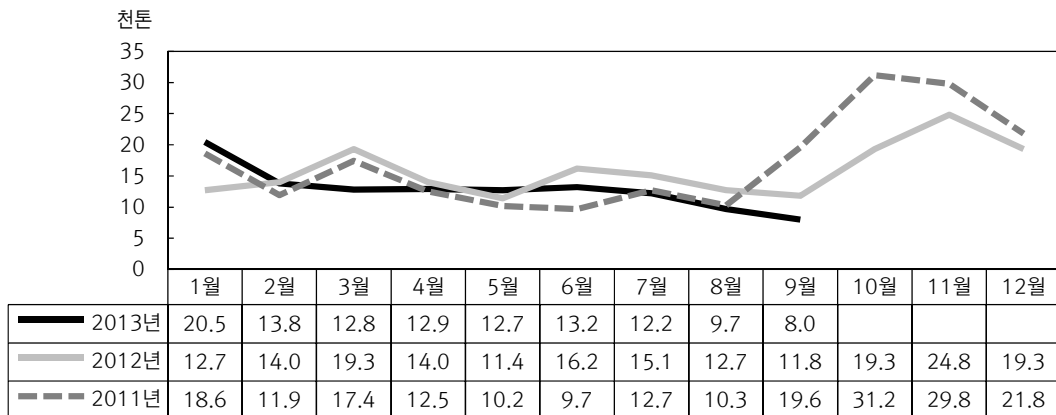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고추

- 2013년 1~9월 중국산 고추 수입량은 114.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감소했고, 수입액도 75.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0.8% 감소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8.5백만 달러, 6.5백만 달러, 5.8백만 달러임.

그림 6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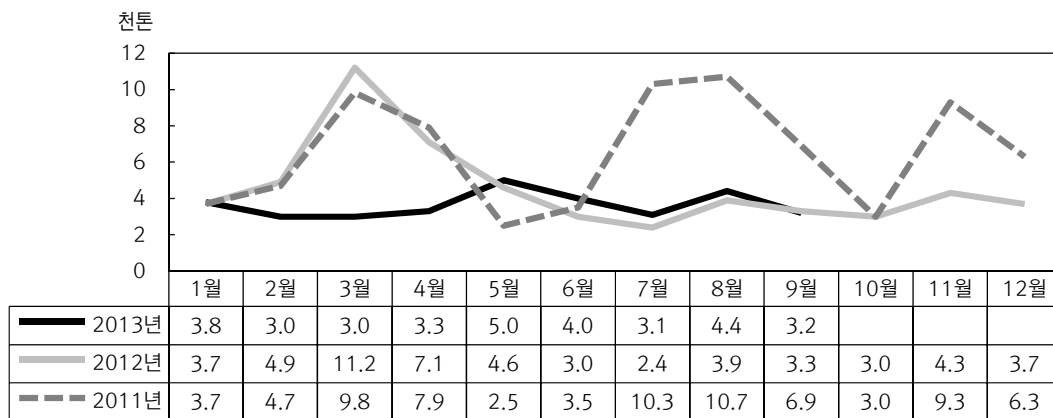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고추류(캐프시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냉동)(HS0710807000) 110.5천 톤, 고추류(건조한 것,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HS0904210000) 2.7천 톤,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HS0904220000) 1.0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고추 수입량의 96.8%, 2.4%, 0.9%를 차지함.

◆ 마늘

- 2013년 1~9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32.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9%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26.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2% 감소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2.3백만 달러, 3.1백만 달러, 2.3백만 달러임.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마늘(냉동)(HS0710802000) 21.1천 톤, 마늘(식초, 초산 조제)(HS2001909060) 3.2천 톤, 마늘(기타)(HS0703209000) 2.4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마늘 수입량의 64.5%, 9.8%, 7.3%를 차지함.

그림 7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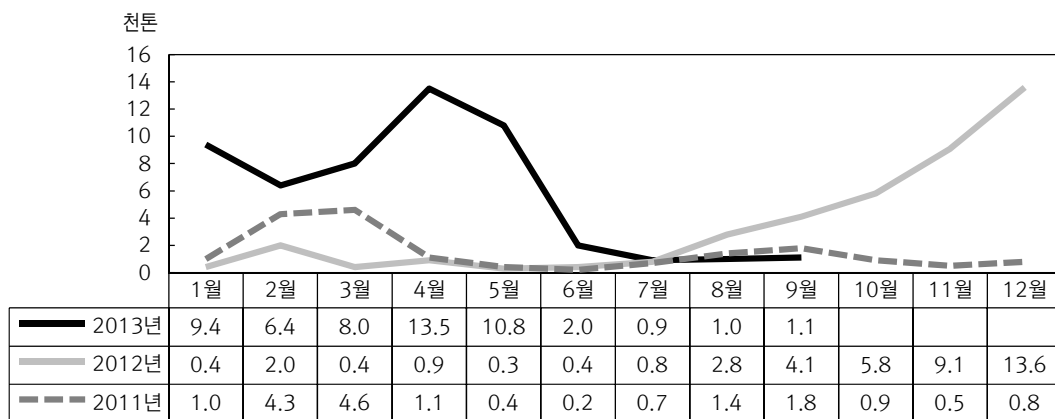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양파

- 2013년 1~9월 중국산 양파 수입량은 53.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37.7% 증가했고, 수입액도 32.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4.9% 증가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0.6백만 달러, 0.6백만 달러, 0.6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양파(신선/냉장)(HS0703101000) 48.0천 톤, 양파(냉동)(HS0710801000) 4.2천 톤, 양파(건조)(HS0712200000) 0.9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양파 수입량의 90.2%, 7.9%, 1.7%를 차지함.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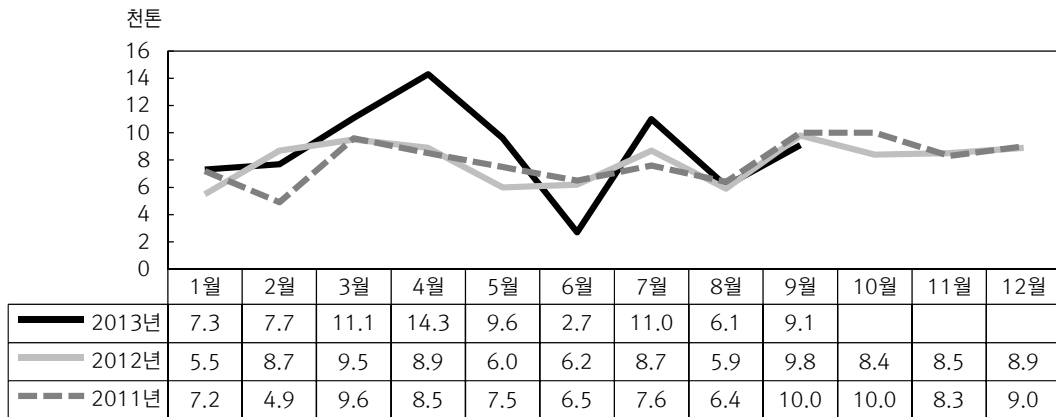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당근

- 2013년 1~9월 중국산 당근 수입량은 78.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했고, 수입액은 43.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3% 증가하였음. 7,8,9월별 수입액은 각각 6.4백만 달러, 3.4백만 달러, 5.1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당근(신선/냉장)(HS0706101000) 75.6천 톤, 당근(냉동)(HS0710804000) 2.2천 톤, 당근(건조)(HS0712902040) 0.9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당근 수입량의 95.9%, 2.8%, 1.1%를 차지함.

그림 9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1.2. 2013년 1~9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동향

1.2.1. 개황

- 2013년 1~9월 한국의 대 중국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액은 819.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 품목군은 HS 03류(어패류), 19류(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1류(각종 조제식료품), 17류(당류·설탕과자), 22류(음료, 알코올, 식초) 순임. HS 03류를 제외한 농산물 중에서는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상기 5개 품목군이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0%로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높음.
- HS 03류의 2013년 1~9월 수출액은 195.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9% 감소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23.8%를 차지했음.
 - － HS 03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0303(냉동어류)와 HS 0307(연체동물)로 각각 114.6백만 달러, 65.2백만 달러이며, HS 03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의 58.8%, 33.4%를 차지했음.

표 3 2013년 1~9월 대 중국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6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1	산동물	30	8	0.0	-72.3
02	육, 식용설육	797	3,740	0.5	369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29,355	194,998	23.8	-14.9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3,710	8,576	1.0	130.2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18,743	31,788	3.9	69.6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4,007	6,344	0.8	58.3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1,015	1,025	0.1	4.2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913	9,024	1.1	-8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920	2,175	0.3	136.4
10	곡물	21	19	0.0	-8.6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1,624	1,262	0.2	-22.3
12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식물, 잡·사료식물	45,394	34,756	4.2	-22.5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3,768	4,204	0.5	11.6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11	11	0.0	0.2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26,707	17,961	2.2	-32.7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203	27,432	3.3	72.7
17	당류와 설탕과자	114,582	105,070	12.8	-8.3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5,475	6,140	0.7	12.3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109,152	144,421	17.6	32.4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16,672	21,007	2.6	26.3
21	각종 조제식료품	96,328	107,903	13.2	12.1
22	음료, 알코올, 식초	49,689	62,330	7.6	25.7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4,742	4,520	0.6	-1.3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23,264	25,101	3.1	7.9
	총 계	782,122	819,815	100.0	4.8

주: 1. 비중은 전체 수출액 819,815천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 HS 19류의 2013년 1~9월 수출액은 114.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4%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7.6%를 차지했음.
 - HS 19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1905(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HS 1901(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HS 1902(파스타와 쿠우스쿠우스)임.
 - HS 1905, HS 1901, HS 1902의 수출액은 각각 61.4백만 달러, 47.6만 달러, 33.2백만 달러로 HS 19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3.7%, 41.6%, 29.0%임.
- HS 21류의 2013년 1~9월 수출액은 107.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1%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3.2%를 차지했음.
 - HS 21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2101(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과 HS 2106(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 2103(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으로 각각 40.9백만 달러, 36.7백만 달러, 24.0백만 달러임.
 - HS 2101, HS 2106, HS 2103의 수출액이 HS 21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9%, 34.0%, 22.2%임.
- HS 17류의 2013년도 1~9월 수출액은 105.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2.8%를 차지했음.
 - HS 17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1701(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HS 1704(설탕과자), HS 1702(기타의 당류·당시럽·인조꿀 및 캐러멜당)로 각각 93.1백만 달러, 8.3백만 달러, 3.7백만 달러임. 또한 HS 17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6%, 7.9%, 3.5%임.
- HS 22류의 2013년 1~9월 수출액은 62.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7% 증가했

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7.6%를 차지했음.

- HS 22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2202(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 나는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HS 2208(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HS 2203(맥주)로 각각 30.6백만 달러, 4.8백만 달러, 4.0백만 달러임.
- HS 2202, HS 2208, HS 2203의 수출액이 HS 22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7%, 11.2%, 6.0%임.

1.2.2. 품목별 수출 동향

- 2013년도 1~9월의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 중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총 90개이며, 수출액은 756.7백만 달러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출액의 92.3%를 차지하였음.
- 총 90개 품목 가운데 HS 03류가 23개로 25.6%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182.4백만 달러로 22.2%를 차지했음.
- HS 21류와 HS 19류가 각각 14개, 10개 품목으로 각각 15.6%, 11.1%를 차지했음.

표 4 2013년 1~9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HS-10단위)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1701990000	자당	103,552	93,007	16.2	-10.2
1901101010	조제분유	27,267	43,796	7.6	60.6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17,899	30,636	5.3	71.2
1902301010	라면	19,971	28,580	5.0	43.1
1905901090	기타 베이커리 제품	24,475	26,266	4.6	7.3
2202909000	기타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18,347	25,702	4.5	40.1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16,064	24,139	4.2	50.3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의 조제품	15,001	22,327	3.9	48.8
2106904010	김	14,865	20,686	3.6	39.2
1211201310	본삼	24,273	17,968	3.1	-26
2402201000	필터담배	15,158	16,993	3.0	12.1
2202902000	과즙음료	13,541	14,896	2.6	10.0
2008301000	유자	11,328	14,101	2.5	24.5
2106909099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7,355	9,365	1.6	27.3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9,442	8,799	1.5	-6.8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10,387	8,435	1.5	-18.8
1604141011	기름에담근것	4,556	8,327	1.5	82.8
1905909090	기타 베이커리제품	7,592	8,114	1.4	6.9
2424000000	기타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8,103	8,075	1.4	-0.3
2101111000	인스턴트커피	11,067	7,903	1.4	-28.6
2103909090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5,531	7,295	1.3	31.9
2203000000	맥주	5,458	7,172	1.2	31.4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수(水), 글리세롤폐액(廢液)	1,899	6,719	1.2	253.9
1507901010	식품용	7,502	6,226	1.1	-17.0
2208904000	소주	5,074	6,212	1.1	22.4
0602901010	난초	3,971	6,129	1.1	54.3
2103909030	혼합조미료	6,684	6,060	1.1	-9.3
2105001090	기타 아이스크림	3,904	5,060	0.9	29.6
160561900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해삼	2,776	5,004	0.9	80.3
2103909010	마요네스	4,490	4,280	0.7	-4.7
0401509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밀크와 크림(냉동크림 제외)	1,378	3,754	0.7	172.4
1704902090	기타 추잉껌	2,801	3,751	0.7	33.9
1209912000	무종자	1,437	3,528	0.6	145.5
1212212020	염장한것	2,686	3,414	0.6	27.1
1704909000	기타 설탕과자	3,386	3,295	0.6	-2.7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2,736	3,218	0.6	17.6
1702909000	기타 당류 및 캐러멜당	635	3,151	0.5	396.6
1507101000	식품용	15,261	2,950	0.5	-80.7
20089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견과류	2,075	2,638	0.5	27.1
1212211010	건조한것	7,001	2,488	0.4	-64.5

HS 코드	품목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202300000	뼈없는것	-	2,317	0.4	-
0402999000	지방분이 전준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10 이하인 밀크와 크림(냉동크림 제외)	1,296	2,292	0.4	76.8
1902301090	기타 파스타	3,762	2,286	0.4	-39.2
1302199099	기타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22	2,200	0.4	54.7
160420409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928	2,017	0.4	117.3
1604203000	생선소시지	142	1,984	0.3	1,296.5
1604204010	게맛의 것	1,487	1,970	0.3	32.5
1905310000	스위트비스킷	371	1,914	0.3	415.7
2301201000	어류의 고운가루·거친가루·펠릿(pellet)	1,703	1,850	0.3	8.6
1901909091	쌀가루의것	1,210	1,803	0.3	49.1
1806201000	초콜릿과초콜릿과자	1,693	1,777	0.3	5.0
2106901020	과일향의음료베이스	1,502	1,720	0.3	14.5
1604141019	기타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종)	1,825	1,705	0.3	-6.6
2103901030	고추장	2,054	1,601	0.3	-22.1
2103201000	토마토케첩	780	1,532	0.3	96.4
1209919000	기타 채소 종자	3,038	1,465	0.3	-51.8
0202201000	갈비	430	1,423	0.2	231
2309909000	기타사료첨가제	918	1,382	0.2	50.6
1901101090	기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252	1,347	0.2	434.7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	332	1,330	0.2	300.6
1904109000	기타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045	1,310	0.2	25.4
2206002030	탁주	1,069	1,164	0.2	9
2202101000	색깔을입힌것	850	1,138	0.2	33.9
1101001000	밀가루	1,368	1,136	0.2	-17
1302390000	기타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234	1,093	0.2	-11.4
2106909010	커피크리머	658	1,021	0.2	55.2
160555900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문어	-	1,016	0.2	-
	총계	498,297	574,252	100	15.2

주: 1.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HS 03류 제외).
 2. 비중은 전체 수출액 574.3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2.1. 개요

- 2013년 1~6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865.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음.
 - － 수출액은 3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했고, 수입액도 54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였음.
 - － 2013년 6월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4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함. 수출액은 52.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함. 수입액은 9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함.
- 2013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순으로 수출액은 각각 80.0억 달러, 62.9억 달러, 42.4억 달러, 24.4억 달러, 19.9억 달러임. 이는 일본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8%, 11.7%, 44.0%, 25.6% 증가하고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이 7.3% 감소한 것임.
- 2013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입액은 각각 63.1억 달러, 11.9억 달러, 8.8억 달러, 8.0억 달러, 7.9억 달러임. 이를 제외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4%, 52.5%, 25.8%, 4.4% 증가하고 인도로 수입한 금액이 33.2% 감소한 것임.
- 2013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 복건, 광둥, 요녕, 절강으로 수출액은 각각 73.1억 달러, 42.5억 달러, 35.3억 달러, 24.8억 달러, 24.4억 달러임. 3.6%, 20.5%, 3.5%, 6.7%, 5.5% 증가한 것임.
- 2013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지역은 산둥, 광둥, 복건, 상해, 강소으로 수출액은 각각 114.5억 달러, 71.3억 달러, 69.4억 달러, 52.2억 달러, 49.5억 달러임. 전년 동기대비 각각 산둥, 광둥, 상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7.6%, 7.0% 증가, 복경, 강소는 25.2%, 13.1% 감소한 것임.

표 5 2013년 1~6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3.3	2013.4	2013.5	2013.6	2013.1-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337,178.1	359,387.8	347,407.2	318,389.9	1,980,464.70	9.9
일본	79,979.3	100,598.9	100,225.6	89,206.1	541,487.40	-7.3
홍콩	62,875.9	63,389.9	61,535.3	56,174.2	350,287.70	23.8
한국	42,369.5	41,000.3	36,972.0	29,346.4	221,009.80	11.7
말레이시아	24,433.3	21,979.9	20,826.2	18,143.4	133,861.40	44.0
태국	19,875.2	20,903.5	18,343.5	18,641.6	112,135.50	25.6
아프리카	21,983.8	22,496.3	24,688.3	23,443.6	135,186.60	9.7
남아프리카공화국	3,342.1	2,619.1	2,377.7	3,034.1	17,884.50	8.7
이집트	1,862.3	2,113.0	1,712.3	1,301.0	12,296.50	-16.7
나이지리아	3,717.7	2,945.4	2,969.6	3,237.9	18,053.30	-6.6
모로코	2,258.6	1,920.9	2,199.7	1,968.2	11,929.50	-2.0
유럽	79,175.8	86,712.0	89,207.6	85,955.8	496,193.90	2.6
러시아연방	17,216.1	16,709.9	15,415.9	14,999.0	95,052.10	3.9
독일	16,093.5	16,467.8	18,425.9	15,074.5	96,340.20	2.0
네덜란드	9,507.4	9,192.4	9,608.8	8,873.0	56,057.00	5.8
남아메리카	18,832.0	19,932.4	22,768.0	22,421.4	117,044.20	19.8
브라질	6,752.6	7,423.7	9,070.9	8,768.5	45,011.90	48.6
멕시코	4,046.2	4,771.8	4,457.2	5,514.2	26,359.90	10.2
칠레	1,647.5	1,576.6	1,347.4	1,585.6	9,199.50	37.2
북아메리카	56,379.2	65,742.5	71,833.7	64,593.2	375,764.20	-5.1
미국	49,282.4	58,740.7	63,943.6	57,957.1	332,560.60	-3.8
캐나다	7,083.5	6,999.8	7,885.3	6,627.6	43,160.30	-14.0
대양주	8,572.8	9,335.6	9,190.3	9,780.6	53,313.00	3.7
오스트레일리아	6,676.8	7,427.3	7,050.0	7,641.7	41,887.30	3.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6 2013년 1~6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대상국별 수입 현황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3.3	2013.4	2013.5	2013.6	2013.1~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223,076.6	218,227.7	168,880.0	141,583.1	1,126,839.3	-11.4
인도	56,643.6	36,216.1	13,961.0	10,949.4	198,253.4	-37.0
태국	32,730.0	41,556.7	32,430.7	37,533.5	214,213.7	7.4
말레이시아	34,128.6	38,830.4	33,999.0	18,584.4	175,435.7	-14.5
베트남	22,754.1	24,203.8	17,622.1	15,635.8	116,720.6	-1.7
우즈베키스탄	5,272.7	8,930.8	7,338.3	1,182.1	37,459.0	-9.1
파키스탄	3,592.2	3,783.3	2,814.7	1,597.9	21,689.7	-26.9
한국	4,604.0	5,722.7	5,212.4	4,978.3	29,190.8	11.0
대만	4,860.2	4,170.2	6,118.3	4,610.1	26,930.4	45.8
아프리카	46,462.6	31,984.5	26,192.8	20,522.1	177,584.3	10.7
짐바브웨	18,965.1	4,257.4	823.4	912.4	48,092.4	31.9
남아프리카공화국	5,217.6	4,985.2	4,096.3	3,152.6	25,969.6	13.2
에티오피아	2,911.5	2,649.9	2,630.8	3,583.5	16,533.0	-6.6
유럽	110,542.7	120,072.1	115,603.0	86,817.4	616,090.9	21.0
프랑스	21,738.9	23,053.0	25,754.3	24,672.3	138,811.4	10.2
러시아연방	22,740.7	22,089.3	15,813.9	6,119.4	91,931.3	-1.0
독일	9,769.2	10,828.9	11,137.7	10,094.8	59,727.4	52.7
남아메리카	86,843.9	200,533.2	355,933.0	454,675.1	1,234,852.4	2.0
브라질	41,723.9	152,956.1	303,583.2	353,220.9	892,042.7	1.1
칠레	15,012.7	14,500.8	17,408.6	13,981.4	100,422.5	19.8
북아메리카	362,871.6	289,093.0	194,068.2	119,205.8	1,716,880.5	-1.2
미국	308,740.7	226,806.6	135,515.9	88,531.2	1,390,848.9	-6.4
캐나다	53,478.5	61,727.8	58,290.7	30,538.6	322,899.3	28.9
대양주	113,142.8	110,295.8	118,740.4	113,462.4	622,748.6	18.3
오스트레일리아	60,902.6	60,904.9	73,620.2	75,204.2	349,212.0	9.3
뉴질랜드	51,298.1	48,353.5	43,950.6	36,680.8	268,230.0	31.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7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13.1~6

단위: 만 달러, %

지 역	2012.1~6월	2013.1~6월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74,244.9	69,909.8	-5.8
천진(天津)	50,348.2	48,812.1	-3.1
하북(河北)	68,744.6	80,024.5	16.4
산서(山西)	5,458.4	4,482.6	-17.9
내몽고(內蒙古)	21,265.4	17,132.8	-19.4
요녕(遼寧)	232,272.3	247,762.6	6.7
길림(吉林)	59,752.8	62,598.2	4.8
흑룡강(黑龍江)	41,768.1	43,361.4	3.8
상해(上海)	88,077.2	84,102.8	-4.5
강소(江蘇)	141,986.3	153,856.8	8.4
절강(浙江)	231,067.1	243,844.7	5.5
안휘(安徽)	44,684.0	50,116.1	12.2
복건(福建)	352,642.0	424,936.3	20.5
강서(江西)	18,944.0	23,867.0	26.0
산둥(山東)	705,941.7	731,072.0	3.6
하남(河南)	48,612.5	58,466.1	20.3
호북(湖北)	56,266.2	76,754.7	36.4
호남(湖南)	31,344.0	38,035.0	21.3
광둥(廣東)	341,141.5	353,126.4	3.5
광서(廣西)	57,514.0	67,462.5	17.3
해남(海南)	30,071.9	27,619.5	-8.2
중경(重慶)	12,303.7	15,181.2	23.4
사천(四川)	38,175.0	32,488.8	-14.9
귀주(貴州)	14,475.8	8,859.4	-38.8
운남(雲南)	82,158.8	91,522.0	11.4
서장(西藏)	2,001.8	3,298.2	64.8
섬서(陝西)	36,446.0	36,089.2	-1.0
감숙(甘肅)	19,433.7	14,483.5	-25.5
청해(青海)	1,137.7	1,838.4	61.6
영하(寧夏)	3,818.0	4,621.6	21.0
신강(新疆)	42,432.4	42,240.6	-0.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8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13.1~6

단위: 만 달러, %

지 역	2012.1~6월	2013.1~6월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927,333.5	693,789.8	-25.2
천진(天津)	253,640.0	254,973.7	0.5
하북(河北)	117,338.7	148,588.0	26.6
산서(山西)	647.6	4,642.2	616.9
내몽고(內蒙古)	13,892.8	19,144.5	37.8
요녕(遼寧)	229,982.9	270,977.2	17.8
길림(吉林)	37,877.2	46,906.8	23.8
흑룡강(黑龍江)	56,820.2	114,153.5	100.9
상해(上海)	487,200.5	521,510.8	7.0
강소(江蘇)	570,116.0	495,318.3	-13.1
절강(浙江)	270,199.3	258,837.4	-4.2
안휘(安徽)	47,950.9	69,894.2	45.8
복건(福建)	212,791.0	264,521.1	24.3
강서(江西)	3,143.6	5,507.3	75.2
산둥(山東)	1,022,576.4	1,144,771.9	11.9
하남(河南)	78,679.4	71,063.0	-9.7
호북(湖北)	17,136.7	15,015.2	-12.4
호남(湖南)	20,466.2	21,183.3	3.5
광둥(廣東)	662,661.8	713,094.2	7.6
광서(廣西)	205,863.4	171,512.8	-16.7
해남(海南)	7,717.1	6,751.7	-12.5
중경(重慶)	36,403.9	39,925.1	9.7
사천(四川)	13,408.3	16,917.0	26.2
귀주(貴州)	179.6	135.5	-24.6
운남(雲南)	85,041.1	82,989.2	-2.4
서장(西藏)	7.2	19.4	170.9
섬서(陝西)	4,710.1	5,326.0	13.1
감숙(甘肅)	1,698.1	1,531.0	-9.8
청해(青海)	37.2	49.9	34.2
영하(寧夏)	63.4	44.7	-29.5
신강(新疆)	31,270.7	35,912.7	14.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2.2. 품목별 수출 동향

2.2.1. 곡물

가. 쌀

- 2013년 1~6월 중국의 쌀 수출량은 278.8천 톤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하였으며, 수출액도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 증가하였음. 평균 수출 단가는 톤 당 864.6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음.
- 2013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쌀 수출량은 276.7천 톤으로 전년 대비 44.3% 상승하였으며, 수출액도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1% 증가함. 평균 수출 단가는 톤 당 865.4달러로 전년 대비 9.1% 하락하였음.

표 9 2013년 1~6월 중국의 쌀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276,698.5	23,945.5	44.3	31.1
한국	198,116.0	15,934.2	102.3	107.9
일본	31,099.1	3,144.1	-20.6	-22.9
파키스탄	3,768.3	1,510.5	-47.8	-39.4
홍콩	1,254.8	0.1	7.4	
북한	19,165.0	1,121.1	-6.6	-0.9
몽골	7,199.0	428.0	32.5	48.6
베트남	1,423.8	396.4	1.9	0
러시아연방	1,840.0	118.8	13.7	8
키르기스스탄	780.0	55.5	-3.7	-3.2
마카오	397.0	33.5	23	33.6
아프리카	236.1	37.7	-94.6	-88.1
유럽	1,840.0	118.8	1.6	-7.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462.3	409.7	-64.1	-64.7
독립국가연합	2,740.0	186.3	-34.7	-36.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 2013년 1~6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한국, 일본, 북한, 몽골, 파키스탄순으로, 각각 198.1천 톤, 31.1천 톤, 19.2천 톤, 7.2천 톤, 3.8천 톤임.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7.9% 증가, 22.9% 감소, 0.9% 감소, 48.6% 증가, 39.4% 감소한 것임.
-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쌀 수출지역은 북경, 길림, 요녕, 신강, 내몽고지역으로 각각 213.3천 톤, 38.8천 톤, 11.5천 톤, 5.4천 톤, 2.4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8.1% 증가, 17.5% 증가, 35.0% 증가, 3.0% 증가, 21.9% 증가한 것임.

표 10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쌀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213,273.7	17,921.9	118.1	105.5
길림(吉林)	38,816.5	2,916.8	17.5	15.5
요녕(遼寧)	11,512.5	693.5	35.0	43.2
신강(新疆)	5,415.0	371.8	3.0	8.8
내몽고(內蒙古)	2,384.0	102.8	21.9	50.5
흑룡강(黑龍江)	1,840.0	118.8	-95.4	-95.8
호북(湖北)	1,606.2	576.3	-53.6	-49.8
사천(四川)	1,269.0	367.7	-39.8	-41.7
호남(湖南)	1,070.0	563.6	-1.5	10.4
안휘(安徽)	710.7	230.8	-70.2	-69.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나. 옥수수

- 2013년 1~6월 중국 옥수수 수출량은 17.7천 톤으로 전년 대비 92.4% 감소하였으며, 수출액도 66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92.8% 감소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75.5 달러로 전년 대비 5.1% 하락하였음.

- 2013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옥수수 수출량은 17.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4% 감소하였음. 수출 금액은 660.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하였음. 평균단가는 톤당 374.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하였음.

표 11 2013년 1~6월 중국의 옥수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7,666.0	660.7	-92.4	-92.8
북한	17,654.8	656.4	-92.4	-92.8
일본	11.1	4.3	-58.8	-42.3
말리	10.2	2.6	-	-
아프리카	11.0	3.0	-89.2	-84.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옥수수 수출지역은 요녕, 길림 지역으로 각각 10.5천 톤, 7.1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9.7% 증가, 16.4% 증가한 것임.

표 12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옥수수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요녕(遼寧)	10,514.8	395.2	89.7	100.7
길림(吉林)	7,140.0	261.2	16.4	19.1
감숙(甘肅)	11.1	4.4	-51.7	-38.8
강소(江蘇)	10.2	2.6	-	-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2.2.2. 축산물

가. 돼지고기

- 2013년 1~6월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34.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하였고, 수출액도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295.7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음.

○ 2013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돼지고기 수출량은 33.8천 톤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함.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321.7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 마카오, 키르기스스탄으로 각각 29.6천 톤, 1.9천 톤, 1.1천 톤을 수출함.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6.1% 증가, 16.1% 증가, 61.27% 감소한 것임.

표 13 2013년 1~6월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3,789.7	14,602.9	16.9	12.4
홍콩	29,550.9	12,575.3	26.1	18.8
마카오	1,915.0	879.0	16.1	14.0
키르기스스탄	1,113.0	529.5	-61.2	-52.1
알바니아	887.5	319.5	23.9	57.1
베트남	371.3	38.0	-	-
싱가포르	352.9	356.6	-31.9	9.8
유럽	1,103.8	386.2	20.3	43.9
그루지야	190.8	58.0	27.2	24.3
독립국가연합	1,338.5	640.2	-54.2	-43.1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934.7	489.0	60.0	33.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돼지고기 수출지역은 호남, 광둥, 사천 지역으로 각각 10.7천 톤, 7.2천 톤, 4.9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9.6% 증가, 3.8% 감소, 22.5% 감소한 것임.

표 14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돼지고기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호남(湖南)	10,686.2	5,643.4	49.6	60.2
광둥(廣東)	7,155.6	2,885.6	-3.8	-8.5
사천(四川)	4,871.3	1,828.8	-22.5	-23.5
운남(雲南)	3,500.0	1,868.0	63.9	68.0
복건(福建)	2,044.3	246.1	18,377.4	2,050.2
길림(吉林)	1,555.5	530.6	12.4	0.2
중경(重慶)	1,423.2	602.2	9.2	11.1
산둥(山東)	1,415.4	486.4	14.3	-5.9
하남(河南)	1,286.0	562.5	-17.7	-27.6
흑룡강(黑龍江)	822.0	261.7	161.5	102.7
광서(廣西)	130.0	71.3	-84.1	-83.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나. 닭고기 및 제품

- 2013년 1~6월 중국의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량은 190.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795.7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음.
- 2013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량은 179.7천 톤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으며, 수출액도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감소함.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3,821.7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음.
 -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순으로 각각 102.9천 톤, 56.8천 톤, 8.3천 톤을 수출함.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9% 감소, 3.1% 증가, 24.7% 감소한 것임.
-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요녕(遼寧), 하북(河北), 하남(河南) 지역으로 각각 78.8천 톤, 34.1천 톤, 27.1천 톤, 11.2천 톤, 7.2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9% 감소, 9.8% 감소, 52.0% 증가, 4.4% 증가, 11.2% 감소한 것임.

표 15 2013년 1~6월 중국의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79,722.6	68,685.0	-3.6	-6.6
일본	102,931.1	47,051.4	-4.9	-8.2
홍콩	56,750.60	16,004.8	3.1	2.0
말레이시아	8,390.0	2,258.1	-24.7	-28.9
바레인	3,343.4	839.6	26.2	23.5
키르기스스탄	2,007.2	550.1	-25.7	-17.6
마카오	1,638.7	512.0	6.1	-1.2
한국	1,308.9	583.1	-21.2	-18.5
유럽	9,167.5	3,297.2	64.3	60.6
네덜란드	3,070.2	1,220.7	115.7	108.7
영국	2,878.1	1,146.4	101.3	94.2
아프리카	707.4	127.8	64.5	63.3
남미주	528.0	121.1	176.3	153.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표 16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둥(山東)	78,752.9	31,541.7	-6.9	-8.3
광둥(廣東)	34,082.5	11,331.4	-9.8	-4.8
요녕(遼寧)	27,076.7	9,350.9	52.0	29.1
하북(河北)	11,238.5	4,316.4	4.4	-0.9
하남(河南)	7,163.7	2,610.0	-11.2	-18.7
길림(吉林)	7,044.2	3,225.0	-12.1	-13.3
북경(北京)	5,625.4	2,929.5	-36.4	-33.2
흑룡강(黑龍江)	4,343.3	2,171.9	-8.5	-15.1
복건(福建)	3,534.2	1,531.0	48.0	45.9
상해(上海)	2,801.0	987.9	-16.7	-24.3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2.2.3. 채소류

가. 마늘

- 2013년 1~6월 중국의 마늘 수출량은 793.9천 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1,153.8달러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음.
- 2013년 1~2월 중국의 주요 마늘 수출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순으로, 각각 223.9천 톤, 78.9천 톤, 53.6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3.7% 증가, 9.7% 증가, 2.5% 감소한 것임.

표 17 2013년 1~6월 중국의 마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3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536,993.7	51,330.7	6.6	26.5
인도네시아	223,945.9	19,976.2	13.7	45.1
베트남	78,852.9	4,841.1	9.7	-2.5
말레이시아	48,400.8	4,900.2	12.9	38.3
태국	33,119.3	3,827.1	27.2	36.6
필리핀	30,503.2	3,196.5	-11.8	26.9
일본	14,225.2	4,036.7	-14.4	21.8
북아메리카	65,304.2	13,449.9	-0.5	36.4
미국	53,634.4	11,088.4	-2.5	34.4
유럽	59,209.8	9,687.8	-10.2	23.7
네덜란드	13,775.7	2,408.7	-18.1	29.5
남아메리카	96,232.9	12,559.8	7.4	50.7
브라질	54,283.0	7,615.8	13.4	63.4
아프리카	28,900.2	3,241.2	-8.5	28.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420,366.4	37,433.1	11.5	33.2
중동	64,942.8	7,011.8	3.5	33.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마늘 수출지역은 산둥(山東), 강소(江蘇), 광서(廣西), 하남(河南) 지역으로 각각 515.6천 톤, 103.5천 톤, 73.4천 톤, 30.8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3% 증가, 0.3% 감소, 25.5% 증가, 18.5% 감소한 것임.

표 18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마늘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3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둥(山東)	515,625	61,337	16.3	45.0
강소(江蘇)	103,469	12,084	-0.3	30.7
광서(廣西)	73,445	4,433	25.5	11.6
하남(河南)	30,793	4,115	-18.5	22.7
광둥(廣東)	13,070	1,168	-70.7	-63.5
운남(雲南)	10,601	1,260	1.3	24.0
복건(福建)	10,178	1,461	-9.9	37.2
상해(上海)	10,028	1,807	-10.8	17.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2.2.4. 기타

가. 표고버섯

- 2013년 1~6월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량은 43.3천 톤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하였으며, 수출액도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0% 증가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 당 12,721.8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음.
- 2013년 1~6월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순으로 각각 13.7천 톤, 5.8천 톤, 5.4천 톤, 5.4천 톤, 3.8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8.3% 증가, 58.6% 증가, 65.2% 증가, 11.8% 증가, 3.5% 감소한 것임.

표 19 2013년 1~6월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3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9,212.8	51,722.7	38.5	62.1
베트남	13,704.9	21,111.6	158.3	169.5
태국	5,820.9	8,506.5	58.6	97.9
말레이시아	5,380.0	6,026.6	65.2	71.2
홍콩	5,369.4	8,478.1	11.8	23.3
한국	3,790.8	1,970.0	-3.5	-14.0
일본	3,166.5	2,843.8	-43.9	-47.7
싱가폴	1,000.6	1,443.3	24.2	90.6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6,629.7	38,149.8	95.5	122.8
북아메리카	2,896.3	2,026.6	5.3	0.4
미국	2,615.8	1,795.9	7.6	2.2
유럽	911.1	1,032.9	-3.5	4.5
유럽연합27국	768.3	817.4	-6.2	2.6

자료: 中華民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표고버섯 수출지역은 호북(湖北), 하남(河南), 절강(浙江), 복건(福建), 상해(上海) 지역으로 각각 19.4천 톤, 9.7천 톤, 5.7천 톤, 3.1천 톤, 1.9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2.9% 증가, 89.6% 증가, 0.3% 감소, 38.6% 감소, 34.1% 감소한 것임.

표 20 2013년 1~6월 중국내 주요 표고버섯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3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호북(湖北)	19,350.0	29,434.5	92.9	117.2
하남(河南)	9,692.8	16,012.4	89.6	95.1
절강(浙江)	5,686.1	3,019.7	-0.3	-2.2
복건(福建)	3,139.1	3,998.6	-38.6	-45.4
상해(上海)	1,918.3	945.6	-34.1	-33.4
광둥(廣東)	1,185.5	239.3	-15.4	-39.3
요녕(遼寧)	813.3	391.0	41.9	68.9
운남(雲南)	640.0	434.7	49.3	146.7
하북(河北)	490.1	164.5	785.5	819.3
산둥(山東)	247.1	303.2	-55.7	4.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3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참고자료

商務部.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2013年 3月·4月·5月·6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2013年 3月·4月·5月·6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2013年 3月·4月·5月·6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2013年 3月·4月·5月·6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2013年 3月·4月·5月·6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2013年 3月·4月·5月·6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2013年 3月·4月·5月·6月)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주요 곡물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

양곡연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증감율
생산량		474,192	488,187	511,183	530,693	539,920	1.7
수입량		3,211	2,663	10,985	8,695	16,000	84.0
총공급량(A)		477,403	490,849	522,168	539,388	555,920	3.1
국 내 소 비	식용소비	256,400	262,400	270,100	277,000	282,000	1.8
	사료용소비	131,000	137,600	157,180	154,260	154,720	0.3
	가공용소비	70,900	75,300	80,000	78,000	80,060	2.6
	종자용소비	7,180	7,190	7,260	7,390	7,430	0.5
	합 계	465,480	482,490	514,540	516,650	524,210	1.5
수출량		1,083	762	980	650	650	0.0
총소비량(B)		466,563	485,052	515,520	517,300	524,860	1.5
잔여량(A-B)		10,841	5,797	6,648	22,088	31,060	40.6

- 주 1. 곡물은 쌀, 밀, 옥수수만 포함되며,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2/13년, 2013/14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는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증감률은 2012/13 양곡년도 대비 증감률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65期(2013.10.12), 第153期(2012.10.15), 第150期(2012.7.11), 第147期(2012.4.11), 第134期(2011.3.10)

*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의 관리를 받는 국가식량국(國家糧食局)의 직속 사업단위인 국가양유신식중심(國家糧油信息中心)이 발행하는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飼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油脂油料市場供需狀況月報」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지역별 주요 곡물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2/13 양곡년도				2013/14 양곡년도			
	생산량	총공급량 (A)	총소비량 (B)	잔여량 (A-B)	생산량	총공급량 (A)	총소비량 (B)	잔여량 (A-B)
전 국	530,693	539,388	517,300	22,088	539,920	555,920	525,020	30,900
주산지	422,606	423,376	354,081	69,295	433,437	436,217	359,171	77,046
하북성	30,192	30,192	30,634	-442	31,058	31,058	31,074	-16
내몽고	20,461	20,461	9,490	10,971	22,001	22,001	9,901	12,100
요녕성	19,345	19,435	15,747	3,688	20,560	20,690	16,297	4,393
길림성	31,108	31,108	17,944	13,164	34,553	34,553	18,795	15,758
흑룡강성	51,292	51,292	16,759	34,533	54,685	54,685	17,504	37,181
강소성	31,791	32,001	31,019	982	32,133	32,903	31,400	1,503
안휘성	31,150	31,150	21,881	9,269	31,379	31,379	22,262	9,117
강서성	19,873	19,933	17,654	2,279	19,686	19,986	17,935	2,051
산둥성	42,774	42,924	54,890	-11,966	43,536	44,736	55,742	-11,006
하남성	54,176	54,196	46,670	7,526	53,152	53,152	46,603	6,549
호북성	23,048	23,108	24,219	-1,111	22,671	22,771	24,000	-1,229
호남성	28,374	28,434	29,861	-1,427	27,462	27,592	29,602	-2,010
사천성	26,743	26,743	31,549	-4,806	26,196	26,196	32,142	-5,946
신 강	12,280	12,400	5,764	6,636	14,366	14,516	5,914	8,602
생산-소비 균형지역	78,320	78,685	75,582	3,103	78,055	78,955	77,421	1,534
산서성	11,636	11,636	9,198	2,438	11,778	11,778	9,398	2,380
광 서	13,928	14,223	18,901	-4,678	14,072	14,872	19,152	-4,280
귀주성	7,971	7,971	7,792	179	7,336	7,336	8,032	-696
운남성	14,329	14,399	11,006	3,393	14,536	14,636	11,357	3,279
중경시	7,927	7,927	8,912	-985	7,963	7,963	9,173	-1,210
섬서성	10,897	10,897	10,364	533	10,487	10,487	10,668	-181
감숙성	7,865	7,865	6,261	1,604	7,726	7,726	6,453	1,273
청해성	522	522	796	-274	568	568	790	-222
영 하	3,245	3,245	2,352	893	3,590	3,590	2,398	1,192
주소비지	29,767	37,327	87,637	-50,310	28,428	40,748	88,428	-47,680
북경시	1,111	1,161	6,492	-5,331	911	991	6,672	-5,681
천진시	1,594	1,664	4,894	-3,230	1,727	1,837	4,974	-3,137
상해시	1,142	1,382	6,898	-5,516	1,066	1,786	6,878	-5,092
절강성	6,645	6,785	18,538	-11,753	6,723	7,013	18,648	-11,635
복건성	5,261	5,941	12,716	-6,775	4,345	5,835	13,096	-7,261
광둥성	12,065	18,385	33,404	-15,019	11,791	21,321	33,335	-12,014
해남성	1,671	1,731	4,329	-2,598	1,591	1,691	4,449	-2,758
서 장	277	277	366	-89	273	273	376	-103

주: 주요곡물은 밀, 옥수수, 벼를 의미함.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第165期(2013.10.12)

▶ 쌀(조곡)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재배면적		29,627	29,873	30,057	30,137	30,432
- 조생종(早稻)		5,870	5,796	5,750	5,765	5,792
- 중생종(中稻)		17,527	17,853	18,100	18,019	18,370
- 만생종(晩稻)		6,230	6,225	6,207	6,353	6,270
단 수		6.585	6.553	6.687	6.777	6.662
- 조생종(早稻)		5.682	5.407	5.697	5.775	5.883
- 중생종(中稻)		7.223	7.234	7.352	7.413	7.271
- 만생종(晩稻)		5.641	5.667	5.665	5.883	5.598
생산량		195,104	195,761	201,001	204,236	202,750
수입량		553	889	2,806	3,100	4,000
총공급량(A)		195,657	196,649	203,807	207,336	206,750
국 내 소 비	식용소비	161,500	165,500	169,000	172,000	175,000
	- 쌀	111,435	114,195	116,610	118,680	120,750
	- 기울(bran)	50,065	51,305	52,390	53,320	54,250
	사료용소비 및 손실	15,500	16,300	16,180	15,260	13,220
	가공용소비	10,500	11,000	12,000	13,000	12,760
	종자용소비	1,190	1,200	1,220	1,240	1,250
합 계		188,690	194,000	198,400	201,500	202,230
수출량		931	652	636	500	500
총소비량(B)		189,621	194,652	199,036	202,000	202,730
잔여량(A-B)		6,036	1,998	4,771	5,336	4,020
산지도매 시장가격	조생종	1,810~2,050	2,000~2,420	2,400~2,640	2,550~2,700	2,550~2,700
	중생종	2,020~2,900	2,700~3,000	2,860~3,100	2,830~3,200	2,900~3,100
	만생종	1,910~2,100	2,050~2,550	2,550~2,720	2,500~2,750	2,550~2,75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2/13년, 2013/14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의 산지도매시장가격은 각각 강서성 중간등급 조생 장립종 벼 평균가격, 강소성 중 간등급 중생종 벼 평균가격, 강서성 중간등급 만생 장립종 벼 평균가격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65期(2013.10.12), 第153期(2012.10.15), 第150期(2012.7.11), 第147期(2012.4.11), 第134期(2011.3.10)

지역별 쌀(조곡)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2/13 양곡연도						2013/14 양곡연도					
	생산량	총공급량	식용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식용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전 국	204,236	207,336	172,000	30,000	202,000	5,336	202,750	206,750	175,000	27,730	202,730	4,020
북경시	1	1	2,440	160	2,600	-2,599	2	2	2,490	160	2,650	-2,648
천진시	112	122	1,310	52	1,362	-1,240	146	156	1,340	52	1,392	-1,236
하북성	498	498	3,790	165	3,955	-3,457	630	630	3,850	165	4,015	-3,385
산서성	6	6	2,320	50	2,370	-2,364	6	6	2,360	50	2,410	-2,404
내몽고	733	733	1,680	105	1,785	-1,052	809	809	1,710	105	1,815	-1,006
요녕성	5,078	5,098	5,030	198	5,228	-130	5,230	5,240	5,120	198	5,318	-78
길림성	5,320	5,320	3,670	297	3,967	1,353	6,240	6,240	3,740	297	4,037	2,203
흑룡강	21,712	21,712	4,680	668	5,348	16,364	22,900	22,900	4,760	678	5,438	17,462
상해시	891	1,001	2,710	305	3,015	-2,014	850	950	2,750	305	3,055	-2,105
강소성	19,001	19,111	13,740	2,798	16,538	2,573	18,800	18,900	13,980	2,698	16,678	2,222
절강성	6,083	6,113	10,180	2,626	12,806	-6,693	6,187	6,207	10,360	2,506	12,866	-6,659
안휘성	13,935	13,935	7,330	1,830	9,160	4,775	13,808	13,808	7,460	1,820	9,280	4,528
북건성	5,074	5,334	6,940	1,025	7,965	-2,631	4,146	4,386	7,060	1,035	8,095	-3,709
강서성	19,724	19,724	9,260	2,632	11,892	7,832	19,530	19,530	9,420	2,523	11,943	7,587
산둥성	1,034	1,034	4,730	224	4,954	-3,920	1,140	1,140	4,820	224	5,044	-3,904
하남성	4,925	4,925	5,190	242	5,432	-507	4,750	4,750	5,280	243	5,523	-773
호북성	16,514	16,514	9,440	3,215	12,655	3,859	15,828	15,828	9,610	2,666	12,276	3,552
호남성	26,316	26,316	15,980	3,250	19,230	7,086	25,455	25,455	16,260	2,561	18,821	6,634
광둥성	11,265	13,725	13,600	3,046	16,646	-2,921	10,911	14,111	13,800	2,587	16,387	-2,276
광 서	11,420	11,500	11,090	2,289	13,379	-1,879	11,272	11,572	11,290	2,180	13,470	-1,898
해남성	1,558	1,558	980	108	1,088	470	1,475	1,475	990	108	1,098	377
중경시	4,980	4,980	5,680	241	5,921	-941	4,900	4,900	5,780	232	6,012	-1,112
사천성	15,360	15,360	13,330	3,466	16,796	-1,436	14,905	14,905	13,570	3,338	16,908	-2,003
귀주성	4,025	4,025	4,730	262	4,992	-967	3,620	3,620	4,820	252	5,072	-1,452
운남성	6,446	6,466	5,830	568	6,398	68	6,978	6,998	5,920	569	6,489	509
서 장	5	5	160	0	160	-155	6	6	170	0	170	-164
섬서성	873	873	2,480	104	2,584	-1,711	855	855	2,530	104	2,634	-1,779
감숙성	39	39	1,670	50	1,720	-1,681	17	17	1,700	50	1,750	-1,733
청해성	0	0	370	0	370	-370	0	0	370	0	370	-370
영 하	713	713	610	2	612	101	724	724	620	2	622	102
신 강	594	594	1,050	22	1,072	-478	630	630	1,070	22	1,092	-462

주: 1.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65期(2013.10.12)

▶ 밀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재배면적		24,291	24,256	24,270	24,268	24,140
- 겨울 밀		22,422	22,552	22,602	22,514	22,440
- 봄 밀		1,868	1,705	1,669	1,755	1,700
단 수		4.739	4.748	4.837	4.979	5.061
- 겨울 밀		4.815	4.827	4.909	5.072	5.155
- 봄 밀		3.823	3.705	3.861	3.791	3.824
생산량		115,115	115,180	117,401	120,844	122,170
- 겨울 밀		107,973	108,863	110,957	114,192	115,670
- 봄 밀		7,142	6,317	6,444	6,652	6,500
수입량		1,362	795	2,949	2,895	6,500
총공급량(A)		116,476	115,975	120,350	123,739	128,670
국 내 소 비	제분(制粉)소비	80,500	83,300	85,100	87,600	89,000
	- 밀가루	60,375	62,475	63,825	65,700	66,750
	- 밀기울	4,025	4,165	4,255	4,380	4,450
	- 맥피(麴皮)	16,100	16,660	17,020	17,520	17,800
	사료용소비	10,500	13,500	28,000	21,000	16,500
	가공용소비	10,400	10,800	11,000	12,000	12,300
	종자용소비	4,690	4,690	4,690	4,700	4,700
합 계		106,090	112,290		125,300	122,500
수출량		1	0	50	0	0
총소비량(B)		106,091	112,290	128,840	125,300	122,500
잔여량(A-B)		10,385	3,685	-8,490	-1,561	6,170
겨울밀 도매시장가격	하남성	1,770~2,050	1,880~2,100	2,000~2,200	2,080~2,600	2,250~2,700
	하북성	1,820~2,200	1,950~2,250	2,040~2,300	2,110~2,700	2,360~2,80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임. 수출입량은 해관총서를 참고함.

2. 양곡연도 중 2012/13, 2013/14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65期(2013.10.12), 第153期(2012.10.15), 第150期(2012.7.11), 第147期(2012.4.11), 第134期(2011.3.10)

지역별 밀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2/13 양곡연도						2013/14 양곡연도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전 국	120,844	123,739	87,600	37,700	125,300	-1,561	122,170	128,670	89,000	33,500	122,500	6,170
북경시	274	274	1,540	346	1,886	-1,612	189	189	1,560	316	1,876	-1,687
천진시	558	558	1,200	325	1,525	-967	602	602	1,220	305	1,525	-923
하북성	13,199	13,199	8,800	2,109	10,909	2,290	13,428	13,428	8,940	2,079	11,019	2,409
산서성	2,592	2,592	3,750	239	3,989	-1,397	2,401	2,401	3,810	229	4,039	-1,638
내몽고	1,884	1,884	700	120	820	1,064	1,692	1,692	720	110	830	862
요녕성	32	32	1,150	74	1,224	-1,192	30	30	1,170	74	1,244	-1,214
길림성	0	0	80	52	132	-132	13	13	80	42	122	-109
흑룡강	700	700	850	71	921	-221	585	585	860	61	921	-336
상해시	226	286	2,260	613	2,873	-2,587	188	688	2,300	483	2,783	-2,095
강소성	10,488	10,488	6,200	2,211	8,411	2,077	11,023	11,523	6,300	1,981	8,281	3,242
절강성	271	271	600	1,130	1,730	-1,459	286	286	610	950	1,560	-1,274
안휘성	12,940	12,940	5,200	1,531	6,731	6,209	12,991	12,991	5,280	1,361	6,641	6,350
북건성	7	217	700	841	1,541	-1,324	9	909	710	671	1,381	-472
강서성	23	23	530	1,142	1,672	-1,649	24	24	540	1,012	1,552	-1,528
산둥성	21,795	21,795	15,500	6,546	22,046	-251	22,196	22,796	15,750	5,686	21,436	1,360
하남성	31,773	31,793	17,300	9,185	26,485	5,308	31,902	31,902	17,580	8,295	25,875	6,027
호북성	3,708	3,708	2,700	1,752	4,452	-744	4,143	4,143	2,740	1,622	4,362	-219
호남성	86	86	300	1,418	1,718	-1,632	107	107	300	1,208	1,508	-1,401
광둥성	3	2,383	3,000	3,531	6,531	-4,148	0	3,700	3,050	3,081	6,131	-2,431
광 서	2	107	380	552	932	-825	0	150	390	362	752	-602
해남성	0	0	740	90	830	-830	0	0	750	80	830	-830
중경시	384	384	90	521	611	-227	413	413	90	511	601	-188
사천성	4,370	4,370	2,900	1,953	4,853	-483	4,231	4,231	2,950	1,703	4,653	-422
귀주성	524	524	550	80	630	-106	596	596	560	80	640	-44
운남성	883	883	930	168	1,098	-215	928	928	940	158	1,098	-170
서 장	246	246	180	6	186	60	237	237	180	6	186	51
섬서성	4,355	4,355	3,300	407	3,707	648	3,712	3,712	3,350	387	3,737	-25
감숙성	2,785	2,785	2,300	281	2,581	204	2,209	2,209	2,340	271	2,611	-402
청해성	352	352	270	36	306	46	374	374	270	30	300	74
영 하	620	620	660	73	733	-113	666	666	670	69	739	-73
신 강	5,765	5,885	2,940	297	3,237	2,648	6,996	7,146	2,990	277	3,267	3,879

주 1.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第165期(2013.10.12)

▶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1/12	2012/13	2013/14
재배면적		33,542	35,030	35,690
- 동북(東北)지역		12,526	13,515	13,760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		12,246	12,389	12,533
단 수		5.748	5.87	6.024
- 동북(東北)지역		6.393	6.418	6.853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		5.669	5.755	5.718
생산량		192,781	205,614	215,000
- 동북(東北)지역		80,072	86,746	94,300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		69,429	71,294	71,660
수입량		5,230	2,700	5,500
총공급량(A)		198,011	208,314	220,500
국내 소비	식용소비	16,000	17,400	18,160
	사료용소비	113,000	118,000	125,000
	가공용소비	57,000	53,000	55,000
	종자용소비	1,350	1,450	1,480
	합 계	187,350	189,850	199,640
수출량		294	150	150
총소비량(B)		187,644	190,000	199,790
잔여량(A-B)		10,367	18,314	20,710
도매시장 가격	산지	2,100-2,380	2,170-2,350	2,150-2,350
	소비지	2,300-2,600	2,380-2,520	2,350-2,55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2/13, 2013/14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동북지역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를 포함함.

5.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강소성, 안휘성을 포함함.

6. 산지 도매시장 가격은 길림성의 중간등급 옥수수의 평균 출고가격임.

7. 소비지 도매시장 가격은 광둥성의 중간등급 옥수수의 판매가격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飼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65期(2013.10.12)

지역별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2/13 양곡연도						2013/13 양곡연도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전 국	205,614	208,314	118,000	72,000	190,000	18,314	215,000	220,500	125,000	74,790	199,790	20,710
북경시	836	886	1,770	236	2,006	-1,120	720	800	1,830	316	2,146	-1,346
천진시	925	985	1,520	487	2,007	-1,023	980	1,080	1,560	497	2,057	-977
허베이성	16,495	16,495	10,200	5,570	15,770	725	17,000	17,000	10,510	5,530	16,040	960
산둥성	9,039	9,039	1,400	1,439	2,839	6,200	9,370	9,370	1,470	1,479	2,949	6,421
내몽고	17,844	17,844	2,700	4,185	6,885	10,959	19,500	19,500	2,930	4,326	7,256	12,244
요녕성	14,235	14,305	6,390	2,905	9,295	5,010	15,300	15,420	6,690	3,045	9,735	5,685
길림성	25,788	25,788	3,610	10,235	13,845	11,943	28,300	28,300	3,810	10,826	14,636	13,664
흑룡강	28,879	28,879	3,390	7,100	10,490	18,389	31,200	31,200	3,610	7,535	11,145	20,055
상해시	25	95	750	260	1,010	-915	28	148	780	260	1,040	-892
강소성	2,302	2,402	4,990	1,080	6,070	-3,668	2,310	2,480	5,320	1,121	6,441	-3,961
절강성	291	401	3,410	592	4,002	-3,601	250	520	3,610	612	4,222	-3,702
안휘성	4,275	4,275	2,510	3,480	5,990	-1,715	4,580	4,580	2,750	3,591	6,341	-1,761
북건성	180	390	2,740	470	3,210	-2,820	190	540	3,100	520	3,620	-3,080
강서성	126	186	3,520	570	4,090	-3,904	132	432	3,850	590	4,440	-4,008
산둥성	19,945	20,095	12,330	15,560	27,890	-7,795	20,200	20,800	13,150	16,112	29,262	-8,462
하남성	17,478	17,478	8,740	6,013	14,753	2,725	16,500	16,500	8,990	6,215	15,205	1,295
호북성	2,826	2,886	5,750	1,362	7,112	-4,226	2,700	2,800	5,950	1,412	7,362	-4,562
호남성	1,973	2,033	8,030	883	8,913	-6,881	1,900	2,030	8,360	913	9,273	-7,243
광둥성	797	2,277	8,860	1,367	10,227	-7,950	880	3,510	9,410	1,407	10,817	-7,307
광 서	2,506	2,616	3,930	660	4,590	-1,974	2,800	3,150	4,250	680	4,930	-1,780
해남성	113	173	2,300	111	2,411	-2,238	116	216	2,410	111	2,521	-2,305
중경시	2,563	2,563	2,000	380	2,380	183	2,650	2,650	2,170	390	2,560	90
사천성	7,013	7,013	8,640	1,260	9,900	-2,887	7,060	7,060	9,270	1,311	10,581	-3,521
귀주성	3,423	3,423	1,630	540	2,170	1,253	3,120	3,120	1,760	560	2,320	800
운남성	7,000	7,050	2,880	630	3,510	3,540	6,630	6,710	3,120	650	3,770	2,940
서 장	26	26	10	10	20	6	30	30	10	10	20	10
섬서성	5,669	5,669	1,730	2,343	4,073	1,596	5,920	5,920	1,900	2,397	4,297	1,623
감숙성	5,041	5,041	1,040	920	1,960	3,081	5,500	5,500	1,150	942	2,092	3,408
청해성	170	170	80	40	120	50	194	194	80	40	120	74
영 하	1,912	1,912	310	697	1,007	905	2,200	2,200	320	717	1,037	1,163
신 강	5,921	5,921	840	615	1,455	4,466	6,740	6,740	880	675	1,555	5,185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식용,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국내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飼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65期(2013.10.12)

▶ 대두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3/14 (USDA)
재배면적		8,516	7,889	7,172	7,000	6,600
- 흑룡강성		3,548	3,202	2,664	2,550	
단 수		1,771	1,836	1,82	1,786	1,894
- 흑룡강성		1,649	1,691	1,74	1,686	-
생산량		15,083	14,485	13,050	12,500	12,500
수입량		52,340	59,231	59,830	66,000	69,000
총공급량(A)		67,423	73,716	72,880	78,500	81,500
국 내 소 비	종자용소비	650	600	500	500	
	식용·가공용소비	9,500	9,800	10,000	10,500	11,280
	착유용소비	55,000	60,000	63,000	67,000	67,650
	- 중국산 대두	5,000	4,000	4,000	3,000	-
	- 수입 대두	50,000	56,000	59,000	64,000	-
합 계		65,150	70,400	73,500	78,000	78,930
수출량		190	275	250	200	300
총소비량(B)		65,340	70,675	73,750	78,200	79,230
잔여량(A-B)		2,083	3,041	-870	300	2,270
중국산 대두 평균가격		3,839	4,163	4,200-4,800	4,500-5,000	
수입 대두 평균가격		4,220	4,636	4,000-5,200	3,500-4,00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2/2013, 2013/14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3년 10월에 예측한 수치이며, 2013/14년 (USDA)는 미국 농무부가 2013년 9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중국산 대두 평균가격은 흑룡강성의 중간등급 대두 평균가격, 수입 대두 평균가격은 광둥성 대두 가공기업의 수입 대두 평균 공장입고가격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油脂油料市場供需狀況月報」第163期(2013.10.14)

양념채소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1.1. 산지동향

◆ 내몽고, 길림성: 10월 건고추 건조 시작

- 2013년산 내몽고, 길림성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 가격이 낮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대체작목은 옥수수, 녹두 등임.
- 내몽고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0%, 금탑 품종은 40~50% 감소함
- 길림성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0%, 금탑 품종은 50% 감소함.
- 내몽고, 길림성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기상이 양호하여 단수가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산동성 : 10월 중순 건고추 건조 시작

- 2013년산 산동성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 가격이 낮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덕주의 고추 재배면적은 10~20% 감소하였고, 하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금탑 품종의 재배면적은 증가함.
- 하택, 덕주는 기상피해로 병해충이 증가하여 단수는 전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신강: 2013년산 건고추 출하시작

- 2013년산 신강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 가격이 낮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금탑 품종의 재배면적은 감소되었고, 미국홍 등 기타 품종은 전년과 비슷함.

1.2. 수출동향

- 수출업체의 주요 관심사는 냉동고추 생산 및 장류용 원료 구매로 집중되어 건고추 수출은 저조함.
- 또한, 해외 수요자의 건고추 수입 품위규격 강화는 중국 수입업체의 원가 및 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이 감소하였음.

표 1 건고추 수출실적

단위: 톤

구 분	누적		당월	
	'12(1-8월)	'13(1-8월)	'12. 8월	'13. 8월
합 계	35,006	30,249	2,725	2,826
Mexico	1,488	1,441	51	20
U.S.A	4,242	3,474	368	228
Malaysia	6,761	6,464	975	566
Korea.R	9,244	2,237	74	132

자료: aT 청도 사무소, '국영무역품목 월별 정기동향 보고'.

1.3. 가격동향

- 현재 길림성, 내몽고 지역은 2013년산 건고추가 건조단계에 있으며 냉동고추가 소량으로 거래되고 있음. 신강지역에서 2013년산 건고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함.
- 고추 산지수집상의 2012년산 건고추 재고량은 소량이며, 대부분 산동성 수출업체에서 건고추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

- 산지수집상 및 수출업체 저온창고 보관 및 금융(은행이자 등) 비용 회수를 위해 견고 추 거래가격이 10월 중순에 소폭 상승하였음.

표 2 청도 지역 꼭지제거 전 거래가격

단위: 위안/톤

구 분	내 몽 고	길 림		신 강	
	익도홍	익도홍	금탑	금탑	익도홍
'13. 9. 5	8,000-8,500	-	-	8,200-8,500	8,800-9,300
'13. 9.13	8,000-8,500	-	9,500-9,800	8,200-8,500	8,800-9,300
'13. 10. 8	8,000-8,500	-	9,500-9,800	8,200-8,500	8,800-9,300
'13. 10.18	8,500-9,000	-	10,000-11,000	8,500-9,000	9,000-9,500

자료: aT 청도 사무소, '국영무역품목 월별 정기동향 보고'.

2 마늘시장 동향

2.1. 산지 동향

- 2013년산 중국 마늘 저장량 전년보다 5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금향현 금년 산 마늘 입고가격은 kg당 2.2~2.4위안 수준으로 전년보다 크게 하락함.
- 마늘 저장업체에서 금년산 농가 보유 물량을 대부분을 저장하여 농가 보유량은 거의 없음. 산동성 지역은 2014년산 마늘 파종(파종기: 9월 말~10월 초)을 앞두고 종구 판매, 선별, 건조 작업 중임. 산동성의 종구용 마늘은 kg당 4위안 가량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됨.
- 금년 신선마늘 가격 하락하고 절임마늘, 마늘절편 등 마늘 가공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2. 수출 동향

- 9월까지 마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17% 많은 93만 톤이고, 2013년산 햇마늘 생산 이후 2~3/4분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금년 상반기 제형시 마늘 수출건수는 7,827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

표 3 중국 마늘 월별 수출실적

월별	2012 (톤)	2013 (톤)	전년 대비 (%)
합계	1,054,997	1,232,425	16.8
1분기	350,267	299,789	-14.4
2분기	309,948	387,411	25.0
3분기	394,782	545,226	38.1

자료: aT 청도 사무소, '국영무역품목 월별 정기동향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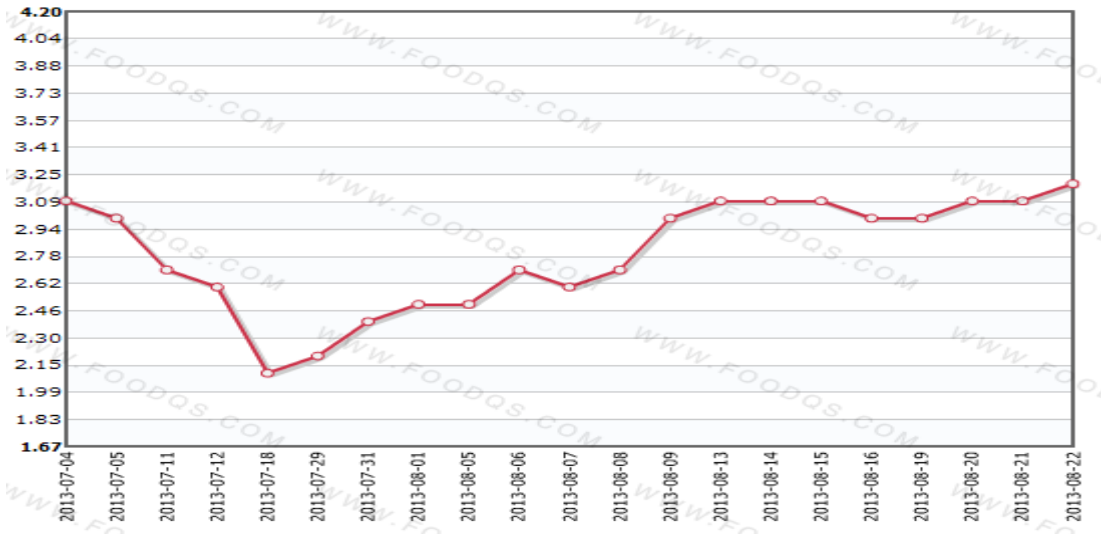
- 9월까지 중국의 마늘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30%), 베트남(11%), 브라질(9%), 말레이시아(6%) 등지임.

2.3. 가격 동향

- 2013. 2월부터 하락하던 마늘 가격이 마늘 저장 본격화, 수출 및 가공수요 증가 등으로 7월 중순 최저 수준(약 2.1위안/kg)에서 상승세로 전환됨.
- 8월 중순 kg당 약 3위안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9월 중순 기준, 전국의 70% 지역에서 마늘 가격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남성, 감숙성, 하북성 등지의 상승폭이 큼. 마늘 가격 상승세이나 전년 동기보다는 낮은 편임.

그림 1 중국 마늘 가격 동향

단위: 위안/kg



자료: 베이징팔리교(八里橋)농산물도매시장

3 양파시장 동향

3.1. 산지 동향

- 2013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 － 2013년산 산동성 중만생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전체 생산량은 약 20% 증가함.
 - －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전년보다 크게 하락함. 이후 약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 최근 수확 및 출하되는 중국 감숙성, 내몽고 등의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4 중국 양파 월별 산지 거래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연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13	2,500	3,000	3,200	1,500	650	850	1,000	1,050
2012	350	300	400	800	1,200	2,000	2,400	2,000

3.2. 수출 동향

- 2013년 7~8월 중국 신선양파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42% 많은 12만 4천 톤으로 집계됨.
 - － '13년 7월과 8월 수출량은 각각 7만 1천 톤, 5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34%, 54% 증가함.
- 2013년 7~8월 수출단가는 전년보다 21% 낮은 톤당 \$370 수준임.
 - － 중국 양파 수출량은 금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고 수출 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표 5 중국 신선양파 수출 실적

단위: 톤, 불/톤, 천불, %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률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7월	70,928	463	32,818	94,993	348	33,074	33.9	-24.8	0.8
8월	53,325	481	25,671	81,886	401	32,965	53.6	-16.7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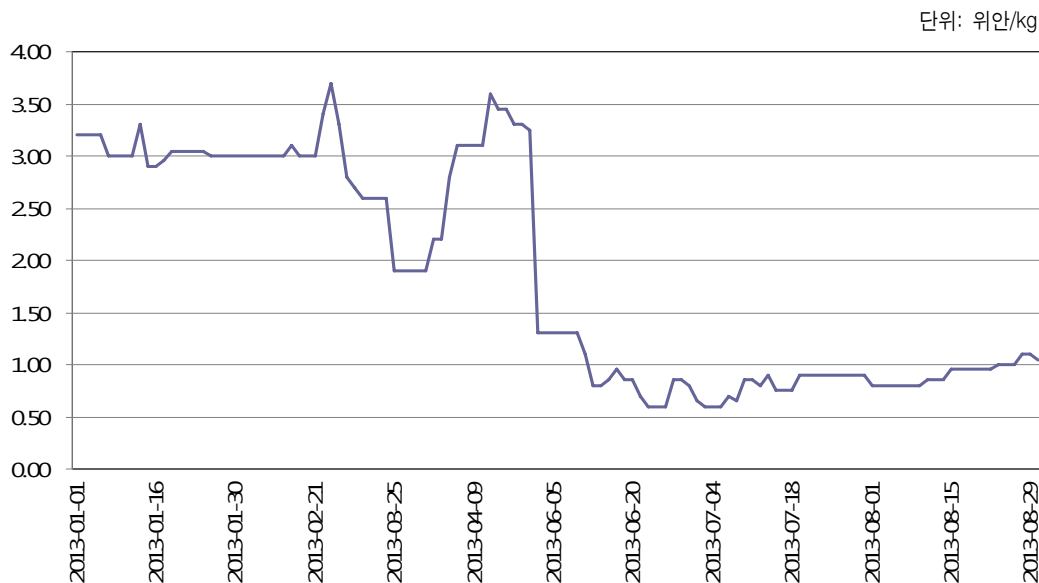
자료: KITA,

3.3. 가격 동향

- 2012년산 재고량 부족과 2013년 조생 양파 생산량 감소로 중국 도매시장 가격 전년 동기보다 크게 높았으나 6월 이후 중만생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

- 산동성 중만생종 출하량 증가로 향후 중국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가 지속되고 전월 대비 약상승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중국 양파 도매가격동향(2013.1.1~8.30)



자료: 북경 신발지(新發地)농산물도매시장.

4 대파시장 동향

4.1. 산지 동향

- 2013년 7~9월 출하되는 산동성의 재배면적이 3% 증가하고 여름철 고온 및 가뭄이 심했던 전년보다 1% 증가하여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재배면적은 장추시가 전년보다 3% 증가, 찐즈진시가 3% 증가, 효쇼진시가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단수는 여름철 고온 및 가뭄, 태풍피해가 있었으나, 전년보다는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전년도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여름철 고온 및 가뭄 태풍피해 등이 있었으나 전년보다는 작황이 호전되어 3/4분기의 산지 평균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kg당 0.60달러(3.7위안)임.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였으나, 수요증가로 가격은 소폭 상승함.
- (7월) 0.52달러(3.2위안) → (8월) 0.57(3.5) → (9월) 0.71(4.4)으로 상승하였음.

4.2. 수출 동향

- 3/4분기 중국의 대한민국 대파 수출량은 건조대파가 359톤, 신선대파가 387톤, 냉동대파가 8,712톤으로 이를 신선대파로 환산한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3% 많은 14,228톤으로 조사됨.
- 건조대파 수출량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한 359톤이었음.
- 신선대파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387톤이었음.
- 냉동대파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8,712톤이었음.
- 한국산 신선대파의 가격하락으로 신선대파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공 및 식당의 수요가 많은 건조대파와 냉동대파의 수출은 증가하였음.

4.3. 가격 동향

- 중국 신선대파의 3/4분기 평균 국내 수입원가는 kg당 1,000원 내외로 전년 동기보다 29% 낮은 것으로 추정됨. 전년보다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소폭 상승함.



정책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

목 록

- 제1장 총칙
-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및 교류
- 제3장 식품안전 표준
- 제4장 식품 생산 경영
- 제5장 식품 검사
- 제6장 식품 수출입
-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 제8장 관리감독
- 제9장 법률책임
- 제10장 부칙

제1장 총칙

-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아래 각 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 (1)식품 생산·가공(이하 식품생산이라 칭함), 식품 유통 및 요식서비스(이하 식품경영이라 칭함)
 - (2)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 (3)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이하 식품관련제품이라 칭함)의 생산·경영
 - (4)식품 생산·경영자의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 사용
 - (5)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 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칭함)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본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식품안전감독관리 작업은 방지를 위주로 하고 위험관리와 전체과정에 대한 제어, 사회공동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 제4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제1책임인으로서 반드시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성실하게 자체 관리해야 하며,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5조 국무원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직책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본 법과 국무원에서 결정한 관련 규정 정책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직무를 맡아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 평가,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한다, 국무원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에서 결정한 관련 규정 정책에 근거하여 식품관련제품의 생산과 식품의 수출입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안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에서 결정한 관련 규정 정책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범죄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고 조직해야 한다. 국무원의 기타 식품안전 작업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는 본 법과 국무원에서 결정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되는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 제6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협조·책임지며, 건전한 식품안전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체계를 수립한다. 식품안전업무를 해당지역의 국민경제화 사회발전규획에 포함 시킨다.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의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를 위해 보장을 한다. 식품안전 돌발사건 처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지휘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책임제를 도입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부문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현의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검험검역, 농업행정, 위생행정부문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직무와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기관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상부 인민정부 소속기관이 하부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조직 및 협조 하에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향진 혹은 구역에 식품약품감독관리의 파출기구를 설립한다. 향진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 (동사무소) 에서 구역의 식품안전업무를 책임져야 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찾아내며 정보를 보고하고 집법자를 도와 홍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 현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과 기타 식품안전작업 관련 부문은 교류를 강화하고 긴밀하

게 협력하며,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진다.

제8조 식품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업계의 신용도를 높이고, 식품안전 지식을 홍보, 보급한다.

제9조 국가는 식품안전지식을 국민소질 교육에 포함시키며 식품안전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기준과 지식을 보급하고 식품안전 관련 공익성 홍보를 전개한다.

국가는 사회단체나 지역자치조직이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보급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건강한 식사 방법을 선도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아보호 능력을 강화시킨다.

뉴스매체는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공익성 선전을 전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식품안전문제를 보도하며 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여론 감독을 실시한다.

제10조 국가는 식품안전 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관리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1조 임의의 단체 또는 개인은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서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관리 부문에 식품안전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평가 및 교류

제12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제도를 수립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소들을 모니터링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함께 국가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문과 함께 국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방안을 제정, 실시한다.

제13조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도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관련부문과 함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한 후 필요하다고 즉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중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요소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 평가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의학, 농업, 식량,

식품, 영양 등 방면의 전문가로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농약, 비료,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고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정보와 과학적인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제15조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혹은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과 함께 사실조사, 검험을 진행한다.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식품안전 위험 평가에 관해 건의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국무원 관련 부문에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는 식품안전 표준의 제정 및 수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의 과학적 근거이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경우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생산경영자에게 생산·경영을 중지시키며 소비자에게도 섭취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가표준을 제정,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제정, 수정해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와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로부터 비교적 높은 정도의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식품안전 위험 경고를 제기해야 하고 공표를 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함께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와 식품안전 관리감독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 교류제도를 건립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식품안전위험 평가기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즉시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교류를 조직하여 전개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20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국민의 신체건강 보장을 취지로 해야 하고 과학적, 합리적이며 공개

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안전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표준이다. 식품안전표준외에 식품안전에 관한 기타 강제성 표준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식품안전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1)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중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생물학적 독소, 오염물질, 방사성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의 허용치 규정;
- (2)식품첨가제의 품목, 사용범위, 사용량;
- (3)영·유아용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건;
- (4)식품안전, 영양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에 대한 요건;
- (5)식품안전 관련 품질 요건;
- (6)식품검사방법과 규정;
- (7)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기타 내용.

제23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공표를 책임지며 국무원 표준화행정부문은 국가표준 일련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의 한계치 규정 및 그 검사방법과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한다.

도축용 가축의 검역검사 규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관련 제품의 국가표준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내용에 관련이 될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4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식품 관련 업계표준 중 강제 시행한 표준을 통합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총괄 공표해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공표하기 전, 식품생산·경영자는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식품 관련 업계표준에 의거하여 식품을 생산·경영해야 한다.

제25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량, 식품, 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계부문,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의 대표로 구성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과 국제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참조하고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널리 참고해야 한다.

제26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본 법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하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마땅히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이 없는 경우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생산의 근거로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기업표준은 성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적용한다. 성급 위생행정부문은 마땅히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28조 식품안전표준은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식품 생산 경영

제29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표준과 식품생산경영관리규범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 (1)생산·경영하는 식품품목과 수량에 적절한 식품원료처리 및 식품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생산·경영하는 식품품목과 수량에 적절한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응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부패방지, 방진, 방충, 방서, 세척 및 수처리, 쓰레기와 폐기물의 보관설비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3)식품안전 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마련.
- (4)설비 배치와 생산 공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과 직접 먹는 식품, 원재료와 완제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 물질과 불결한 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식기 및 직접 먹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 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하고 취사도구, 용구는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6)식품의 저장, 운송, 하역에 필요한 용기, 도구와 설비는 안전, 무해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식품안전 보장에 필요한 온도 등 특수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을 유독, 유해물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 (7)직접 먹는 식품은 소포장 또는 무독하고 청결한 포장재,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 (8)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식품을 생산·경영 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이 없는 직접 먹는 식품을 판매할 때는 무독하고 청결한 판매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용수(用水)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1)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

제30조 식품의 생산·경영 중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1)비 식품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회수식품이나 유효기간 초과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는 것.

(2)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는 것.

(3)국가가 공표한 식품중에 불법으로 첨가가능한 비 식용물질을 구매하거나 저장하는 것.

(4)범위와 한계를 넘게 식품첨가제를 사용하는 행위.

(5)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잔류물, 중금속, 생물학적 독소, 오염물질, 방사성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의 함량이 식품안전표준 한계량을 넘게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행위.

(6)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7)부패되어 변질된 것, 유지(油脂)가 쉬고 부패한 것, 곰팡이·벌레가 생긴 것, 불결한 것, 이 물질이 섞여있거나 또는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8)병사(病死), 독사(毒死)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 육류 및 그 제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9)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부적합의 육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부적합인 육류제품 생산·경영하는 행위.

(10)포장재, 용기, 운송도구, 식사 그릇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11)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경영하는 행위.

(12)라벨이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이나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날개 포장식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13)질병의 예방 등 특수목적을 위해 국가가 생산·경영 금지를 규정한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14)폐기, 회수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식품관련제품을 생산·가공하는 행위

(15)허가서, 라벨, 표시, 설명서, 검험보고, 검역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6)기타 법률과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제31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 서비스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소규모 작업장과 소규모 식품점, 소규모 외식업체, 식품노점상 등이

-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법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 조건에 적절한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 경영하는 식품이 위생적이고, 무독, 무해함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 제32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작업장, 소규모 식품점, 소규모 외식업체, 식품노점상 등이 생산조건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식품노점상이 집중거래시장, 점포 등 고정 장소에서 경영하도록 지원한다.
- 제33조 현금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본 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의 생산·경영 장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규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허가를 비준하며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비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제34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관할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하고 자체 생산 경영·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잘 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 제35조 국가는 식품안전관리 인원 직업의 자격제도를 수립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 식품생산경영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직 혹은 겸직 식품안전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훈련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식품업 종사인원은 훈련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뒤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원훈련에 대한 시험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 제36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위해분석중점제어점체계 등 선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실시함을 격려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위해분석중점제어점체계 등 선진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인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철회하고 즉시 관련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인증기구가 추적조사 실시 시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 제37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직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인원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 취득 후 근무가 가능하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기 전염병, 활동성폐결핵, 화농성 또는 출혈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지장이 되는 질환에 걸린 자는 직접 먹는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 식용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농약, 비료, 성장 조절제,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물을 사용함으로써 식용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용농산물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식용농산물의 생산기록제도를 수립

해야 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검합합격증명과 산지증명 등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농업투입물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건전한 농업투입물의 안전사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제39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추적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정보화 수단을 통하여 식품의 추적가능성을 실현함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 제40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구입일자,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검사해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41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출하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하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현황을 검사해야 하며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일련번호, 검사합격증번호, 구입자 이름 및 연락처, 판매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출하 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42조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자체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합격 후 출하 또는 판매가 가능하다.
- 제43조 식품경영기업은 식품구입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식품 구입 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류, 제품의 표시, 보관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구입일자,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구입 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배송의 운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류를 총괄 검사하며 식품구입검사기록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식품 구입 검사기록은 분점에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보증의 요건에 의거하여 식품을 저장, 운송, 배달해야 하고 재고 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 제45조 식품경영자가 날개 포장식품 저장시에는 저장장소 혹은 식품을 담은 용기 및 외부 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명칭 및 연락처 등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날개 포장식품을 판매할 경우 날개 포장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식품의 명칭, 성분 혹은 배합 원료표,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경영자 명칭 및 연락처 등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46조 사전포장식품(prepackage foods)의 포장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아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1)명칭, 규격, 순수함량, 생산일자, 산지
- (2)성분 또는 원료 배합표
- (3)생산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4)유통기한
- (5)제품표준코드
- (6)보관 조건
- (7)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 (8)생산허가증번호
- (9)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필히 표기해야 할 기타 사항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의 라벨에는 주요영양성분 및 그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제47조 국가는 식품첨가제의 생산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은 법에 근거하여 식품첨가제생산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은 본 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 외에도 식품생산경영과 관련된 관련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제48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 생산 활동에 종사할 것을 신청하는 업체나 개인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비준 및 공표하며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준불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49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상 필요하고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확실성이 증명되면 허가받은 사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기술필요성과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기에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 표준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제50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51조 식품첨가제는 라벨, 설명서와 포장에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에는 본 법 제46조 (1)~(6), (8), (9)항에서 규정한 내용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하며

라벨에 문자로 “식품첨가제”라 표기해야 한다.

제52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생산자는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뚜렷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해당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출시 및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국가는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에 대해 안전평가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식품관련제품 및 그 생산과정의 안전감정설명에 대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은 안전감정설명 서류에 대해 평가심사를 한다. 식품관련제품의 안전평가심사규범은 국무원 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에서 제정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는 식품라벨에 표시된 경고표시, 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의 요건에 의거하여 포장 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55조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인 동시에 한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 중에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인 동시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시 반드시 엄격하게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제정 및 공표한 목록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56조 국가는 보건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신품종, 신원료를 사용한 것, 처음으로 수입된 보건식품에 대해 등록(注册)관리를 실행한다. 기타 특정 보건기능을 주장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등록(备案)관리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보건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위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라벨, 설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되고 적절한 대상, 부적절한 대상, 효능성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하며 “본 제품은 질병예방, 치료기능이 없음” 이라는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자는 주장하는 제품의 기능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57조 국가는 영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생산기업은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생산할 시 생산원료, 제품의 조제 배합비 및 라벨 등을 식품안전감독관리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위탁, 재위탁, 각봉(分装)의 방법으로 영유아 조제식품을 생산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은 시장진입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해야 하고 시장진입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시장

진입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 조건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이 위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인터넷에서 식품교역을 위한 제3자 교역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인터넷 식품교역을 위한 제3자 교역장소의 제공자는 본 교역장에 진입하는 식품경영자에 대해 허가증을 검사하거나 혹은 식품경영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식품교역을 위한 제3자 교역장소의 제공자는 본 교역장에 진입한 식품경영자가 본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 즉시 제지시켜야 하며 즉시 인터넷 식품교역 제3자 교역장소 제공자에게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발부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식품교역을 위한 제3자 교역장소의 제공자가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공동책임을 져야 하며 우선으로 배상해야 한다.

인터넷 식품교역을 위한 제3자 교역장소의 제공자에게 식품생산경영 허가증을 발부한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인터넷 식품교역을 위한 제3자 교역장소의 제공자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60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을 위한 자체검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본 회사의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기록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중대한 식품안전 위험이 있을 시 즉시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현급 이상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61조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자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생산을 멈추고 이미 출시 판매된 식품을 리콜하고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리콜 및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체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영을 정지해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경영정지 및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리콜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리콜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일상감독검사중 식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그들이 생산·경영한 식품을 리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을 리콜한 상황과 생산·경영을 정지한 상황을 현급 이상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리콜하지 않았거나 경영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62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리콜 또는 유통기한이 남은 식품 등 시장에서 퇴출한 식품에 대해 무해화처리,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금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불합격 식품의 무해화처리시설을 건설함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63조 식품광고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자체 생산한 식품의 광고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맡은 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보게 하였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65조 국가는 식품안전책임 강제보험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식품안전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안전책임강제보험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제6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 규모화생산, 체인경영·배송을 권장한다.

제5장 식품검사

제67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 관련 인증인가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인증을 취득 후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조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본 법 실시 전 국무원의 관련주요부문의 비준으로 설립 또는 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식품검사기구는 본 법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8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사원이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원은 관련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키며 발급한 검사데이터, 결론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가짜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사보고서에는 식품검사기구의 공인을 날인해야 하고 검사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은 발급한 검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진다.
- 제70조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식품에 대해 검사면제를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현금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험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표본검사시 추출한 샘플을 구입해야 하며 검사비와 기타 임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현금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식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검사결과 관련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즉시 생산, 경영을 정지해야 한다.
- 제71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결론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후 5일 안에 식품추출검사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혹은 상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재검사 후 합격으로 결론이 나면 비용은 추출검사한 부문에서 부담하고 재검사 후 불합격으로 결론이 나면 비용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7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자체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품협회 등 조직,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6장 식품수출입

- 제73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 후 세관이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서명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수입한 식품은 검험합격 증명서류를 부착해야 한다.
- 제74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시,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수입상 자체가 집행한 관련국가의 식품안전표준 혹은 국제표준, 식품검험결과, 생산국의 합법생산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 심사를 조직하고 심사동의를 거친 것에 대해 적용기준을 지정한다.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제 식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식품종에 대해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안전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본 법의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75조 수입상은 외국의 수출상, 외국의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수입된 식품이 본 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 표준의 요구에 부합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명기한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76조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와 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각 부문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7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을 하는 수입상은 국가출입경 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등록한 수출상, 대리상과 수입상 및 국외 식품생산기업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에 대해 현장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78조 수입사전포장식품은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및 설명서는 본 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 명칭,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성분 혹은 조합표, 유통기한, 저장조건, 적용기준, 원산지 및 생산기업과 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및 설명서가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 수입상은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80조 수입한 식품이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정지 시켜야하고 이미 판매한 식품을 리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리콜 및 처리상황을 국가출입국검험검역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81조 수출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

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 국외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과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및 양식장은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82조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총괄하고 제때에 관련 부문, 기구와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 불량기록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83조 국가 출입국검험검역부문은 중국 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와 심사의 결과에 따라 대응되는 검험검역의 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조치

제84조 국가는 식품안전사고응조치제도를 설립한다. 분류관리, 분급책임, 중횡을 결합하고(条块结合), 소속지 위주(属地为主)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응급관리체계와 운행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제85조 국무원은 국가식품안전사고 응급방지책을 조직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방지책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방지책을 제정하고 한 급 높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응급 능력 양성을 강화해야 하고 응급처리 조직(队伍)을 수립하고 설비와 시설을 갖추며 식품안전사고 응급조치 훈련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본 기업의 제반 안전방지조치의 실행상황을 검사하며 제때에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사고 응급 훈련을 진행함을 격려한다.

제86조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체는 즉시 조치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발생업체와 피해자의 치료를 맡은 업체는 즉시 사고발생지의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행정, 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은 일상적인 관리감독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했거나 또는 식품안전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즉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를 받은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규정에 의거하여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규정에 의거하여 위에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이든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숨기거나 허위보고, 지연보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인멸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사고 보고 접수 후 즉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조사처리하고 아래 조치를 취하여 사회에 대한 위해요소를 방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 (1)응급구조사업을 전개하고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에게 대해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응급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 (2)식품안전사고 초래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해당 원료를 봉인하여 저장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된 식품 및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본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콜, 경영정지 및 폐기할 것을 명한다.
- (3)오염된 식품용 도구와 설비를 봉인하여 저장하고 소독 세척하도록 명한다.
- (4)정보 공개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해당 처리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해석 및 설명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금이상 인민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식품안전사고 처리지휘기구를 설립하고 응급방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앞 조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88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시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부문과 함께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직책이행을 독촉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사고책임조사 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관련될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앞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한다.

제89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금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위생행정부문과 관련 부문을 협조하여 사고현장에 대해 위생처리를 해야 하며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원인에 대해 유행병학 조사를 전개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즉시 위생행정,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유행병학적 조사보고를 보고해야 한다.

제90조 식품안전사고 조사 시, 사고업체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과 인증직책을 담당한 관리감독부문, 인증기구 업무인원의 직무상 과실, 독직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제8장 관리감독

- 제91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의 분류분급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 안전위험 정도에 따라 감독 관리의 중점, 방식과 빈도(频次)를 확정한다.
- 제92조 국무원은 관련부문에 수권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 능력건설표준을 제정하게 하고 각급 인민 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요구를 명확히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검험, 정보 등 자원을 통합하여 자원공유를 실현한다.
- 제93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검사, 추출검사, 위험 모니터링, 홍보교육, 능력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동급정부의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 제9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을 조직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도관리감독계획을 제정하도록 조직하며 연도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한다.
- 제95조 현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직책을 이행하고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1)생산·경영 장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2)생산·경영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3)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 복사한다.
(4)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식품, 혹은 안전 위험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식품, 불법으로 사용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및 위법생산 경영에 사용된 또는 오염된 도구, 설비를 차압, 압류 및 생산 경영 정지령을 내린다.
(5)불법종사의 식품생산·경영활동 장소를 차압한다.
- 제96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거나 또는 안전위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관련부문과 함께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임시한계량을 설정한다.
- 제97조 현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감독검사하며 감독검사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감독검사기록은 감독검사원과 식품생산·경영자가 서명 후 분류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98조 현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기록부를 수립하여 허가발급, 일상 감독검사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안전신용기록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기록의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 횟수를 늘인다.
- 제99조 식품생산·경영 과정 중에 안전위험이 있는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그 법인 혹은 주요책임자에 대해 책임 예약 상담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가 식품안전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역성 중대 식품안전 위험을 즉시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그 주요책임자에 대해 책임 예약 상담할 수 있다.

제10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엄중한 위해를 형성하거나 또는 중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해 상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그에 대해 돌발성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1조 국가는 식품안전 유상고발제도를 건립한다. 현금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에 대해 고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검사결과 사실일 경우 고발한 자에게 포상을 준다.

현금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조회, 신고와 고발 접수 후 본 부문 직책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수리해야 하고 즉시 답변, 확인, 처리해야 한다. 본 부문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처리권이 있는 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처리권이 있는 부문은 즉시 처리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사고에 속할 경우 제7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현금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 전문적으로 포상자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2조 현금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2차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103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 총괄 공표제도를 수립한다. 아래 정보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이 총괄 공표 한다.

(1)국가 식품안전 총 현황

(2)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와 식품안전 위험경고정보

(3)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해당 처리 정보

(4)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에서 확정한 총괄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3)에 규정된 정보의 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될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공표할 수도 있다. 현금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일상 관리감독 정보를 공표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정보 공표 시에 정확성, 적시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총괄적인 식품안전정보 플랫폼을 수립하고 법에 의해 식품안전정보를 공표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수권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이 공표한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현금 이상 지방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본 법에서 규정된 총괄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문은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05조 국가는 식품안전통계제도를 건립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련부문과 함께 식품안전통계 지표체계를 건립하며 식품안전통계 작업을 전개한다. 식품안전통계 데이터는 진실해야 하고 완전해야 한다.

제106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 혹은 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발표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사전에 식품생산·경영기업, 관련협회, 연구기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의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해서는 아니 되며 날조하거나 허위식품안전정보를 산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公安부문과 식품안전 행정집법 및 행사사법업무의 연결 체제를 수립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범죄와 관련됨을 발견하면 즉시 公安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 이송한 사건에 대해 公安기관은 반드시 즉시 사실 확인을 시작해야 하며 公安기관에서 입건표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입건 조사해야 한다.

公安기관은 식품안전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이송해야 하며 관련부문에서는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公安기관이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검험, 감정, 인정 등 협조를 청구할 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제108조 성급이상의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작업 중에 현저한 성과를 얻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금을 준다.

제9장 법률책임

제10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 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 식품첨가제와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치금액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과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말소한다. 또한 공간기관은 직접 책임인을 행정구류에 처하며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 (1)비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회수식품, 유통기한 초과한 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는 것.
- (2)식품에 식품첨가제이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는 것.
- (3)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 식품을 생산 경영.
- (4)위탁, 라벨부착, 각봉(分装)의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것.
- (5)병사(病死), 독사(毒死)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의 육류 및 그 제품을 생산·경영하는 것.
- (6)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역부적합의 육류 경영 또는 그 제품을 생산 경영.
- (7)가짜를 섞거나 잡 물질을 섞은 식품을 생산 경영.
- (8)식품의 생산·경영 중에 약품을 첨가하는 것.
- (9)생산된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 혹은 광고내용에 질병의 예방, 치료기능이 언급된 것.
- (10)국가가 질병 예방 등 특수목적에 위해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을 생산 경영.
- (11)폐기되거나 회수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식품관련제품을 생산·가공하는 것.
- (12)위조되거나 변조된 허가증, 라벨, 표시, 설명서, 검험보고, 검역증명 및 기타 신용과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

제112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경고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며 허가증을 말소한다. 범죄를 형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포장재, 용기, 운반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경영
- (2)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하거나 규정에 따라 비포장식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

- (3)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사용.
- (4)생산·경영과정에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를 넘거나 한계량을 초과 사용한 것.
- (5)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리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 (6)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물이 국가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것.
- (7)기타 식품안전표준 혹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생산·경영한 것.

제11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즉시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허가증을 말소한다.

- (1)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지 않았고 분할 담당자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 (2)종사자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을 거쳤으나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
- (3)식품생산·경영자가 건강합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생산경영활동을 하게끔 배치한 경우; 혹은 본법에 열거된 질병에 걸린 인원을 직접 먹는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배치한 경우
- (4)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 (5)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이 생산원료, 제품의 조제비율, 라벨 등을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6)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검험과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 (7)식품안전기업표준을 제정하고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8)규정한 요건에 따르지 않고 식품을 저장, 판매하거나 재고식품을 처리한 경우
- (9)식기, 음료수 용기 및 직접 먹는 식품을 담는 용기를 사용전에 깨끗이 세척, 소독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척, 소독 불합격인 경우.
- (10)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황에 대해 자체검사 및 기록을 전개하지 않은 경우.
- (11)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2)기타 식품생산경영관리 규범을 어기는 행위.

제114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고업체가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처리 및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관련 중

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훼손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허가증을 말소하며, 범죄를 형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본법의 제 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준다.

- (1)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검험합격증명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2)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심사를 거쳐 적용표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을 처음 수입 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3)수출상이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 경우.
- (4)관련 주관 부문에서 수입상에게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리콜을 명하였지만 수입상이 거부하고 리콜하지 않은 경우.
- (5)포장된 식품을 수입하였는데 중문 라벨이 없거나,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혹은 라벨, 설명서가 본 법 및 기타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6)수입상이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제도 및 수입식품의 외국 수출상 혹은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 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1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 및 인터넷식품교역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식품경영자를 시장에 진입시키거나 혹은 인터넷 교역 플랫폼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실명등록, 검사,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 초래 시 영업정지를 명하고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1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고 식품, 식품첨가제를 운송, 배달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즉시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고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18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및 그 업무집행인원이 감독검사, 추출검험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 각자의 분공에 따라 책임지고 영업정지를 명하며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말소한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자는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결법"에 의해 처벌을 하며 범죄를 형성한 자에 대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9조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소당한 업체, 그 주요책임자와 식품안전관리인원은 처벌 결정이 내

려진 날부터 향후 5년간 식품 생산·경영관리업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범죄로 인해 유기형 이상 형벌을 받은 경우 종신(終身)동안 식품생산경영관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허가 증명을 취소한다.

제120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기관과 기술자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의 모니터링, 평가보고를 제출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해당 기술기관의 직접책임을 맡고 있는 주요관리 인원과 기술인원에 대해 면직 처분과 해고처분을 준다.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1조 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원이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 발행한 경우 관련 부문에서 취득한 검험비용을 몰수하고 검험비용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문 또는 기구에서 본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법에 의거하여 검사기구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원에 대해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형사책임이나 해고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구 인원은 형벌집행기간 완료 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10년간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검사기구에서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에서 동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식품검험기구에서 허위검험보고를 제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조 인증기구에서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인증결론을 제출하였을 경우 인증인가감독관리부문에서 취득한 비용을 몰수하고 인증비용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업정지를 명하고 인증기구 비준서류 등을 철수하는 처분을 내리며 공표한다. 직접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직접책임이 있는 인증인원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업자격을 철수한다.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증기구에서 제출한 허위인증결론으로 인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에 대해 허위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담당한 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할 경우, 주관부문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과실

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또는 면직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해고 처분을 내린다.

제12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관련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산포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공간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처벌한다.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식품안전관련 허위 정보를 날조, 산포하거나 혹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여 식품생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5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과정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심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지방 인민정부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작업평가, 심사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 (2)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능력건설 표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작업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3)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연도감독관리 계획을 제정, 실시하지 않은 경우;
- (4)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
- (5)법에 따라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행정구역에서 중대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엄중한 사회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본 지방인민정부의 주요책임자에 대해 법적 문책을 한다.

제12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혹은 기타 관련 행정부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본법의 규정에 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직접책임을 맡고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과 해고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규정된 조건에 따라 허가를 주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형성한 경우;
- (2)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를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형성한 경우;
- (3)규정에 따라 중대 식품 안전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4)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조사처리하지 않았거나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과정에 뇌물을 받은 경우;

(5)중대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보고를 감추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 내용을 빠트린 경우;

(6)식품안전위법범죄에 참여하거나, 감싸거나 혹은 방임하였을 경우;

(7)법에 따라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어기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할 경우 관련부문의 주요책임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을 한다.

제12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체,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알면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요구 외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제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혹은 손해금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상금액이 1천 위안 미만일 경우 1천 위안을 배상한다.

제128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민사배상책임과 과료, 벌금 부과책임을 져야 하며 그 재산이 동시 지불하기에 부족할 경우 우선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129조 본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 사람에게 제공되는 식용 또는 음용의 완제품과 원료 및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이면서 약품인 물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물품은 불포함.

식품안전: 식품이 무독, 무해하고 정해진 영양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위해를 초래하지 않음을 말한다.

보건식품: 특정 보건기능이 있음을 주장하며 특정인에게 식용 적합한 사용량이 규정된 식품을 말한다, 사전포장식품: prepackage foods, 미리 정량으로 포장되었거나 포장재와 용기 내에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부패방지와 신선도 보장 및 가공공법의 수요로 식품에 첨가한 인공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식품포장재와 용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담거나 포장하는 종이, 대, 나무, 금속, 범랑,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 제품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에 직접 접촉되는 도료를 말한다.

식품용 도구, 설비: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생산, 유통, 사용 과정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와 직접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 컨베이어 벨트, 용기, 도구, 식기 등을 말한다.

식품용 세척제, 소독제: 식품, 식기 및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또는 식품포장재와 용기를 직접 세척하거나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 유해요소의 모니터링 데이터 및 관련정보를 수집하며 또한 종합적인 분석과 즉시 통보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중 생물성, 화학성 및 물리성 위해가 인체건강에 가져올 불량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말한다. 위해식별, 위해특징 묘사, 폭로평가, 위험특징묘사 등이 포함된다.

식품안전위험교류: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문, 식품안전위험평가기구에서 과학적, 객관적, 즉시적,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식품협회, 기술기구, 신문매체 및 소비자협회를 조직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 정보 및 식품안전감독관리 정보에 대해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외식업서비스: 즉시적으로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서비스성 노동을 하는 것 등을 말하며 소비자에게 식품, 소비 장소 및 시설의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기한: 포장식품의 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을 말한다.

식중독: 유독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 또는 유독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 후 나타난 급성, 아급성 질병을 말한다.

식원성 질병: 식품 중 발병 요인이 인체에 들어와 초래하는 감염성, 중독성 등 질병을 말한다.

식품안전사고: 식중독,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등 식품에서 오는 인체건강에 해가 되거나 가능하게 해가 되는 사고를 말한다.

제13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관련 허가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허가증은 유효하다.

제131조 우유제품, 유전자 변형 식품(GMO), 돼지도축, 주류와 식염의 식품안전관리는 본 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2조 철도, 항공 운영 중의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국무원 관계부문과 함께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식량 구매, 저장 및 정책성 식량가공, 판매 등 과정의 식품안전감독관리는 국가 식량 행정관리부문에서 본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군용식품과 자급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33조 국무원은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체제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제134조 본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4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4	11.1
2003	237.1	33.1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6	3,365.2	10.0	297.9	21.2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2	2,051.0	18.3
2008	536.6	18.7	4,402.8	12.2	374.3	-0.2	2,150.9	17.4
2009	565.2	4.8	4,809.3	16.3	414.8	10.3	2,634.3	15.7
2010	787.4	39.3	5,880.0	13.4	474.3	14.3	3,104.0	15.3
2011	1,381.1	75.4	7,690.7	18.0	694.9	46.5	3,480.3	20.0
2012	1,279.0	7.5	8,007.6	16.0	857.9	50.0	3,914.9	21.9
2013.1	114.9	48.3	653.6	17.6	71.6	8.3	323.6	22.1
2013.2	178.8	0.1	1193.9	15.0	128.2	-18.3	611.9	21.0
2013.3	281.2	-2.7	1839.0	15.3	211.8	-11.0	936.6	22.6
2013.4	390.6	-0.8	2,487.5	15.7	316.7	1.7	1,299.3	24.4
2013.5	500.0	-0.2	3,172.7	15.8	401.8	4.7	1,652.2	24.3
2013.6	609.5	0.0	3,820.5	16.0	462.3	4.5	1,982.7	23.3
2013.7	722.9	0.4	4,940.4	14.6	529.7	7.0	2,338.3	22.7
2013.8	831.5	2.0	5,088.8	16.3	600.3	11.1	2,663.4	22.5
2013.9	947.9	3.2	5,704.2	16.6	664.5	12.5	2,975.3	22.3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3	1,047.9	-2.1	7,258.9	14.4	6,834.1	11.1	28,218.7	24.2
1994	1,179.5	12.6	8,214.5	14.4	5,915.1	-13.4	29,214.5	20.2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8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4.3	35.2	11,471.5	20.3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4	12,185.2	22.8	11,477.4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2	-31.4	36,872.5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	3,627.1	-13.1	23,198.6	15.6	4,910.1	-43.7	41,751.8	11.8
2009	3,676.0	1.3	21,240.9	17.3	6,834.5	39.2	43,519.0	15.7
2010	4,323.2	17.6	25,787.2	16.8	6,955.3	1.8	47,177.8	14.7
2011	5,248.7	21.4	33,179.0	15.8	7,399.3	6.4	47,528.0	15.6
2012	5,294.8	1.2	33,415.7	15.8	6,985.1	-5.5	51,361.0	13.6
2013.1	499.4	17.0	3,134.9	15.9	754.2	46.1	4,851.7	15.5
2013.2	908.3	20.2	5,625.6	16.1	1,254.2	38.9	8,606.2	14.6
2013.3	1,369.9	12.8	8,358.6	16.4	1,897.8	27.1	12,814.5	14.8
2013.4	1,924.2	15.9	11,412.0	16.9	2,676.5	30.6	17,260.3	15.5
2013.5	2,431.0	13.8	14,438.7	16.8	3,372.3	25.8	21,797.7	15.5
2013.6	2,865.2	11.6	17,265.0	16.6	3,954.0	21.7	26,182.0	15.1
2013.7	3,319.7	10.9	20,094.1	16.5	4,531.4	18.7	30,412.9	14.9
2013.8	3,748.9	10.0	22,734.6	16.5	5,109.7	16.9	34,285.0	14.9
2013.9	4,180.9	8.8	25,309.0	16.5	5,677.7	15.3	38,258.7	14.8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3	6.7	19.5	694.7	1.0	9.9	28.9	622.3	1.6
1994	12.2	17.4	835.2	1.5	23.4	32.4	771.1	3.0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3	1,133.5	5.2	91.6	33.8	1,133.5	8.1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7	1,178.1	9.7
2002	95.6	53.6	1,374.5	7.0	126.2	61.1	1,239.2	10.2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8	9.7	175.0	65.5	1,293.5	13.5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0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	300.3	56.0	2,621.0	11.5	187.7	50.1	1,390.2	13.5
2009	326.7	57.8	2,990.8	10.9	211.4	51.0	1,753.7	12.1
2010	446.6	56.7	3,721.7	12.0	269.8	56.9	2,079.2	13.0
2011	817.0	59.2	4,939.3	16.5	478.6	68.9	2,541.7	18.8
2012	654.4	51.2	4,785.6	13.7	351.8	41.0	2,338.0	15.0
2013.1	70.6	61.4	392.4	18.0	41.1	57.4	192.6	21.3
2013.2	106.7	59.7	729.3	14.6	64.3	50.2	367.9	17.5
2013.3	160.9	57.2	1,119.9	14.4	88.1	41.6	554.7	15.9
2013.4	221.5	56.7	1,516.0	14.6	115.7	36.5	770.6	15.0
2013.5	276.5	55.3	1,899.6	14.6	149.4	37.2	990.6	15.1
2013.6	333.6	54.7	2,279.6	14.6	181.5	39.3	1,221.4	14.9
2013.7	381.9	52.8	2,655.5	14.4	214.5	40.5	1,454.5	14.7
2013.8	436.7	52.5	3,022.3	14.4	250.5	41.7	1,677.9	14.9
2013.9	491.1	51.8	3,394.7	14.5	279	42.0	1,878.9	1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3	906.2	86.5	3,839.2	23.6	6,568.5	96.1	18,276.0	35.9
1994	932.5	79.1	4,475.3	20.8	5,495.0	92.9	19,030.8	28.9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8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7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64.0	63.6	6,212.7	28.4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	1,949.7	53.8	13,904.6	14.0	3,572.6	72.8	27,842.8	12.8
2009	1,702.0	46.3	11,753.6	14.5	3,017.2	44.1	25,978.5	11.6
2010	1,945.7	45.0	13,987.7	13.9	2,907.2	41.8	28,850.4	10.1
2011	2,461.2	46.9	18,357.9	13.4	3,318.5	44.8	28,923.2	11.5
2012	2,361.6	44.6	18,711.2	12.6	3,050.3	43.7	31,587.2	9.7
2013.1	242.7	48.6	1,763.7	13.8	355.9	47.2	2,880.0	12.4
2013.2	481.2	53.0	3,232.4	14.9	670.1	53.4	5,263.0	12.7
2013.3	732.9	53.5	4,854.2	15.1	1,028.2	54.2	7,849.4	13.1
2013.4	1,022.9	53.2	6,631.2	15.4	1,447.9	54.1	10,594.8	13.7
2013.5	1,263.4	52.0	8,357.6	15.1	1,801.4	53.4	13,389.2	13.5
2013.6	1,450.6	50.6	9,984.9	14.5	2,069.4	52.3	16,136.3	12.8
2013.7	1,654.2	49.8	11,530.1	14.3	2,333.3	51.5	18,666.1	12.5
2013.8	1,849.4	49.3	12,918.9	14.3	2,597.0	50.8	20,824.6	12.5
2013.9	2,023.1	48.4	14,279.2	14.2	2,826.1	49.8	23,126.9	12.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3	0.1	0.3	89.1	0.1	0.02	0.1	23.8	0.1
1994	0.09	0.1	116.0	0.1	0.03	0.0	61.3	0.0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8.9	0.4
1997	1.9	0.9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5	121.0	2.6	1.0	0.4	86.3	1.2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8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7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4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8	2.0	0.5	93.0	2.2
2008	14.5	2.7	215.1	6.7	3.4	0.9	98.3	3.5
2009	18.6	30.3	139.6	13.3	5.4	1.3	59.7	9.0
2010	23.4	3.0	146.1	16.0	3.3	0.7	59.2	5.6
2011	36.9	2.7	176.4	20.9	5.7	0.8	64.3	8.9
2012	130.5	10.2	395.2	33.0	23.5	2.7	95.5	24.6
2013.1	12.5	10.9	33.7	37.1	3.0	4.2	9.9	30.3
2013.2	19.6	11.0	59.4	33.0	4.9	3.8	18.2	26.9
2013.3	34.6	12.3	95.6	36.2	8.6	4.1	28.9	29.8
2013.4	43.5	11.1	126.3	34.4	11.3	3.6	37.6	30.1
2013.5	59.1	11.8	170.9	34.6	14.2	3.5	48.4	29.3
2013.6	72.1	11.8	208.8	34.5	16.3	3.5	57.8	28.2
2013.7	87.0	12.0	254.9	34.1	19.1	3.6	77.7	24.6
2013.8	99.5	12.0	289.5	34.4	21.6	3.6	86.8	24.9
2013.9	110.3	11.6	322.3	34.2	23.5	3.5	96.3	24.4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3	27.8	2.6	631.6	4.4	5.4	0.1	347.0	1.6
1994	37.2	3.2	932.3	4.0	8.9	0.1	453.7	2.0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2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3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	85.0	2.3	3,352.2	2.5	35.0	0.7	1,004.3	3.5
2009	42.2	1.1	2,485.1	1.7	15.8	0.2	956.5	1.7
2010	53.3	1.2	3,123.0	1.7	18.6	0.3	1,055.1	1.8
2011	60.3	1.1	5,069.5	1.2	20.9	0.3	1,416.8	1.5
2012	138.3	2.6	4,720.9	2.9	25.1	0.4	1,286.3	2.0
2013.1	8.8	1.8	455.2	1.9	3.0	0.4	119.9	2.5
2013.2	14.0	1.5	784.1	1.8	4.6	0.4	212.0	2.2
2013.3	19.7	1.4	1,140.7	1.7	6.3	0.3	309.8	2.0
2013.4	26.3	1.4	1,509.3	1.7	8.4	0.3	410.9	2.0
2013.5	36.1	1.5	1,895.4	1.9	10.8	0.3	509.3	2.1
2013.6	45.6	1.6	2,263.7	2.0	12.7	0.3	607.7	2.1
2013.7	66.2	2.0	2,670.2	2.5	14.9	0.3	708.7	2.1
2013.8	83.4	2.2	3,077.3	2.7	16.6	0.3	808.7	2.1
2013.9	104.8	2.5	3,468.1	3.0	18.3	0.3	904.9	2.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3	17.9	52.3	450.0	4.0	20.7	60.3	445.3	4.6
1994	39.1	56.0	508.4	7.7	42.0	58.2	410.0	10.2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2	38.6	281.5	21.4	67.6	45.9	144.9	46.7
1997	36.5	18.2	251.2	14.5	36.8	15.4	157.5	2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3	217.5	25.3
1999	49.2	33.0	268.7	18.3	73.5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4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1	17.5	166.9	18.6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5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7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0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4	25.0
2008	31.5	5.9	118.4	26.6	22.7	6.1	77.1	29.4
2009	74.3	13.1	167.7	44.3	106.2	25.6	168.7	63.0
2010	86.2	10.9	214.1	40.3	94.5	19.9	172.5	54.8
2011	62.4	4.5	266.9	23.4	55.5	8.0	187.4	29.6
2012	121.8	9.5	464.8	26.2	356.4	41.5	772.7	46.1
2013.1	3.8	3.3	26.2	14.5	15.7	21.9	51.6	30.4
2013.2	8.8	4.9	57.3	15.4	40.8	31.8	101.7	40.1
2013.3	19.4	6.9	99.1	19.6	82.1	38.8	170.0	48.3
2013.4	38.0	9.7	160.4	23.7	148.8	47.0	263.8	56.4
2013.5	50.8	10.2	231.4	22.0	189.2	47.1	328.6	57.6
2013.6	60.7	10.0	292.5	20.8	206.4	44.6	368.5	56.0
2013.7	70.1	9.7	344.6	20.3	222.2	41.9	407.5	54.5
2013.8	77.3	9.3	387.5	19.9	241.2	40.2	450.9	53.5
2013.9	93.4	9.9	432.5	21.6	259.9	39.1	491.8	52.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3	74.3	7.1	2,268.8	3.3	244.7	3.6	9,245.2	2.6
1994	98.0	8.3	2,086.9	4.7	372.4	6.3	9,350.2	4.0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459.1	45.8	2,635.6	17.4	552.7	26.7	9,882.4	5.6
1997	226.6	14.8	2,497.7	9.1	661.1	12.0	10,248.7	6.5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0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79.9	16.3	1,656.7	16.9	629.6	11.4	9,580.9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5.9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	587.8	16.2	2,863.6	20.5	646.0	13.2	8,880.9	7.3
2009	1,077.9	29.3	4,107.8	26.2	2,882.1	42.2	12,503.7	23.0
2010	1,228.5	28.4	5,219.1	23.5	2,915.8	41.9	12,556.7	23.2
2011	1,477.0	28.1	5,560.9	26.6	2,919.0	39.4	12,342.4	23.7
2012	1,712.2	32.3	6,009.2	28.5	3,090.1	44.2	13,658.2	22.6
2013.1	133.4	26.7	538.4	24.8	196.0	26.0	1,206.8	16.2
2013.2	225.5	24.8	971.9	23.2	299.9	23.9	2,121.9	14.1
2013.3	354.1	25.8	1,467.1	24.1	531.9	28.0	3,244.0	16.4
2013.4	531.7	27.6	2,014.8	26.4	823.2	30.8	4,495.9	18.3
2013.5	685.5	28.2	2,604.3	26.3	1,113.1	33.0	5,726.4	19.4
2013.6	851.7	29.7	3,157.9	27.0	1,376.2	34.8	6,880.1	20.0
2013.7	1,020.3	30.7	3,735.2	27.3	1,646.5	36.3	8,099.4	20.3
2013.8	1,174.3	31.3	4,267.0	27.5	1,919.2	37.6	9,260.9	20.7
2013.9	1,334.0	31.9	4,799.4	27.8	2,197.4	38.7	10,472.9	21.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2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29.9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7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2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	190.3	35.5	1,448.3	13.1	160.4	42.9	585.3	27.4
2009	145.7	25.8	1,511.2	9.6	91.8	22.1	652.2	14.1
2010	231.2	29.4	1,798.2	12.9	106.7	22.5	793.0	13.5
2011	464.8	33.7	2,308.2	20.1	155.2	22.3	686.9	22.6
2012	372.3	29.1	2,362.0	15.8	126.2	14.7	708.6	17.8
2013.1	28.1	24.5	201.3	14.0	11.9	16.6	69.6	17.1
2013.2	43.8	24.5	347.9	12.6	18.2	14.2	124.1	14.7
2013.3	66.3	23.6	524.4	12.6	33.0	15.6	183.0	18.0
2013.4	87.7	22.5	684.8	12.8	40.9	12.9	227.4	18.0
2013.5	113.5	22.7	870.8	13.0	49.0	12.2	284.6	17.2
2013.6	143.2	23.5	1,039.6	13.8	58.0	12.5	335.0	17.3
2013.7	184.5	25.5	1,235.4	14.9	73.9	14.0	398.7	18.5
2013.8	218.0	26.2	1,389.5	15.7	86.8	14.5	447.8	19.4
2013.9	253.1	26.7	1,554.7	16.3	102.2	15.4	508.3	20.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3~2013.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3	39.7	3.8	519.3	7.6	15.5	0.2	350.4	4.4
1994	111.7	9.5	720.0	15.5	38.7	0.7	379.9	10.2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0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1	36.4	465.2	4.1	1,245.5	37.4
2004	910.5	37.6	2,264.2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1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	1,004.6	27.7	3,078.3	32.6	656.5	13.4	4,023.8	16.3
2009	853.8	23.2	2,894.4	29.5	919.4	13.5	4,080.3	22.5
2010	1,095.7	25.3	3,457.2	31.7	1,113.8	16.0	4,715.6	23.6
2011	1,250.2	23.8	4,190.8	29.8	1,140.9	15.4	4,845.6	23.5
2012	1,082.8	20.5	3,974.4	27.2	819.6	11.7	4,829.3	17.0
2013.1	114.5	22.9	377.6	30.3	199.4	26.4	654.1	30.5
2013.2	187.6	20.7	637.2	29.4	279.6	22.3	1,009.2	27.7
2013.3	263.2	20.7	896.7	29.4	331.3	17.5	1,411.4	23.5
2013.4	361.4	20.7	1,256.8	28.8	397.1	14.8	1,758.7	22.6
2013.5	445.9	20.7	1,581.4	28.2	446.9	13.3	2,172.8	20.6
2013.6	517.4	20.7	1,858.5	27.8	495.7	12.5	2,257.9	22.0
2013.7	578.9	20.7	2,158.5	26.8	536.6	11.8	2,938.7	18.3
2013.8	641.8	20.7	2,471.4	26.0	576.9	11.3	3,390.9	17.0
2013.9	719.0	20.7	2,762.3	26.0	635.9	11.2	3,753.9	16.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11.1~2013.9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11. 1	185.9	110.0	106.2	185.9	109.8	107.3
2	190.5	110.7	102.5	191.0	110.4	102.7
3	185.7	110.0	97.5	185.2	109.6	97.0
4	181.8	108.1	97.9	180.4	107.4	97.4
5	181.4	112.0	99.8	179.8	111.9	99.7
6	188.9	119.8	104.1	188.6	121.2	104.9
7	193.5	117.4	102.4	194.2	118.5	102.9
8	195.2	112.9	100.9	196.1	113.1	101.0
9	198.3	116.0	101.6	199.8	117.0	101.9
10	191.0	111.3	96.3	190.8	111.6	95.5
11	184.5	104.8	96.6	182.9	104.2	95.8
12	188.6	107.7	102.2	188.0	108.5	102.8
2012. 1	198.7	106.9	105.4	200.4	107.8	106.5
2	201.3	105.7	101.3	203.3	106.5	101.5
3	203.3	109.5	101	205.7	111.1	101.2
4	199.9	109.9	98.3	201.2	111.5	97.8
5	199.9	110.2	100	201.1	111.9	100
6	192.8	102.1	96.5	192.5	102.1	95.7
7	191.8	99.1	99.5	191.2	98.5	99.3
8	202.4	103.7	105.5	203.5	103.8	106.4
9	196.9	99.3	97.3	196.7	98.5	96.7
10	186.6	97.7	94.8	184.2	96.5	93.6
11	185	100.3	99.1	182.4	99.7	99
12	196.2	104	106	195.7	104.1	107.3
2013. 1	208.9	105.2	106.5	210.8	105.2	107.7
2	212.6	105.6	101.7	214.9	105.7	101.9
3	197.1	96.9	92.7	196.2	95.4	91.3
4	203.0	101.6	103.0	203.4	101.1	103.7
5	199.1	99.6	98.1	198.8	98.8	97.7
6	199.7	103.6	100.3	200.0	103.9	100.6
7	203.2	106.0	101.8	204.5	107.0	102.2
8	209.6	103.5	103.1	212.4	104.4	103.9
9	210.4	106.9	100.4	213.0	108.3	100.3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3년 1~3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 1	203.6	204.4	2.14	215.3	218.3
1. 2	203.7	204.7	2.15	215.3	218.3
1. 3	204.4	205.6	2.16	216.7	219.8
1. 4	205.8	207.1	2.17	215.7	218.4
1. 5	206.8	208.3	2.18	215.0	217.6
1. 6	207.0	208.4	2.19	212.9	215.1
1. 7	207.5	209.1	2.20	213.2	215.4
1. 8	207.1	208.7	2.21	213.3	215.5
1. 9	207.7	209.4	2.22	213.2	215.5
1.10	207.6	209.2	2.25	208.2	209.5
1.11	207.6	209.0	2.26	205.1	206.6
1.14	208.9	210.9	2.27	204.4	205.0
1.15	209.0	211.0	2.28	203.8	204.1
1.16	209.2	211.3	3. 1	203.4	203.9
1.17	209.8	211.9	3. 4	201.3	201.2
1.18	210.2	212.4	3. 5	200.6	200.3
1.21	211.1	214.6	3. 6	199.0	198.5
1.22	212.4	215.0	3. 7	199.2	198.6
1.23	212.8	215.4	3. 8	198.4	197.9
1.24	212.6	215.1	3.11	197.4	196.7
1.25	212.6	215.1	3.12	196.9	196.0
1.28	212.1	214.6	3.13	196.0	195.0
1.29	210.4	212.6	3.14	196.3	194.9
1.30	210.5	212.7	3.15	196.0	195.1
1.31	211.7	214.2	3.18	196.2	195.3
2. 1	211.9	214.4	3.19	195.6	194.5
2. 4	212.0	214.4	3.20	195.4	194.2
2. 5	211.5	213.7	3.21	195.5	194.3
2. 6	214.1	217.0	3.22	195.7	194.6
2. 7	215.9	219.1	3.25	194.4	193.1
2. 8	218.4	222.0	3.26	194.7	193.5
2.11	212.8	215.1	3.27	194.9	193.8
2.12	213.2	215.7	3.28	195.3	194.1
2.13	213.8	216.5	3.29	196.3	195.1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3년 4~6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 1	196.6	195.7	5.15	197.3	196.7
4. 2	197.2	196.5	5.16	198.3	197.7
4. 3	197.0	196.2	5.17	197.7	197.0
4. 4	195.7	195.1	5.20	198.1	197.5
4. 5	197.6	197.0	5.21	198.4	197.9
4. 7	199.7	199.3	5.22	197.7	197.1
4. 8	201.0	200.6	5.23	198.3	197.7
4. 9	201.3	201.3	5.24	197.7	197.1
4.10	202.2	202.6	5.27	198.3	197.7
4.11	204.1	204.8	5.28	199.0	198.8
4.12	203.7	204.4	5.29	198.3	197.9
4.15	205.9	207.1	5.30	198.4	198.0
4.16	205.7	206.7	5.31	197.8	197.3
4.17	205.6	206.4	6. 3	204.3	204.2
4.18	205.1	206.0	6. 4	200.6	200.3
4.19	205.0	205.9	6. 5	199.0	198.5
4.22	204.5	205.3	6. 6	199.2	198.6
4.23	206.1	207.0	6. 7	198.4	197.9
4.24	205.9	207.1	6. 8	197.4	196.7
4.25	207.4	208.7	6. 9	196.9	196.0
4.26	207.2	208.3	6.10	196.0	195.0
4.27	206.9	207.9	6.11	196.3	194.9
4.28	206.5	207.4	6.12	196.0	195.1
4.29	204.9	205.8	6.13	196.2	195.3
4.30	202.3	202.7	6.14	195.6	194.5
5. 1	203.1	203.8	6.17	195.4	194.2
5. 2	203.5	204.2	6.18	195.5	194.3
5. 3	203.4	203.9	6.19	195.7	194.6
5. 6	200.7	200.8	6.20	194.4	193.1
5. 7	200.3	200.5	6.21	194.7	193.5
5. 8	199.4	199.1	6.24	194.9	193.8
5. 9	199.5	199.1	6.25	195.3	194.1
5.10	198.4	198.0	6.26	196.3	195.1
5.13	197.1	196.6	6.27	199.7	200.2
5.14	197.8	197.2	6.28	199.8	200.4

14.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3년 7~9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7. 1	199.9	200.5	8.16	208.7	211.6
7. 2	199.7	200.3	8.19	208.6	211.3
7. 3	199.2	200.0	8.20	208.3	211.0
7. 7	199.6	200.4	8.21	208.9	212.0
7. 5	199.2	200.1	8.22	210.9	214.2
7. 8	200.3	200.9	8.23	210.7	213.9
7. 9	199.5	199.9	8.26	210.4	213.0
7.10	199.4	199.7	8.27	210.3	213.0
7.11	200.1	200.8	8.28	210.8	213.9
7.12	200.4	200.9	8.29	212.4	215.4
7.15	201.9	202.8	8.30	211.4	214.3
7.16	203.0	204.2	9. 2	212.2	215.3
7.17	203.1	204.3	9. 3	213.3	216.6
7.18	203.2	204.5	9. 4	212.2	215.5
7.19	204.1	205.4	9. 5	212.9	216.0
7.22	205.1	206.8	9. 6	212.7	215.9
7.23	205.5	207.1	9. 9	212.5	215.5
7.24	207.2	209.0	9.10	212.4	215.5
7.25	207.7	210.0	9.11	211.7	214.7
7.26	208.0	210.3	9.12	211.7	214.7
7.29	209.4	211.8	9.13	211.5	214.4
7.30	209.2	211.6	9.16	210.9	213.9
7.31	209.3	211.8	9.17	211.4	214.1
8. 1	209.2	211.8	9.19	208.5	210.9
8. 2	209.2	211.7	9.20	210.1	212.7
8. 5	209.4	212.0	9.22	209.4	211.7
8. 6	209.4	211.8	9.23	209.0	211.2
8. 7	209.1	211.5	9.24	208.1	210.1
8. 8	209.4	211.9	9.25	208.8	210.8
8. 9	208.9	211.3	9.26	207.6	209.3
8.12	209.3	212.1	9.27	208.2	210.2
8.13	208.2	211.1	9.29	207.5	209.4
8.14	208.4	211.2	9.30	207.4	209.5
8.15	209.2	212.0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09-2013-03

중국농업동향(가을호) 제6권 제3호/통권23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0. 30.

발 행 2013. 10. 30.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